

수 산 진 흥 종 합 대 책

(2005 ~ 2009)



해 양 수 산 부

www.momaf.go.kr

목 차

[요 약]	3
[본 문]	23
제1장 제1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의 추진실적 평가 및 반성	31
제2장 수산업의 여건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	38
제3장 새로운 수산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	42
제4장 중점추진과제	44
제5장 새로운 수산정책을 위한 기반조성	266
제6장 투융자 계획 및 전망지표	277

요 약 본

수 산 진 흥 종 합 대 책

[목 차]

제1장 제1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의 추진실적 평가	7
제2장 수산업의 여건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	8
제3장 새로운 수산정책의 목표와 비전	10
제4장 중점 추진과제	11
제5장 새로운 수산정책을 위한 기반조성	19
제6장 투융자 계획 및 전망지표	21

제1장 제1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의 추진실적 평가

1. 주요 추진실적('00 ~ '04)

□ 어업 구조조정

- 연근해 어선 1,949척 및 원양어선 34척 감척(3,859억원)

□ 기르는어업 육성

- 11개 사도에 걸쳐 양식어장 73천ha 정화사업 실시, 양식장 구조조정 및 노후시설 개량 63개소(113억원)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01. 5월부터 수도권 도매시장에 대해 패류 및 선어 실질경매제 실시
- 산지 위판장(17개소, 58억원), 수산물 직매장(15개소, 49억원) 건립 및 총 95개 산지 조합위판장의 정보화 완료(40억원)

□ 어촌개발

- 어촌종합개발 사업 45개 권역 신규개발 및 국가어항 12개항 완공, 지방어항 35개항 완공

2. 추진실적 평가

- 제1차 수산진흥종합대책 기간중 어가소득 매년 6%, 연근해수산물 생산량 매년 2% 증가 등 안정기조 유지
 - ※ 어가소득(만원) : ('00) 1,962 → ('04) 2,616
 - ※ 연근해수산물 생산량(천톤) : ('00) 1,863 → ('04) 2,020
- 그러나, 어가소득은 아직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68% 수준이며 과잉 어획, 불법어업, 어촌의 낙후 등 문제점 상존
 - 특히, WTO/FTA에 대비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미흡

제2장 수산업의 여건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

1. 수산업의 여건변화와 전망

□ WTO-DDA 협상에서 수산물 수출국의 입장이 반영될 경우, 수산정책에 대한 국제적 제약이 증대

□ 어업자원에 비해 어선세력의 과다로 어장생산성 하락 및 유능한 신규 인력의 진입 감소로 후계인력이 양적·질적으로 저하

※ 생산량(연근해, 어선어업) : ('00) 1,189천톤 → ('04) 1,077천톤
생산량(양식수산물) : ('00) 653천톤 → ('04) 918천톤
어선세력(연근해) : ('00) 92,652척 → ('04) 89,268척
어가인구 : ('00) 251천명 → ('04) 210천명
50대 이상 어업종사자 : ('00) 55% → ('04) 62%

□ 수산물의 국내 수요증가와 우리 수산물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01년부터 수입국으로 전환

※ 국내소비량 : ('00) 266만톤 → ('01) 326만톤 → ('04) 392만톤
수출량 : ('00) 134만톤 → ('01) 122만톤 → ('04) 111만톤
(1,504백만\$) (1,274백만\$) (1,279백만\$)
수입량 : ('00) 149만톤 → ('01) 190만톤 → ('04) 247만톤
(1,411백만\$) (1,648백만\$) (2,261백만\$)

□ 국민소득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식품안전 및 웰빙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 횡감용 활어 국내유통량 : ('00) 61천톤 → ('04) 118천톤

□ 생활수준 향상 및 '주5일제' 근무확산 등에 따라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종전의 '산+ 명승지방문' 중심의 관광수요가 '바다+ 레저활동' 중심으로 전환 추세

○ '경유형 관광' 에서 '체재형 관광' 으로 관광패턴 변화 확산

※ 해양관광 수요 : ('00) 8,400만명 → ('03) 9,200만명 → ('10 전망)11,600만명

2. 수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정부주도 ⇒ 민간자율

일률적인 정부주도정책에 한계

- ◆ 기존의 일방 수혜적 정부지원정책으로 수산업의 자생력 약화
- ◆ 일률적 정책으로 다양한 여건 변화 수용 곤란



어업인 자율부문의 확대

- ◆ 자율관리어업의 확대, 자율조정협의회를 통한 어업분쟁해소 등
- ◆ 민간출하조절사업 확대

일괄지원 ⇒ 선택과 집중

특성을 무시한 일괄균등 지원

- ◆ 소액균분 지원으로 정책성과 미흡
- ◆ 성공모델이 없는 하향평준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모델 발굴

- ◆ 전국 24개소 어촌관광 거점 개발
- ◆ 경쟁력 없는 업종 우선 감척 등

공급중심 ⇒ 소비·수요중심

자원량과 소비를 고려치 않는 증산정책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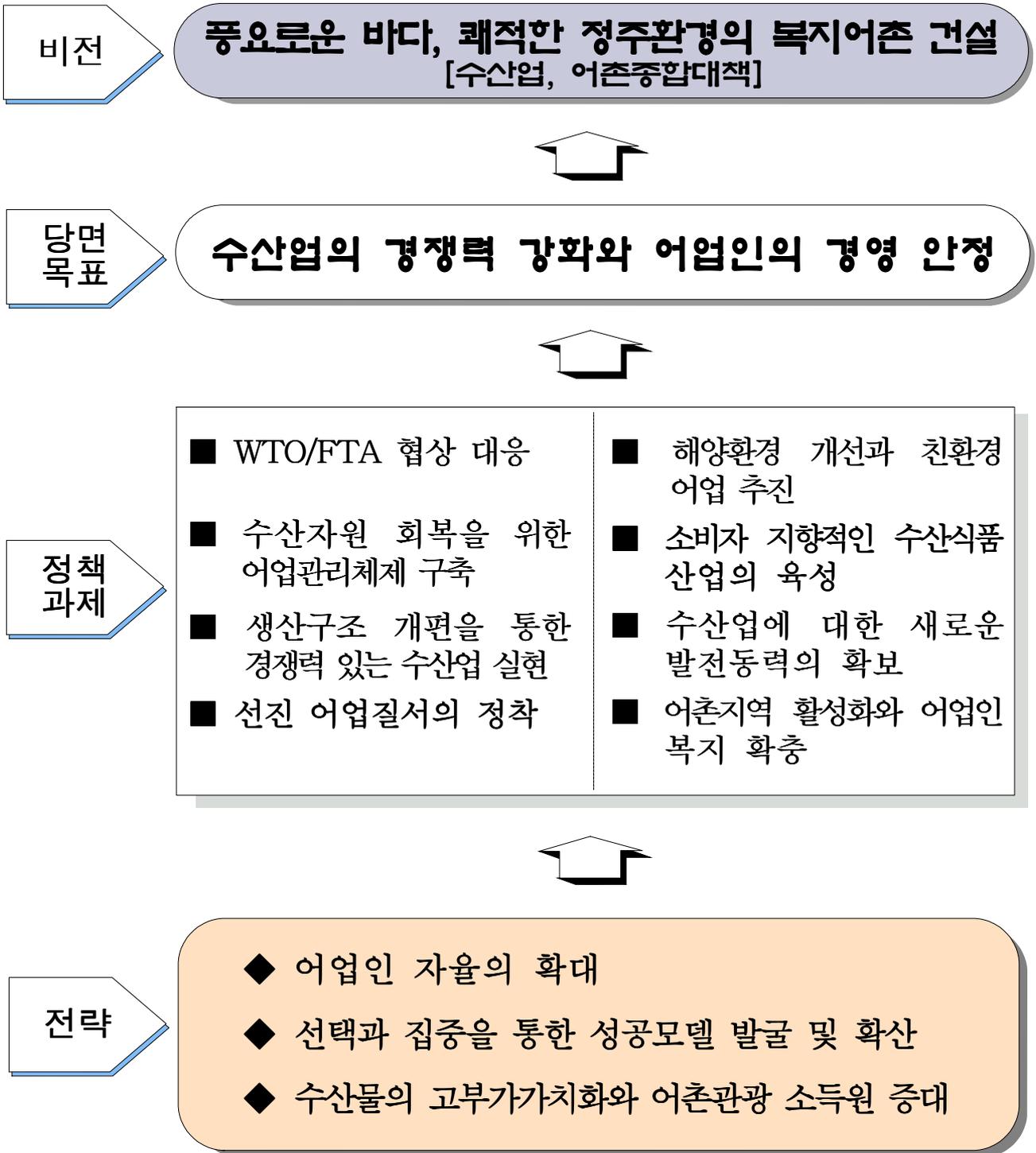
- ◆ 과다어획 → 자원 고갈의 악순환 지속
- ◆ 일시 과다출하로 수산물 가격 하락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 ◆ 수산물 품질 인증제·브랜드화 추진
- ◆ 웰빙 수산식품 및 기능성 양식수산물 개발

제3장 새로운 수산정책의 목표와 비전



제4장 중점 추진과제

1. WTO/FTA 협상 대응

□ WTO/FTA 협상에 적극 대처

- WTO 협상에 있어 수산보조금의 규제범위를 최소화하고 수산물이 무세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조국과 협력 강화
- FTA 협상시 국내수산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한 협상 추진

□ WTO/FTA 협상단계별 국내대책 마련

- 단계별 시나리오별 주요업종 및 어종별 경쟁력 실태 분석후 지원정책 추진
- 면세유 등 세제지원 제도를 가능한 유지하되, WTO 협상결과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엔 어업인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양식장 배합사료직불제, 어장휴식년제·휴어제 및 친환경기자재(어망, 어구 등) 사용어가 직불제 등 긍정적 직불제 확대
- 수산물 품목분석으로 기본관세체계 다단계화(무세, 저관세, 고관세 등)

□ 수산발전기금 확충 등 지원제도 정비

- 수산발전기금에 환경개선부담금 등 신규 재원의 확충으로 기금규모를 확대하고 어업인 집중 지원체제로 개편
- 어가부채경감대책의 적극 추진으로 어업경영능력 회복 도모
- 수산정책자금 각 사업을 통합하여 업계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수산업 종합자금제도 신설

□ 수산업 재해보험제도 확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국고보조율 확대 및 어선원보험 가입률 제고('04년 65% → '09년 85%)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으로 양식어업경영의 안전망 확충

2.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 수산자원회복계획 수립·추진

- 어업자원의 지속적·안정적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수산자원회복계획 수립 및 법제정 추진('05~'06)
- 어업인대표가 참여한 해역별 위원회 구성 및 수산자원회복업무 전담조직인 「수산자원회복팀」 설치·운영
 - 연근해 자원량 : ('04) 780만톤→('05) 790만톤→('09) 880만톤

□ 자율관리어업의 전국확대 및 활성화

- 정부주도의 어업관리를 어업인의 자율적 자원관리로 전환
 - 마을어업 등 지역 중심에서 어종별·해역별·업종별 공동체로 확산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확대('04년 174개소→'05년 300개소→'09년 750개소)
- 자율관리어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어업인 교육·홍보강화

□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

-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종묘 방류 확대('04년 29종 → '09년 45종)
 - 방류규모를 164백만미('04)에서 189백만미('09)로 확대
- 환경친화적인 시범 바다목장 5개소 완료('98년~'10년)
-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다기능성 인공어초 개발('04년 27종 → '09년 45종)

□ 총 허용어획량(TAC)제도 정착

- 대상어종을 점진적으로 확대('04년 9종→'13년 20종)
- 연근해 자원상태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을 위한 어업자원조사 전용선 및 과학장비 확충

□ 지속이용 가능한 적정 어획강도 유지

- 연안어선도 선복량제한제도를 도입('05년), 증톤 억제
- 자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업부터 어구사용량 등 제한('05년)
 - 어구실명제 병행 실시

3.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 자원이회복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 연근해 어업의 체계적 개편
 - 유사업종 통합과 불필요 업종 폐지('04년 71개→'07년 53개 업종)
 - 근해와 연안어선의 분류기준을 10톤으로 일괄 조정
- 1단계 근해어선 감척(2004년까지 2,052척)에 이어, 2단계로 연안어선을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연안어선의 10% 수준(6,300척) 감척
 - 입찰제를 도입하여 감척사업의 신속성 확보
 - WTO-DDA 협상결과에 따라 연근해어선 추가 감척계획 검토

□ 양식어업 구조조정 및 시설 현대화

- 안정 생산 필요 품종 및 재해 빈발해역 어장에 대한 개발 억제
 - 양식면허 갱신시 최대 20%까지 축소하여 재면허
 - 2010년까지 양식어장시설 정비 : ('04)123천ha→('10)117천ha
- 육상 양식(종묘생산)어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05년)
- 내파성 가두리시설을 태풍에 강한 PE재로 교체 지원
- 외해 가두리(내파성, 수중)양식 개발
 - 참치 등 새로운 고소득 품종 양식

□ 원양어업 구조 조정

- 노후어선에 대한 신조대체지원을 통해 원양어업의 경쟁력 제고
- 경쟁력이 약한 업종 및 노후 원양어선에 대한 감척사업 추진

4. 선진 어업질서의 정착

□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근절대책 지속 추진

-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 자원남획 등 자원에 영향이 큰 업종의 불법어업부터 단계적으로 근절
 - ※ 단속실적 : ('02)3,102건 → ('03)2,067건 → ('04)3,673건
-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 불법어선 계류조치 등 제도개선을 통해 상습적 위반행위를 방지
- 합법어선에 의한 명예감시 활성화 등 자율질서 확립 추진
 -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지정 확대
 - “불법어업 없는 마을” 선정 등 민간참여 분위기 확산
- 중국어선 우리 EEZ 침범조업 차단
 - 서해 NLL 등 해역에 지도선, 해경·해군함정을 집중 배치하여 침범 중국어선 즉각 나포

□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매입정리 추진

-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정리에관한특례법” 제정('04. 12)에 따라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선 매입 완료('05 ~ '06까지 2,000척)

□ 불법어업 지도단속 장비확충 및 현대화

- 전천후 고속 첨단어업지도선 연차적 확충('08까지, 940억원)
 - ※ 어업지도선 : ('05) 30척 → ('08) 38척
- 어업지도선 건조시 고속단정(40노트급), 전자해도시스템, 야간관측장비, 물대포 등 첨단장비 장착

□ 무면허·초과시설 등 불법 양식시설 근절

-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불법양식 상시 감시기구 설치 운영
- 면허취소, 각종 정부지원사업 배제, 면세유 공급중단 등 불이익 강화
- 양식어장기록카드제 도입으로 종묘입식, 사료 급이기록 보관 의무화

5. 해양환경 개선과 친환경 어업 추진

□ 해양환경 개선으로 깨끗한 바다 조성

-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육상오염물질의 해양유입 통제
 - 마산만 등 오염우심해역의 수질을 2등급 수준으로 개선('11년까지)
-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지를 훼손하는 수중 폐기물 제거
 - 연근해 주요 어장에 대한 수중폐기물 실태조사후 체계적 수거사업 실시('07)
-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제 확대 실시
- 해양오염 원격감시체제 구축
 - 특별관리해역 등에 수질자동측정소 설치 확대

□ 연안어장 정화 및 양식 수산물 질병 관리체계 확립

- 환경오염 심화어장에 대한 어장휴식년제 실시('06년)
- 남해안 일대에 만(灣) 단위의 특별관리어장을 지정, 지속 정화 실시(9개소)
 - 퇴적물 수거, 어장 재배치 등으로 어장생산성 향상
- 어류질병 예방용 백신 등 치료제 개발('04년 1종 → '08년 6종) 및 국가공인 수산질병관리사('04) 확대('04년 40명 → '09년까지 140명)

□ 어류양식장 자가오염 방지를 위한 배합사료 공급률 확대

- 양식용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대체('04년 20% → '08년 80%)
 - 산학연 합동으로 환경친화적고효율 배합사료의 지속적 개발보급
- 생사료 사용 제한제도 마련('07)

□ 적조의 신속대응 및 방제강화

- 친환경적 적조구제물질 연구·개발 강화
- 해양추적자 및 인공위성 표류부이를 이용한 적조 이동·확산 예측모델 개발로 적조예방능력 증진

□ 친환경적인 어구·어법개발 및 내수면 생태계 보전

- 치어 탈출장치 등 생력화·환경친화적 어구·어법 개발 보급
- 내수면 생태계 조사 및 토종어종 보전사업 추진(연간 50억)

6.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 수산물의 웰빙식품으로서의 인식제고와 마케팅 강화

- 수산물의 홍보강화와 단계별 안전성 조사체계 구축으로 수산식품=웰빙 이미지 제고
 - 생산이력제 도입·확대 등 수산물 위생관리의 강화 및 검사장비 확충
 - 양식어장 HACCP 도입 : ('05)20개소 → ('08)160개소
-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관리
 - 전국을 약 60개 해역으로 구분하여 매년 점차적으로 위생등급 설정('05 ~ '08)
- 수산물 품질인증제 활성화와 품목별 공동브랜드 개발·보급
- 수출상품 개발 및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
 - 세계 일류상품 추가 발굴(다시마국수, 전복 등)

□ 수산물 유통·물류체계 개선

- 산지 및 소비지 시장을 지역특성에 맞는 거점시장으로 육성
 - 산지 위판장 : ('04) 240개소 → ('09) 250개소
 - 소비지 직판장 : ('04) 33개 → ('09) 56개
 - 소비지 도매시장 : ('04) 16개 → ('09) 17개
- 수산물 물류표준화 등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 감천항을 「동북아 수산물유통중심기지」로 조성
 - 수산물도매시장과 종합가공단지를 '08까지 조성 완료
 - 도매시장 내에 「국제수산물거래센터」 개설로 국제적 수산물류 중심지로 육성

□ 시장 지향적 수산물 수급시스템의 구축

- 비축사업의 단계적 축소, 유통협약제에 의한 자율출하조절 유도
- 자율적 생산량 조절 등을 위한 수산물수급동향예보제도 확대 실시
 - ('04) 김 → ('05) 김, 넙치 → (장기) 어선어업

7.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 수산선도인력의 지속적 육성

- 어업인후계자 확대 및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 어업인후계자 육성 : ('04) 16,000명→('09) 18,000명→('11) 20,000명
 - 교육훈련 : 신규·보수교육→경영자 교육·해외연수 등
- 어업인후계자 사업기반 조성자금 지원 확대
 - 1인당 지원 : 20~50백만원 → 50~100백만원
- 어업인 자녀중 수산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 학자금 지원

□ 수산업협동조합의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

- 중앙회에 대해선 당초 예정대로 2017년부터 공적자금 상환 가능토록 조치
-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및 합병 등 행정조치 지속 추진
(2010까지 경영정상화 완료)

□ 수산연구 개발투자 확충과 개발기술의 실용화

- 양식생산비를 50% 이상 절감하기 위해 사료, 품질개량 등 4대 핵심요소에 대한 기술개발 강화
- 옥돔의 인공종묘 생산기술 등 어업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기술 연구개발 강화

□ 수산종합정보화체계 구축과 어촌정보 인프라 확충

- 수산관련 기관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수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어촌과 도시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실시
 - 어촌정보 사랑방 : ('04) 393개소 → ('09) 600개소(850대)
- 수산통계의 신뢰도 증진을 위한 조사방법 개선 및 신규통계 개발

8.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어촌·어항의 종합개발

- 어촌인구 유입을 위한 어촌기반시설 확충 및 복합생활 공간 조성
 - 어촌종합개발사업 '13년까지 225개 권역 개발
-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다기능종합어항 집중개발
-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05년 어촌·어항법 제정)

□ 어업의 소득원 개발을 위한 어촌관광 육성

- 생산기반 위주의 사업지원을 관광기반 지원으로 전환
 -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추진 및 어업인 관광교육 실시
- 어촌관광 중심의 어촌·어항개발 추진('09년까지 24개소)
 - I모델(어촌어항복합공간), II모델(다기능어항), III모델(어촌관광단지) 등
- 해양레저와 연계한 낚시관리제도 마련
 - 어류양식장을 낚시터로 활용방안 강구 등 레저어업 육성

□ 어촌 주민의 복지후생과 삶의 질 향상

- 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 ※ 건강보험료 지원 : ('05년) 40% 경감→('06년 이후) 50% 경감
- 기초생활보장 재원을 마련하고 어촌에 기본적 문화시설 확충
- 교육비 부담 경감과 어촌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유치원 무상교육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 고교생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지원

제5장 새로운 수산정책을 위한 기반조성

1. 법령 및 제도 정비

□ 어촌·어항법('05년 제정)

- 국가가 수립한 5년 단위 『어촌발전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어촌지역계획」을 통해 어촌개발비전을 제시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품 등 어촌 특성을 활용한 어촌특성화사업을 개발·추진

□ 수산자원관리법('06년 제정)

- 수산업법은 수산분야 기본법 성격 유지, 제정 법률은 수산자원회복(관리)에 관한 사항 반영
- 지속가능한 이용, 책임 있는 수산업 제도 마련
 - 수산자원 보호(보존)에 관한사항과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자원의 이용, 개발(조성) 관리 등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06년 제정)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연구용역 및 도상연습결과('02. 3~'04. 7)를 바탕으로 도입이 가능한 품종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후 점진적으로 대상품종 및 대상재해를 확대 추진

2. 수산진흥종합대책 시행의 효율성 증진

가. 시행계획의 수립

□ 세부사업별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소관부서)

- 매년초 담당부서별로 세부시행계획 수립
 - 전년도 사업별 추진실적 및 추진 미흡사업 원인 분석
 - 당해년도 사업 주요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음년도 예산안 마련 및 예산 확보

나. 수산정책의 점검 및 평가

□ 세부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수산총괄부서)

-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의 달성도, 현황을 수시 점검
 - BSC 성과관리시스템 활용

□ 주요내용

- 대책 전반에 걸쳐 성과목표와 이행지표의 추진실적과 정책 효과 점검 및 평가
 - 이행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환류시스템 강화)
 - 부진사업의 경우 부진원인의 분석과 필요시 사업축소 또는 폐지 등

제6장 투융자 계획 및 전망지표

1. 투융자 계획

□ 향후 5년간('05~'09) 총 투융자 규모 : 5조 5,822억원

- 예산 46,101억원(82.6%), 기금 9,721억원(17.4%)
- 연도별 투융자 규모는 '05년 10,176억원에서 '09년 12,467억원으로 연평균 11,164억원
- ('05) 10,176 → ('06) 10,586 → ('07) 10,981 → ('08) 11,612 → ('09) 12,467
※ WTO/FTA의 피해가 예상되는 '07년 이후 피해대비 관련 예산증액 추진

□ 분야별 투융자 계획

- WTO/FTA에 대응한 지원체제의 구축 및 어촌지역 활성화 분야는 투융자 비중을 확대하고 수산물가공시설 지원 부문 비중은 축소

《분야별 투융자 규모 및 비중》

(단위: 억원,%)

분 야 별	2005		2009		2005 - 200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0,176	100	12,467	100	55,822	100
◦ WTO/FTA 협상 대응	1,442	14.2	2,659	21.5	8,712	15.6
◦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837	8.2	1,057	8.5	4,482	8.0
◦ 생산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658	6.5	803	6.5	3,505	6.3
◦ 선진 어업질서의 정착	456	4.5	589	4.8	2,816	5.1
◦ 해양환경 개선과 친환경 어업	774	7.6	968	7.8	4,519	8.1
◦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1,337	13.1	1,480	11.9	7,698	13.8
◦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1,355	13.3	889	6.5	5,873	10.5
◦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3,317	32.6	4,022	32.5	18,217	32.6

2. 주요수산 전망지표

전망지표 명	2004년도	2009년도	2013년도
◦ 어가소득(만원)	2,616	3,400	4,500
◦ 어업인구(천명)	210	185	180
◦ 수산물 국내소비량(천톤)	3,922	4,040	4,400
◦ 수산물 생산량(천톤)	2,519	2,650	2,680
◦ 수산물 수입량(천톤)	2,477	2,700	3,040
◦ 수산물 수출량(천톤)	1,116	1,020	910
◦ 어선수(연근해, 척)	89,268	85,230	78,080
◦ 자율관리공동체수	174	750	1,000
◦ 어촌종합개발(권역)	130	187	225
◦ 수산물 직판장	33	48	60
◦ 산지 위판장	240	250	265
◦ 완공 어항수	169	231	265
- 국가어항(105개항)	75	101	105
- 지방어항(313개항)	94	130	160
◦ 수산발전기금 조성(억원)	6,110	9,774	11,000

본 문

수 산 진 흥 종 합 대 책

[목 차]

제1장 제1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의 추진실적 평가 및 반성	31
1. 주요 추진실적('00 ~ '04)	31
2. 추진실적 평가	33
3. 향후 과제	37
제2장 수산업의 여건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	38
1. 수산업의 여건변화와 전망	38
2. 수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41
제3장 새로운 수산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	42
1. 수산정책의 목표와 기본틀	42
2. 추진 체계도	43
제4장 중점추진과제	44
1. WTO/FTA 협상 대응	44
1-1. WTO-DDA/FTA 협상에 적극 대처	46
1-2. WTO/FTA 협상 피해보전 국내대책	50
1-3. 수산물 관세제도 운용방안	57
1-4. 수산발전기금의 재원확충 및 운용활성화	60
1-5. 수산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63
1-6. 어업경영 안정자금 지원	70
1-7. 어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73

1-8.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세제 지원체제 개선	76
1-9.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추진	79
1-10.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도입	81
2.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83
2-1. 수산자원 회복계획 수립 추진	85
2-2. 자율관리어업	88
2-3. 종묘 매입·방류사업	92
2-4. 바다목장화 사업	96
2-5. 인공어초 사업	98
2-6. 총 허용어획량(TAC) 제도	101
2-7. 지속 이용 가능한 적정어획강도 유지	104
2-8.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 활성화	106
2-9. 해외어장개발 지원조사	108
2-10. 연안국과의 협력 및 국제수산기구 활동 강화	111
3.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115
3-1. 연근해어업 체계적 재편 추진	117
3-2.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20
3-3. 양식어업 구조조정	122
3-4. 양식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124
3-5. 외해가두리(내파성·수중) 양식 개발	127
3-6. 원양어업 구조조정	130
3-7.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	132

4. 선진 어업질서의 정착	135
4-1. 불법어업 근절대책	137
4-2. 어업지도선 건조 및 단속장비 확충	140
4-3. 불법양식시설 정비	143
4-4. 어선 안전조업 지원	145
5. 해양환경 개선과 친환경 어업	148
5-1. 해양보전을 위한 오염물질 처리	150
5-2. 해양환경 개선체제 구축	154
5-3. 갯벌생태계 및 습지 보호·관리	160
5-4. 연안어장 정화를 통한 어장환경 개선	163
5-5. 수산물 질병관리체제 확립	166
5-6. 어류양식장 배합사료 공급 확대	168
5-7. 적조의 신속 대응 및 방제 강화	171
5-8. 내수면어업 개발	173
5-9. 방치폐선 처리	176
5-10. 폐어구 수거·관리 및 환경친화적 어구·어법 개발	179
5-11. 친환경 어선건조 및 안전설비 지원	181
6.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184
6-1. 수산물의 웰빙식품화 및 고부가가치화	186
6-2.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	191
6-3. 감천항을 동북아 수산물유통중심기지로 개발	195
6-4. 수산물 유통·물류체계 개선	198

6-5. 시장 지향적 수산물 수급시스템 구축	201
6-6. 주력상품 개발을 통한 수출상품의 부가가치 증대	203
6-7. 수산물 검사기능 강화	208
7.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211
7-1. 수산업 선도인력의 지속적 육성	213
7-2. 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	216
7-3. 수산시험연구의 실용화 기술개발 및 보급	219
7-4. 수산업 발전을 주도할 기술개발 실용화	222
7-5. 수산종합 정보화체계 구축	226
7-6. 어업인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어촌구축	231
7-7. 수산통계의 신뢰도 증진을 위한 조사방법 개선 및 신규통계 확대	233
8.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235
8-1. 어촌종합개발사업	237
8-2.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 추진	240
8-3. 국가어항 개발	244
8-4. 지방어항 개발	248
8-5. 연안정비 사업	251
8-6. 해양레저와 연계한 낚시관리제도 도입	254
8-7. 어촌체험마을 조성	257
8-8. 어업인 복지지원 확대	259
8-9.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교육훈련	262
8-10. 선원의 복지 및 직업안정을 위한 정책	264

제5장 새로운 수산정책을 위한 기반조성	266
1. 수산행정조직 정비	266
2. 법령 및 제도 정비	267
3. 수산진흥종합대책 시행의 효율성 증진	276
제6장 투융자 계획 및 전망지표	277
1. 투융자계획	277
2. 주요 수산 전망지표	280

제1장 제1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의 추진실적 평가 및 반성

1. 주요 추진실적('00 ~ '04)

□ 어업 구조조정 추진

- 연근해어선 감척 추진
 - 어업협정으로 인한 폐업선 포함 총 1,949척 감척(3,600억원)
- 원양어선 감척 추진
 - 원양꽁치붕수망, 원양오징어채낚기 등 34척 감척(259억원)

□ 기르는 어업육성

- 연안어장 정화 추진
 - 11개 시·도에 걸쳐 양식어장 73천ha 정화사업 실시
 - 전남·경남도 9개만(灣) 82천ha 중 45%(37천ha) 정화사업 실시
-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시행
 - 감·어류가두리 양식장 기간 만료시 20% 이내 어장면적 축소 개발
 - 양식장 구조조정 및 노후시설 개량 63개소(113억원)
 - 안정생산 필요 및 재해 우려 양식품종(김, 미역, 어류, 굴, 우렁쉥이 등)의 신규 어장개발 금지
- 지속적인 부실양식장 정비 및 불법 양식어업 지도·단속
 - 불법가두리 총 19천대(대 : 5m×5m) 철거 완료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 수도권 도매시장에 대해 패류 및 선어에 대한 실질경매제를 실시하여 완전 정착화
 - '03. 9월부터 선어류에 대해 실질경매제 시범 실시하고 '04. 1월부터 본격 실시

○ 유통시설 확충

- 산지 위판장(17개소, 58억원), 수산물 직매장(15개소, 49억원)
- 부산 감천항 도매시장 건설('95~'06), 부산 자갈치시장 현대화 추진('03~'06)

○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 완료

- 총 95개 산지 조합위판장의 정보화 완료(59억원)
- 인터넷 수산시장(전자상거래용) 구축(총 300여개 어가 입점)

□ 풍요로운 어촌개발 및 해양방제 능력 보강

○ 어촌종합개발 사업 45개 권역 신규개발 등

- 관광시설 등이 연계된 집중투자 방식으로 전환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
- 어촌민속전시관 7개소 및 어촌체험마을 40개소 조성

○ 국가어항 12개항 완공, 지방어항 35개항 완공

- 어항법 개정으로 399개 어촌정주어항 신규 지정

○ 어업인 후계자 육성 및 어업인 지원 등

- '04년말 총 16,029명 선발·육성으로 전체 어가구의 22% 차지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정('03. 3)으로 선원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 보험을 일원화하고 5톤 이상 승선 어선원의 보험가입 의무화

○ 해양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제능력 보강

- 방제정 4척 추가 건조로 현재 19척 보유
- '04년말 총 14,800톤의 방제능력 보유

2. 추진실적 평가

가. 총 평

- '94년 UN 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이은 한·일('98. 11), 한·중('00. 8) 어업협정의 체결로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의 조업수역은 협정체결 이전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으며
- 이러한 조업수역의 축소와 자원의 고갈로 연근해 해면어업의 생산량은 '96년을 정점으로 이후 꾸준히 감소된 반면, 중국산 등 수입수산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어업경영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음
- '00~'04년간 추진된 제1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은 이와 같은 국내·외의 심각한 수산업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빈사상태에 있던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음
- 수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하여 우선, 자원량을 초과하는 어선세력의 감축을 추진하여 대책기간중 어선 총 1,349척을 감척하고, 총 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을 9개 어종으로 확대하는 등 자원의 지속적 이용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 '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성장한 양식어업은 어장의 오염, 일부 품종의 과잉시설 등으로 대책기간중에는 오히려 사업축소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의 실행에 주력한 바 있음
 - 어촌개발사업은 관광시설 등이 연계된 집중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업비인 농특세의 확보가 부진하여 사업성과 거양이 미흡하였음
 - 한편, 해양방제능력 강화 부문에서는 동 기간중 방제정 4척을 추가 건조하고 인접국가간 방제협력 강화 등 입체적인 방제능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

- 제1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은 이와 같이 우리 수산업의 최대위기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였으나, 대책기간중 어가소득은 매년 6% 증가하고 연근해수산물 생산량은 매년 2% 증가하는 등 양식의 약진에 힘입어 수산업이 비교적 안정기조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어가소득(만원) : ('00) 1,962 → ('04) 2,616

※ 연근해수산물 생산량(천톤) : ('00) 1,863 → ('04) 2,020

- 그러나, 어가소득은 아직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68% 수준이며 어획, 불법어업, 어촌의 낙후 등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여기에 세계무역질서의 재편으로 인한 WTO/FTA의 거센 도전 등 새로운 난관이 기다리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미흡

나. 잘된 점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결과, 전체적으로 약 35%의 감척효과가 있었으며, 근해어업중 8개 업종의 경영이 개선됨

- 또한, 지속적인 불법어업단속으로 불법어선의 실질조업 척수가 약 40% 감소되고, 불법어업 종사선원 이탈현상도 증가추세이며 특히, 해경과의 입체적 단속으로 단속효과가 크게 증대하였음

※ 단속실적 : ('02) 3,102건 → ('03) 2,067건 → ('04) 3,673건

- 어업인 스스로가 바다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인 자원관리로 지속가능한 어업관리 체계를 구축코자하는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확대로 향후 수산업 부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됨

※ 공동체 참여 확대 : ('01) 63개소 → ('02) 79개소 → ('04) 174개소

- 2000년 8월 중국산 납꽃게 사건시 중국산 수산물에 대하여 과감한 전량 금속탐지기 검사제를 실시하여 위해수산물을 사전 적발, 국내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부 위생당국으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얻음
- 가락동시장 등 수도권 3대 도매시장에서 패류, 선어류에 대하여 실질경매제를 실시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어대금 결재로 어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임
 - ※ 패류 11개 품목 실질경매 실시 : '01. 5
 - 대중 선어류 실질경매 실시 : '04. 1
- 2001년부터 10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 어선공제료의 50%를 신규 지원하고 2002년부터 20톤 미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소형 어선에도 실질적인 보험제도의 혜택을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
- 2004년도 포클랜드 수역의 어획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원양 오징어채낚기의 국제경쟁력제고와 어업경영안정을 위해 오징어 채낚기어선 감척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3척→20척)하여 2013년까지 계획된 감척물량을 2004년도에 완료

다. 미흡한 점

- 어선감척 예산의 확보가 부진하여 감척실적이 당초 목표에 다소 미흡하고 불법어업이 아직도 생계수단이라는 이유로 중지되지 않고 일부에서는 집단적으로 합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는 등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증가한 육상기인 폐기물과 어업인이 방치·폐기한 어구 등 해양폐기물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원을 감소시키고 있고, 연안지역 쓰레기 처리시설이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해양환경오염의 효과적인 통제 및 사후처리 미흡

- TAC 제도의 목적, 필요성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고 TA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행정능력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우리나라 연근해에 대한 신뢰성 있는 과학적인 부존 자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TAC를 비롯한 중장기 어업정책 추진에 상당한 한계요인으로 작용
-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적지조사가 단편적, 단기간의 조사에 그쳐 수심, 조류, 지질 등 다양한 해양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기 설치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의 미비로 사업효과에 대한 불신 초래
- 질병발생시 폐기 등의 법적근거가 없어 연쇄적인 질병감염 및 항생제의 과잉투여를 초래하여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문제 야기
- 어촌의 문화·의료·교육시설의 전반적인 낙후·미비와 자원감소, 대체소득 수단 부재로 인한 어가소득의 정체로 젊고 참신한 신규 후계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어촌지역의 활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집중적인 투자가 미흡

3. 향후과제

□ 새로운 자원조성·관리체제 구축으로 수산자원회복 추진

- 자율관리어업의 전국적 확대 및 활성화
-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종묘방류 및 인공어초 시설, TAC제도의 확대 정착
- 어업구조조정의 지속실시 및 단호한 불법어업 근절대책의 추진

□ WTO-DDA/FTA 대비 합리적 지원체제의 정비

- 협상추진에 따른 보조금 및 관세에 관한 단계별 국내대책의 실행
- 면세유 등 지원제도를 가능한 한 유지하되, WTO-DDA협상결과 지원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어업인에 대한 직·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 생산지와 소비지의 수산물 가격편차 축소

□ 해양환경 정화와 친환경 어업 유도·확산

- 해양오염물 처리 확대 및 해양오염 감시체제 구축
- 어장정화 규모 확대와 적조의 신속대응 및 방제 강화
- 수산생물의 전염병 예방체제 구축

□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 수산후계인력 등의 선도그룹 지속적 육성
- 주 5일제의 여가수요를 흡수하는 어촌관광 소득창출 방안 모색
- 어촌 주민의 복지후생과 삶의 질 향상

□ 신 해양질서에 걸 맞는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육성

-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한 국제수산협력 강화
- 해외어장 개발 등 지속 가능한 원양어업 기반 구축

제2장 수산업의 여건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

1. 수산업의 여건변화와 전망

□ WTO-DDA/FTA 협상진전 가속화

- WTO-DDA의 협상에서 미국, 뉴질랜드 등 수산물 수출국의 입장이 반영될 경우, 대폭적인 수산보조금의 감축과 관세인하가 불가피하여 수산정책에 대한 국제적 제약이 증대
 -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와 큰 규모의 수산보조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우 큰 타격이 예상
 - ※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의 규모는 일본 등에 이어 세계 4위, 평균관세율은 18%로 OECD 국가중 2위
- 칠레('04. 4)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일본, 아세안 등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는 FTA 협상에서는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여부와 협상 결과에 따라 위기와 기회의 양면을 공유
 -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수산업에도 적용 불가피
 - ※ 칠레('04. 4 협정발효), 싱가포르('05년 중반), 일본('05년 말) 외에 아세안, 멕시코, 캐나다, 인도 등 국가와 협상논의 또는 준비중

□ 어업경영여건의 악화

- 어업자원과 어업인력이 빠른 속도로 감소
 - 어업자원에 비해 어선세력의 과다로 어장생산성 하락
 - 유능한 신규 인력의 진입 감소로 후계인력이 양적·질적으로 저하되고 어촌의 고령화 심화
- ※ 생산량(연근해, 어선어업) : ('00) 1,189천톤 → ('04) 1,077천톤
- 생산량(양식수산물) : ('00) 653천톤 → ('04) 918천톤
- 어선세력(연근해) : ('00) 92,652척 → ('04) 89,268척
- 어가인구 : ('00) 251천명 → ('04) 210천명
- 50대 이상 어업종사자 : ('00) 55% → ('04) 62%

○ 수산물의 국내 수요증가와 우리 수산물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01년부터 수입국으로 전환

※ 국내소비량 : ('00) 266만톤 → ('01) 326만톤 → ('04) 392만톤

수 출 량 : ('00) 134만톤 → ('01) 122만톤 → ('04) 111만톤
(1,504백만\$) (1,274백만\$) (1,279백만\$)

수 입 량 : ('00) 149만톤 → ('01) 190만톤 → ('04) 247만톤
(1,411백만\$) (1,648백만\$) (2,261백만\$)

○ 해양환경변화로 주 어획 어종이 명태, 대구 등 한류성 어종에서 고등어, 멸치 등 난류성 어종으로 변화

- 또한 참조기, 붉은대게 등 고가어종의 생산이 감소하고 고등어, 멸치, 오징어 등 저가 어종의 상대적 생산 증가

※ 명태 생산량(연근해) : ('91) 10천톤 → ('95) 7천톤 → ('04) 0.1천톤

오징어 생산량(연근해) : ('91) 110천톤 → ('95) 201천톤 → ('04) 213천톤

□ 어촌의 자생력 및 경쟁력 약화

○ 전체경제와 수산업부문간 성장격차의 확대 및 어가부채의 증가로 어촌의 자생력 약화

※ 어가부채 추이(천원) : ('00) 22,293 → ('02) 28,792 → ('04) 32,544

○ 오랜 수혜적 수산정책의 추진으로 어업인의 정부의존도 심화

- 자원상태와 경영여건을 무시한 어업규모(톤, 마력, 어구사용량) 확대로 자원남획→ 경영악화→자원남획의 악순환 지속

- 불법어업과 경영실패의 책임까지도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는 등 어업이 독자산업으로서의 기반 약화현상 지속

□ 전통적 식습관의 변화와 고품질 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경우 고품질 수산물 소비의 증가 예상

- 원료상태의 소비에서 일부가공 또는 전체가공 형태로 소비 변화

- 맛벌이 부부가정의 증가로 찌개 등 전통적 식단에서 간편하고 빠른 서구식 패스트푸드형 식사형태로 전환

※ 연간 국민 1인당 수산물소비(kg) : ('70) 17.3 → ('80) 27.0 → ('95) 45.1 → ('00) 36.8

- 국민소득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식품안전, 웰빙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 소비패턴의 다양화·고급화로 싼 가격보다는 안전성, 브랜드, 신선도 등 고품질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짐

※ 횡감용 활어 국내유통량 : ('00) 61천톤 → ('04) 118천톤

- 참치, 바닷가재, 연어, 넙치, 새우류 등 고급품목에 대한 수요 증가

□ 관광수요의 변화와 휴식공간으로서 어촌지역에 대한 선호도 증가

- 생활수준 향상 및 ‘주5일제’ 근무확산 등에 따라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

-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종전의 ‘산+ 명승지방문’ 중심의 관광수요가 ‘바다+ 레저활동’ 중심으로 전환

- ‘경유형 관광’ 에서 ‘체재형 관광’ 으로 관광패턴 변화 확산

※ 해양관광 수요 : ('00) 8,400만명 → ('03) 9,200만명 → ('10 전망)11,600만명

- 어촌지역의 고유자원을 보전하여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창출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어촌생활환경·관광기반시설 개선 및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변화 가능

2. 수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정부주도 ⇒ 민간자율

일률적인 정부주도정책에 한계

- ◆ 기존의 일방 수혜적 정부지원정책으로 수산업의 자생력 약화
- ◆ 일률적 정책으로 다양한 여건 변화 수용 곤란



어업인 자율부문의 확대

- ◆ 자율관리어업의 확대, 자율조정협의회를 통한 어업분쟁해소 등
- ◆ 민간출하조절사업 확대

일괄지원 ⇒ 선택과 집중

특성을 무시한 일괄 균등 지원

- ◆ 소액균분 지원으로 정책성과 미흡
- ◆ 성공모델이 없는 하향평준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모델 발굴

- ◆ 전국 24개소 어촌관광 거점 개발
- ◆ 경쟁력 없는 업종 우선 감척 등

공급중심 ⇒ 소비·수요중심

자원량과 소비를 고려치 않는 증산정책의 한계

- ◆ 과다어획 → 자원 고갈의 악순환 지속
- ◆ 일시 과다출하로 수산물 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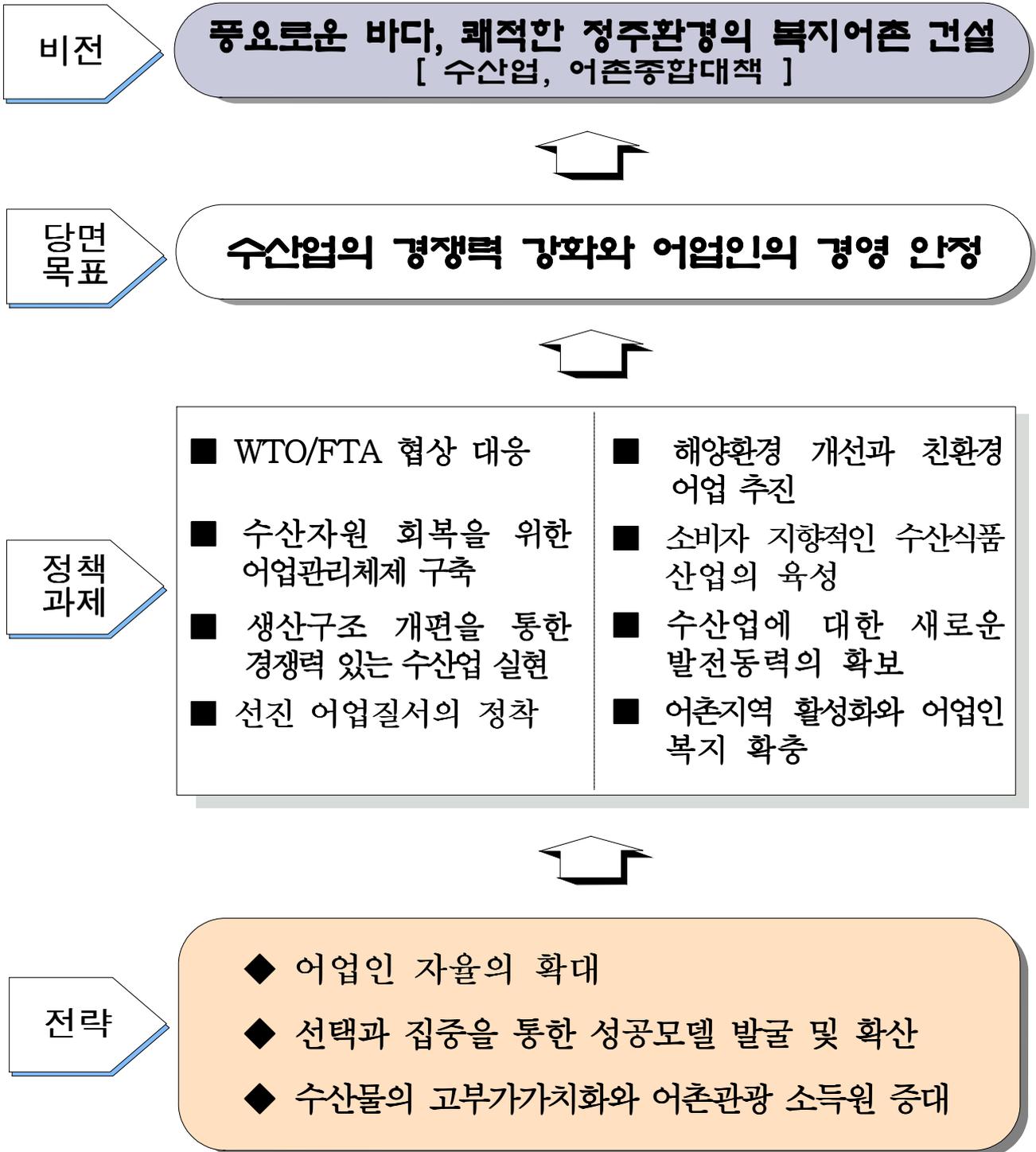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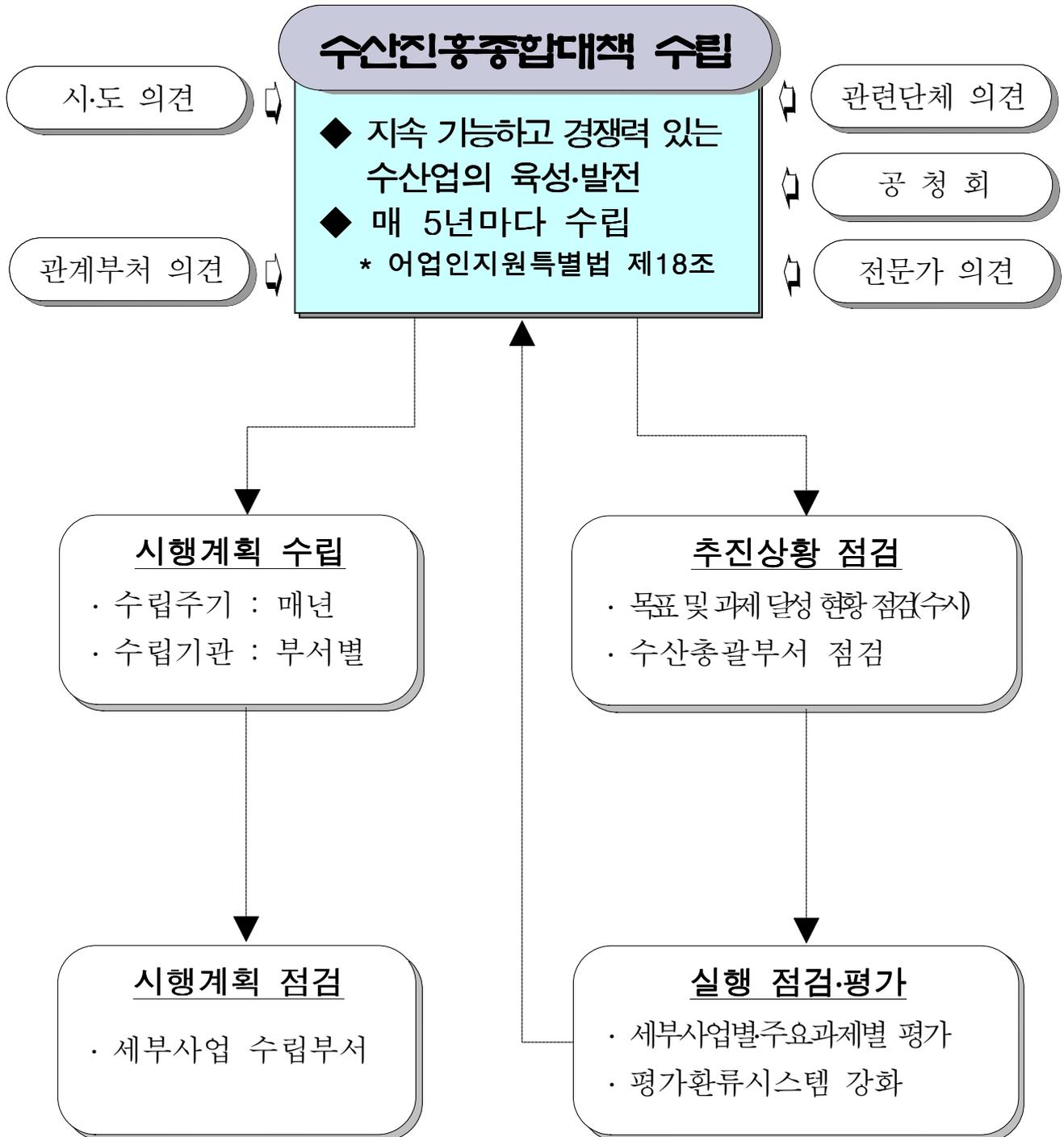
- ◆ 수산물 품질 인증제·브랜드화 추진
- ◆ 웰빙 수산식품 및 기능성 양식수산물 개발

제3장 새로운 수산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

1. 수산정책의 목표와 정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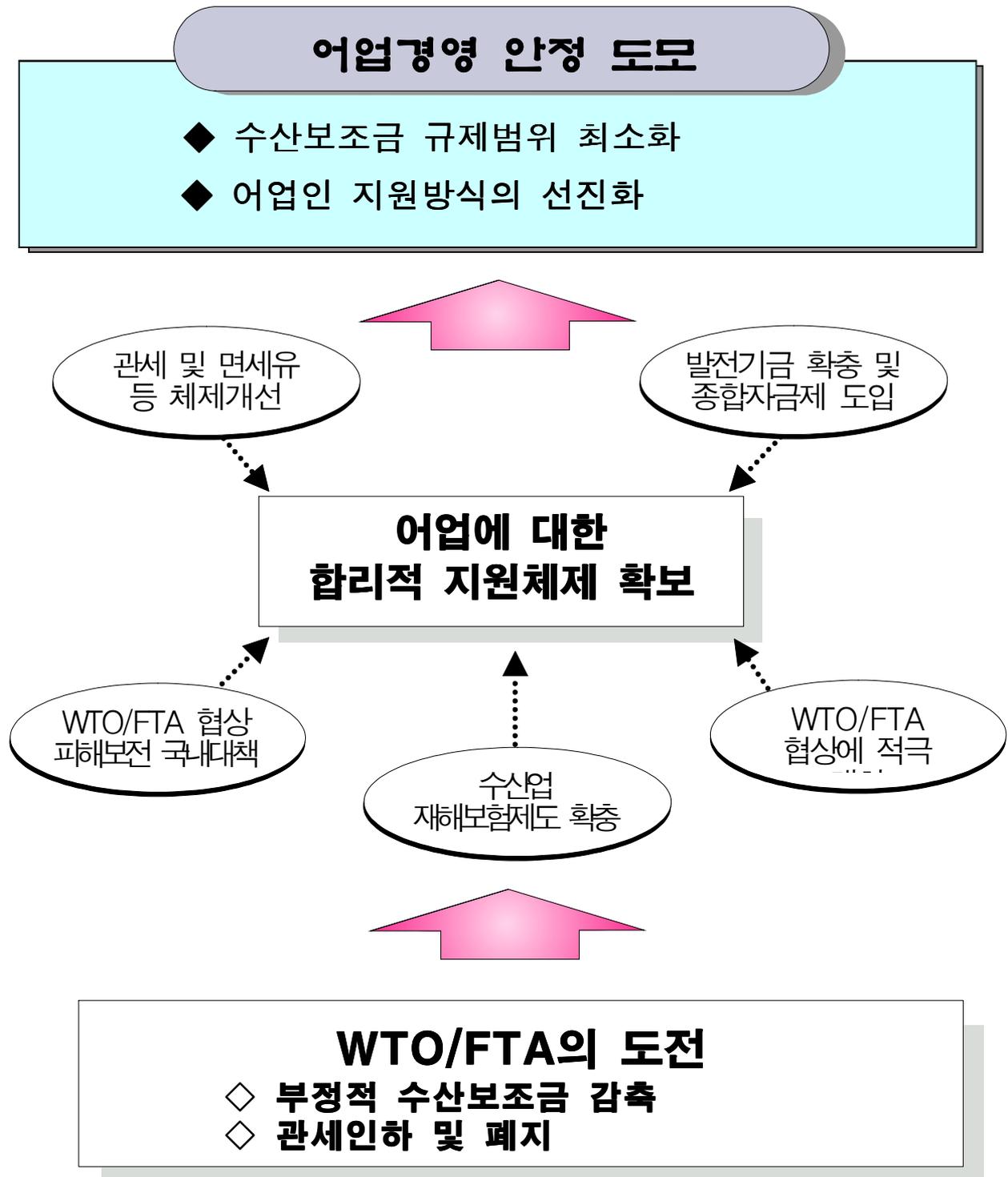


2. 추진 체계도



제4장 중점 추진과제

1. WTO/FTA 협상 대응



□ WTO/FTA 협상에 적극 대처

- WTO 협상에 있어 수산보조금의 규제범위를 최소화하고 수산물이 무세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조국과 협력 강화
- FTA 협상시 국내수산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한 협상 추진

□ WTO/FTA 협상단계별 국내대책 마련

- 단계별 시나리오별 주요업종 및 어종별 경쟁력 실태 분석후 지원정책 추진
- 면세유 등 세제지원 제도를 가능한 유지하되, WTO 협상결과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엔 어업인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양식장 배합사료직불제, 어장휴식년제·휴어제 및 친환경기자재(어망, 어구 등) 사용어가 직불제 등 긍정적 직불제 확대
- 수산물 품목분석으로 기본관세체계 다단계화(무세, 저관세, 고관세 등)

□ 수산발전기금 확충 등 지원제도 정비

- 수산발전기금에 환경개선부담금 등 신규 재원의 확충으로 기금규모를 확대하고 어업인 집중 지원체제로 개편
- 어가부채경감대책의 적극 추진으로 어업경영능력 회복 도모
- 수산정책자금 각 사업을 통합하여 업계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수산업종합자금제도 신설

□ 수산업 재해보험제도 확충

- 어선원및어선보험 국고보조율 확대 및 어선원보험 가입률('04년 65% → '09년 85%) 제고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으로 양식어업경영의 안전망 확충

1-1 WTO-DDA/FTA 협상에 적극 대처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WTO 협상동향>

- '01. 11 제4차 Doha 각료선언을 통해 출범한 WTO/DDA 협상은 '04. 8. 1 향후 세부원칙(Modality)협상의 기본골격(Framework)에 대하여 합의
 - 특히, 수산보조금에 대한 기본골격은 “규율의 필요성 여부에서 구체적인 규율방안으로 논의중심이 이전” 되어 보조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개시
- 관세분야는 '04. 8월 현재, 수산물에 대한 무세화(無稅化) 논의는 일단 완화되었으나 비선형(non-linear) 관세인하 공식에 따라 대폭적인 관세 삭감이 불가피

<FTA 협상동향>

- '98. 11. 5 대외경제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한·칠레 FTA 추진결정
- 한·칠레 FTA 체결, 한·일 및 한·싱가포르 FTA 추진 등 본격적인 FTA 시대 진입
 - 한·칠레 FTA는 협상 타결('02.10.25) 후 협상 발효('04. 4. 1)
 - 한·싱가포르 FTA는 '05년 하반기 발효 예정, 한·일 FTA는 '05년 타결을 목표로 정부간 협상 추진중
 - 기타 아세안, EFTA(북유럽 4개국), 멕시코, 캐나다, 인도 등과의 FTA 추진 및 준비 중

□ 문제점

- WTO 협상타결은 '05년 말까지로 예상되나 협상방향이 국제역학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사전에 피해예상분야, 피해액의 추산과 향후 협상결과의 예측 곤란
- FTA 체결도 상대국별로 수산물 수출입 여건이 다르고 또한 구체적인 협상시 품목별로 관세양허 여부, 양허범위, 시기 등이 협상카드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예상 분야, 피해액 추산이 곤란
- 다수국가와 동시 FTA 협상 추진시, 늘어나는 FTA 협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FTA 협상에 대한 인식부족과 협상진행 상황에 따른 사업별 대책검토 부족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WTO 협상전망

- WTO-DDA는 '05. 12월 제6차 각료회의(홍콩)까지 협상타결 목표
 - '04. 8월 협상기본골격 합의에 따라 협상분야별 구체적 논의 진행
- '05. 12월에 협상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의 국내절차 및 이행기간을 감안할 때 일정기간 내에 영향이 나타남

□ FTA 협상전망

- 일본과의 FTA 협상을 계속하고 아세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캐나다와는 '05년 협상 개시
 - 기타 멕시코, 인도, 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과도 공동연구 진행
- FTA는 상대국별로 여건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전망키 어려우나 관세양허, 원산지 인정기준이 쟁점이 되며
 - 해당 품목의 국내생산량, 국내수요, 관계 어업인수 및 수출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 어업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협상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 WTO 협상대책

○ 수산보조금

- 수산보조금에 대한 특별규제는 불가피하므로, 규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규제범위를 최소화하고 유예기간 최대한 확보
- 특히, 면세유제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협상력 강화

○ 수산물 관세

- 수산물이 무세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계속 노력하는 한편
- 관세인하공식에서는 '민감품목'으로 인정받아 신축성을 확보토록 대처

□ FTA 협상대책

○ ASEAN 및 EFTA FTA : 국내 수산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한 협상 추진

- ASEAN과는 태국 등 수산강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수산업에 영향이 큰 민감품목은 양허제외 또는 장기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 부여
- EFTA는 수산 선진강국이므로 양허이익을 고려하고 고등어 등 일부 민감품목에 대하여는 신중한 협상 추진

○ 한일 협상

- 한일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대체로 공산품 열세, 수산물 일부품목 우세
- 그러나 경쟁력이 우세한 일부 일본 수산물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 피해 우려
- '05년 타결을 목표로 상호간에 각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협상 추진

○ 멕시코, 인도, Mercosur 등 FTA 공동연구

- 수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시켜 FTA 협상시 적극 활용
- 관세양허 등에서 우리수산업에 민감한 품목을 최대한 보호

라. 추진일정

- WTO/FTA 협상 진행 : 계속
- WTO/FTA 협상진행에 따른 영향조사 및 분야별 대책수립 : '05 ~ '06

1-2 WTO/FTA 협상 피해보전 국내대책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WTO/FTA의 협상에서 대폭적인 수산보조금의 감축과 관세인하가 예상되며 향후 수산정책에 대한 국제적 제약이 증대
 -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와 큰 규모의 수산보조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우 큰 타격이 예상
 - ※ 우리나라 보조금 8천억원(면세유 제외), 수산물 평균관세율 18%
- WTO/FTA 협상에 대한 국내대책은 어업인 피해보전에 관한 대책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나눌 수 있으며
 - 이중 경쟁력 강화대책은 사실상 수산정책 전반을 지칭하게 되므로 본 사업에서는 피해 보전에 관한 부분만을 대상

□ 문제점

- WTO/FTA 협상이 추진중이므로 협상의 내용에 따라 피해내용, 규모 등이 달라지므로 피해를 사전에 추정하기 어려움
 - 또한, 협상결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나치게 공론화하는 것은 협상에 있어 우리나라의 입지를 약화시킬 우려 있음
- 어업인 피해지원에 있어서도 피해와 직접 상응하는 소득보전은 곤란하므로 감척이나 여타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법을 택하여야 함

나. 단계별 추진전략

1단계

보조금 규제대상에서의 제외나 허용가능 보조금으로 전환 및 관세인하 유예기간 최대화를 위한 협상 추진

- ▷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제범위 최소화를 위해 입장 유사국 뿐만 아니라 Fish Friends Group 등과도 비공식 협의강화 및 협상논리 개발 강화
- ▷ 수산물을 무세화대상에서 제외, 민감품목 신축성 확보를 위한 일본, 대만 등과의 공조관계 긴밀화 및 Fish Friends Group과 양자협의를 통해 설득 노력

2단계

금지성 보조금의 지원축소 및 허용가능 보조금의 점진적 확대

- ▷ 매년 예산 편성시 보조금의 성격규명 및 허용이 예상되는 보조금 확대

3단계

주요업종 및 어종별로 경쟁력 실태분석 및 피해보전 대책

- ▷ 무세화, 보조금 일부지급중지, 보조금 전면 지급중지 등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 부과로 업종의 경쟁력 분석 및 피해보전 대책

4단계

수산보조금의 규제로 인한 절감 예산을 허용 가능한 방법으로 어업인에게 지원

- ▷ 어업인 지원의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어선 감척, 직불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을 통한 어업의 자립기반 조성 및 수산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어업인의 기존 지원수준 최대한 유지

다. 세부추진계획

□ 예산편성시 금지성 보조금(금지가 예상되는 보조금)의 축소 및 허용성 보조금(허용이 예상되는 보조금)의 확대

- 금지성보조금인 경우 담당부서별 대응책 마련
 -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논리 미흡시 연차별 예산축소 계획 마련 또는 사업폐지 적극 검토
- 허용성 보조금의 연차별 확대
 -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허용성보조금의 점진적 확대 추진

□ 주요업종 및 어종별 경쟁력 실태분석

○ 주요어종 및 업종 선정

- 전문가 및 어업인 대표 연석회의를 통해서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경쟁력 분석대상 어종 선정(20개 전후)
- 선정된 어종과 관련된 업종의 선정

○ 주요어종 및 업종 경쟁력 실태분석

- 주요어종 및 업종의 실태와 조건 부과시의 국제경쟁력 여부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 ※ 조건부과 : 보조금 일부 지급중지, 보조금 전면 지급중지 등 가능한 단계별 시나리오 부과
- 분석용역 추진 : '05년 ~ '06년중, 9개월 ~ 1년간(KMI)
 - ※ 우리 부 담당자의 적극 참여 및 현장 어업인의 참여로 분석결과의 타당성 제고

○ 실태분석 결과 피해보전대책

- 경쟁력이 있는 업종(피해경미 업종) : 정책지원대상에서 제외
- 경쟁력 없는 업종(피해우심 업종) : 우선 감척지원 및 직불제 등 집중 시행

□ 어선감척 대책

○ 감척목표

-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수준에 적합한 어선세력의 유지
- 업종별 생산물이 일정한 국제경쟁력 유지수준까지 감척

○ 감척보상

- 어업손실액은 입찰을 통해 결정하고 어선잔존가치는 감정평가하여 지급
- 입찰제 도입 등으로 사업추진절차의 신속성과 정당한 지원시스템 구축
-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의 척당 단가(111백만원, 지방비 20% 포함)을 상향 조정할 필요

○ 감척순위

- 연안어선 감척은 '08년까지 6,300척 감척 추진하되 자원에 미치는 영향 및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해가 심하고 경쟁력이 약한 업종 순으로 감척
- 근해어선 감척은 WTO-DDA 협상결과 면세유 중단, 고유가 지속 등 어업여건이 변할 경우 추가 감척 검토

○ 감척예산 확보

- 수산보조금의 폐지에 따라 해당예산을 일반회계나 기금으로 전환하여 활용
- 예산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성 설득

□ 직접지불제의 도입 확대

○ 필요성

- 미국, 뉴질랜드 등 수산물 수출국 및 환경 NGO 입장이 반영되어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원칙이 채택된다면 기존의 면세유, 영어자금 등 수산보조금 지원 곤란
- 기존의 보조금 지원방식의 대체방안으로써 직불제의 가능성 개별 검토 필요

○ 실행가능한 직불제의 종류(KMI, '02.12, 연구용역 기준)

- 친환경 직접지불제 : 양식배합사료, 유기산, 환경친화형 어구 및 기자재 직접지불제, 어장 휴식년제
- 자원보전 직접지불제 : 휴어제, 윤채제(輪塚制)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 노령어가 조기은퇴, 조건불리 어촌
- 재해보상 직접지불제 : 재해보험 일정금액 국가지원

○ 향후추진계획

- 배합사료 직불제 확대('04 : 50억 → '05 : 100억 → '08 : 500억)
- 휴어제 조속 도입
- '05년 도입방안 연구용역(KMI, 2억)
- '06년 시범사업 실시이후 본격 실시
- 휴어제와 윤채제의 병행 및 해양쓰레기 수거사업과 연계실시
- 기타 경영이양 직불제 등 가능한 직불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후 단계별 도입 추진

□ 해양쓰레기 수매제 확대

○ 필요성

- 지자체와 어업인 참여유도를 통하여 해양환경보전 의식 제고
- 휴어제 및 운채제 등 직접지불제와 병행하여 시행시 어업인 소득보전 효과
- 해양환경보전으로 우리 부의 자원회복 계획에 일조

○ 추진계획

- 국고 70%, 지방비 30%로 사업추진(지방비 상향조정으로 다수 지자체 참여 유도)
- 수협중앙회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의무 부과 및 참여 어업인에게 소정의 보상금 지급 대행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5)	2단계 (2006년 이후)
직접지불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합사료 직불제 시범사업 및 본사업 실시 ◦휴어제 연구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 계속 ◦휴어제,노령어기조기은퇴조건불리어촌직불제 시범사업 및 본사업 실시 ◦친환경기자재 시범 및 본사업 실시 ◦어장휴식년제 시범사업 실시 및 확대
주요업종 및 어종별 경쟁력 실태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어종 및 업종선정 (20개 전후) ◦주요어종 및 업종 경쟁력 실태분석 용역실시('05-'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태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 및 추진
쓰레기 수매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 수매 확대 -'05년 29개소, 3,200여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 수매사업 계속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별	재원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FTA 피해지원	◦ 보조사업	-	309	-	-	-	109	200
	◦ 기금사업(여유자금)	-	607	-	-	99	155	353
일반회계(신규재원)	◦ 보조사업	-	490	-	-	-	200	290
직접지불제 (배합사료, 휴식년제, 기자재 등)	◦ 국고사업(농특)	50	1,420	100	120	300	400	500
	- 보조	50	1,420	100	120	300	400	500
수산업회생자금	◦ 민간자금	20	350	20	30	50	100	150
	- 융자	20	350	20	30	50	100	150

1-3 수산물 관세제도 운용방안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전체 407개 수산물 품목(HS분류)의 기본관세는 3~50%까지 7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18%(비농산물 평균 : 6.7%)
 - ※ 중국 12%, EU 11%, 일본 6%, 미국 2%
- 수산분야는 비농산물 산업 중 양허 수준이 가장 낮고, 고관세 운용 품목이 많은 민감 분야임
 - 전체 조정관세 품목(19개) 중 수산물이 11개로 대부분을 차지
 - ※ 우리나라 수산물 관세율 구조

구 분	품목수	양허 수준	평균양허세율	15%이상 관세비중	평균실행세율
국가 전체 (비농산물)	9,552개	90.4%	11.7%	19.1%	6.7%
수산물	407개	43.0%	17.6%	68.6%	18.1%

□ 문제점

- 높은 관세율에 의한 수산업 보호로 무세화시 큰 피해 예상
 - 우리나라는 '97년 수산물 시장 개방 후 고관세로 수산업 보호
 - 이러한 고관세 정책이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부분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어업인의 자생력을 약화시킨 측면 또한 있음
- 또한 현재의 낮은 양허율과 고관세는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장기적으로 WTO/FTA 추진에 따른 무세화 내지 관세인하로 인해 정책수단으로서의 관세 활용 여지가 축소될 전망

나. 추진방향

- WTO 협상, 각종 FTA 추진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기존의 고관세를 통한 산업보호 일변도에서 탈피, 수산업 구조조정과 국내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내지 자생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수립·운영

다. 세부추진계획

- WTO/DDA 및 FTA 체제하의 수산물 기본관세정책 재정립
 - 수산물의 품목별 특성(수산물 수급동향, 소비자 선호도, 국내 수산업 경쟁력 등) 분석·검토를 통한 수산물 기본관세체계의 다단계화 추진(무세화, 저관세, 고관세 품목)
 - 국내생산이 없고, 국내 수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품목의 대폭적 관세인하 및 무세화
 -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세 상향조정
- 조정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신축적 운영
 - 국내 연근해 및 원양업계의 어려움을 고려, 일정기간 조정관세 제도를 유지·운영하되 품목별로 수입동향, 국내 생산 및 소비 등 수급동향, 국내외 가격차 등을 감안 품목선정 및 세율책정에 신축·탄력성 부여

- 할당관세, 관세감면 등 관세지원제도의 적극적 활용
 - 관련업계,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세감면 및 할당관세적용 품목 확대 추진으로 양식업계 등 국내수산업 활성화 도모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5)	2단계 (2006)	3단계 (2007년 이후)
수산물관세 정책방향 재정립	◦WTO 관세협상 동향 및 추이 파악	◦수산물 기본관세율 개편 추진	◦WTO 관세협상결과에 따른 수산물 관세 개편
조정관세 등 관세제도의 신축적 운용	◦조정관세 5개년 예시제 도입 추진	◦관세감면 품목 확대 추진	◦각종 관세제도 정비·보완

1-4 수산발전기금의 재원확충 및 운용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국제어업질서의 재편에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산발전기금 설치
 -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1년 7월부터 운용 개시
 - 정부출연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어항토지매각대금 등으로 조성하여 어업경영자금, 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개선 등에 지원
- ※ 운용규모 : ('03실적)1,561억원→('04실적)2,416억원→('05계획)6,110억원
- 최근 WTO-DDA 협상, FTA 체결 등 세계무역질서의 급속한 변화로 국내 수산업의 경영여건 악화 및 부담 가중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특별법의 제정('04. 3)으로 FTA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피해지원이 수산발전기금의 용도로 추가

□ 문제점

- 신설기금으로 운용역사가 짧고 재원이 부족하여 WTO-DDA 협상, FTA 체결 등에 신속적 대응을 위한 기금 재원확충 필요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자체재원의 부족

- 기금 운용규모가 적어 보조사업 등 다양한 행태의 사업수행 곤란
 - 기금의 운용규모 확대를 위해서 보조사업 등 경상사업은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용자사업 위주로 자금 지원중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05년도 수산발전기금의 운용규모는 6,110억원으로 '04년 계획 대비 191.3% 증가할 전망
 - ※ '05년도에 농림부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중 수산부문('04년도 운용규모 3,888억원)이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
- 효율적·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재원확충을 통한 규모 확대
 - 기존 기금재원의 규모 확대, 새로운 재원 발굴 추진
- 기금운용의 활성화 및 내실화로 WTO-DDA협상, FTA 체결 등에 능동적 대응수단으로 기금의 역할강화 및 위상제고
 - 운용체제 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 등

다. 세부추진계획

- 재원확충을 위하여 정부출연금의 지속 확보 및 신규재원 발굴
 - 정부출연금 : ('03실적)650억원→('04실적)550억원→('05계획)400억원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해양자원조성금(신설) 등을 기금 재원으로 편입

- 세계무역질서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체제 구축
 - 수산발전기금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운용제도 개선
 - WTO-DDA, FTA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추진
- 어업인을 집중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5)	2단계 (2006)	3단계 (2007년 이후)
수산발전기금 재원확충 및 운용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안기금중 수산부문 이관 ○기금재원확충 및 신규 재원 발굴 ○기금운용체제 개선 ○신규사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재원확충 및 신규 재원 확보 ○WTO-DDA협상, FTA 체결에 따른 지원사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DDA협상, FTA 체결에 따른 지원사업 본격 추진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수산발전 기금 출연	○ 정부출연금	(550)	(2,800)	(400)	(450)	(1,000)	(800)	(550)
	- 전입금	(550)	(2,800)	(400)	(450)	(1,000)	(800)	(550)

1-5 수산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수산업은 불확실성 및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대부분 국가 정책 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그러나 어업인들은 담보력 부족 등으로 정책자금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WTO-DDA 협상에 있어 수산보조금 감축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다루고 있어, 협상결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 상존
- 따라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수혜 받지 못하는 어업인들이 일정 존재할 수 밖에 없고, WTO-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수산업이 입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산정책자금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수산업종합자금제도의 부재로 효율적인 지원에 한계 노정
 - 민간금융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대손보전제도 미흡

□ 문제점

- 수산업종합자금제도의 부재
 - 현행과 같은 개별사업중심의 자금지원방식과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별개로 공급하는 방식은 효율적 지원에 한계
 - 정책사업대상자를 행정기관에서 선정함으로써 신용 및 담보상태, 경영능력 등이 부족한 어업인에게 대출시 부실 가능성 내재

- 정책자금 대출의 다중 채무채권 관계설정으로 어업인 부실시 수협도 부실 우려

※ 일본의 경우,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공익기관에서 손실을 책임지고 어협 (우리의 수협) 등은 대행기관으로서 이차보전만 받음

< 기존의 자금지원방식과 종합자금제도의 비교 >

구 분	기존 투융자제도	종합자금제도(안)
지원방식	◦ 개별사업 중심 지원	◦ 어업인 중심 지원
대 상 자 선 정	◦ 시장·군수	◦ 금융기관 - 시군의 어정시책 합치검토 - 사업타당성 심사후 최종 확정
지원시기	◦ 연 1회 신청 (신청→지원 1년 6개월 소요)	◦ 연중 수시 신청, 수시 지원 (신청후 1개월 이내 지원)
지원내용	◦ 1회성 시설자금 위주지원 ◦ 신규시설투자 위주지원 ◦ 채권관리 : 금융기관 사업관리 : 행정기관 ◦ 사후 경영지원 미흡	◦ 시설·운영자금의 연계지원 ◦ 신규시설, 기존시설 연계지원 ◦ 채권관리, 사업관리를 금융기관이 일괄 담당 ◦ 경영실태 파악에 의한 체계적 사후관리

○ 기존 대손보전제도의 한계성 노출

- 어업인 및 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사후 지원제도인 「대손보전기금」 역할 미흡
- 법적 근거 미비와 정부의 기금 미출연으로 기금 기반이 취약하여 대손보전 대상자금의 한정 등으로 실질적인 부실채권 정리기구로서의 역할 미흡
- 현행 기금에서 수산부문이 농업부문의 지급여력을 잠식한다는 인식으로 농림부의 동 기금에서 수산부문 분리 주장

※ 현행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제도 개요

- 법적근거 :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
(농림부·해양수산부 공동훈령, '95. 1. 1)
- 대상자금 : 영어자금, 일반 정책자금
- 기금조성 : 농·수협 등 출연금, 농특·농안자금 대출평잔의 0.5% 출연
- 설치 및 관리기관 : 농협중앙회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수산업종합자금제도

- 사업의 중심을 현행 '개별사업 중심'에서 수산정책자금 각 사업을 통폐합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개별경영체 중심으로 전환
- 대상자 선정 및 대출여부는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출 취급기관(수협)의 여신심사방식을 통하여 최종결정
- 기존의 1회성 신규 시설투자 위주의 대출에서 탈피하여, 시설·운전자금 등 경영단계별 소요자금을 연중 수시로 심사대출함으로써 수산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채권관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해당업체의 경영실태 파악 및 경영컨설팅 등의 사업관리까지 대출취급기관이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종합적인 자금지원제도 지향

□ 대손보전제도

- 기존 대손보전기금의 한계성 극복
 - 기금 미출연자금에 대한 대손보전을 위해 기금확대방안 강구
 - 회원대출을 포함한 수산정책자금의 자산건전성 강화 추진
 - 수산부문의 분리주장에 대한 존속논리 개발 및 설득
 - WTO-DDA 협상에 의해 보조금지원이 제한 받을 경우 대비책 강구
 - 신용력과 담보력이 미약한 어업인의 경우 보조금지원이 제한을 받을 경우 대손보전제도 강화를 통한 지원방안 강구
 - 농신보 수준의 보장기능을 확보함으로써 금리인상 요인 상쇄로 정책여신의 지속적 공급 및 부실위험 축소 도모
- ※ 정책여신의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킴으로써, 일반여신의 보증서 담보대출 수준의 금리로 수산자금의 지속적인 공급체계를 확보

다. 세부추진계획

□ 수산업종합자금제도

- 기능별, 용도별로 세분화 되어 있는 각 사업 및 자금의 통폐합
 - 통합대상 : 수산업경영체에 대한 개별 용자사업으로서 투자수요가 시장에서 결정되며 투자수익이 사업주체에게 귀속되는 사업
 - 통합제외 : 정책적 사업, 공공성 사업, High-risk의 프런티어 사업 등
- ※ 예) 수산물종합가공단지조성, 감척사업 등의 어업구조조정사업 등
- 통폐합에 따른 계정과목 등의 정비

- 소요자금의 수시신청, 수시대출 등 종합적인 대출체제 확립
 - 대출재원을 정부예산 및 수협자금(이차보전)으로 구성, 재원의 유동성 확보
 - 심사평가 기준변경에 따른 통합대상 자금의 기존대출금 대환 또는 기간연장 등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
 - 경영발전 단계별 추가 소요자금의 지속적인 대출체제 마련
 - ※ 일회성 시설자금 위주 → 시설+운전, 개보수+운전자금 병행 대출

- 대출취급기관(수협)의 사업성 위주 심사평가에 의한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체제 구축
 - 평가 등급별 Credit line 설정을 위한 대출심사 및 평가기준 개발
 - ※ 예) 적법성, 사업계획, 경영평점, 사업타당성등급, 소요자금 및 채권보전심사 등
 - 대상자에 대한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경영실태 조사방안 마련
 - ※ 예) 경영컨설팅 지원제도와 연계한 체계적 사후지원 및 관리 등

- '06년 시범사업 실시를 목표로 제도의 정착률을 위한 단계별 시행

단계별	1단계('04)	2단계('05)	3단계('06)	4단계('07~)
추진목표	연구조사	기반조성	시범사업 실시	본격 실시

□ 대손보전제도

- 단기 : 기존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강화로 현행 체제 유지
 - 출연대상자금 및 부분대손보전제도 확대를 통한 현행 대손보전기금의 기능 정상화 추진
 - ※ 기금확대방안
 - (현행) 농특·농안기금의 0.5% → (확대) 재특자금까지 0.2% 추가 출연

- 농업부문의 수산부문 분리 추진이 현실화되거나 산업적 측면에서 WTO-DDA 영향이 농업부문보다 불리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업인, 수협 및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산금융 전담 대손보전제도 도입 추진
- 수협의 대손보전 신청 추정액이 과도한 점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만의 추가출연으로는 부실채권의 완전정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수산부문 대손보전 신청 추정액

- 중앙회 515억원, 회원조합 344억원 등 859억원

○ 장기 : 수산금융 전담 대손보전제도 도입

- POST-DDA 환경하에서 안정적인 수산금융 지원체계 확보를 위해 수산금융 전담 대손보전제도 도입

※ 새로운 대손보전제도 구현을 위한 전제조건

- 현 부실채권에 대한 장기분할보전 등으로 부담 완화 등

라. 추진일정

□ 수산업종합자금제도

- 제1단계(연구조사단계) : 2004년
- 제2단계(기반조성단계) : 2005년
- 제3단계(시범사업실시단계) : 2006년
- 제4단계(본격시행단계) : 2007년 이후

□ 대손보전제도

- 단기(기존 대손보전제도 강화단계) : 2004년 ~
- 장기(수산금융 전담 대손보전제도 운영단계) : 2006 ~
 - 제1단계(기반조성) : 2006년
 - 제2단계(설립초기) : 2007 ~ 2008년
 - 제2단계(안 정 기) : 2009년 이후

마. 투융자 계획 : 없음

1-6 어업경영 안정자금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WTO체제 출범, 수입수산물 개방 및 경영비용의 증가 등에 따른 어업경영여건의 악화로 수산업이 침체되고 있어,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위하여 운영자금 지원 필요

□ 문제점

- 영어자금의 공급규모가 '02년부터 현재까지 1조 4,050억원으로 동결되어 어업인의 경영자금 조달에 애로
 - 영어자금 소요액 대비 38% 수준에 불과
(소요액 3조 6,926억원, 공급액 1조 4,050억원)
- UN해양법 발효이후 연안국의 조업규제 강화 및 어로경비 상승에 따른 원양업체 경영수지 악화
 - 입어료 : ('90) 32백만\$ → ('03) 49백만\$
 - 연안국은 입어료 외에 기자재 제공, 사회간접투자 등 요구 추세
- 원양업체 경영규모의 영세성과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경영 악화
 - 어선 1~2척 미만 업체 : 전체 129개사 중 90개사(70%)
 - 자본금 1억 미만 업체 : 129개사 중 70개사(54%)
 - 선령 21년 이상 된 노후어선 : 전체 464척중 278척(60%)
- 원양어업 쇠퇴시 세계어장에서의 조업기득권 상실과 더불어 국내 수산물자급을 급속 저하 우려
 - 국제수산기구에서 한 번 상실된 쿼터는 재확보가 사실상 곤란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영어자금의 적기 저리공급으로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어업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산물 생산증대를 통한 국민 식량산업인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
 - 어업인의 부담 경감 효과 ('04 ~ '08) : 3,025억원
- 수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어업인의 자생적 대응력 강화 지원
- 자금 수요에 대한 융자협의회를 운용하여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영어자금 운용
- 경쟁 대상국인 일본, 대만 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어자금 목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속 실시

다. 세부추진계획

- 금융기관(수협)의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 영어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에게 홍보
- 수협중앙회 및 일선조합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지도·감독
- 2005년 2,630억원, 2006년 이후 원양어업경영자금(영어자금 중 원양부문 포함) 운용규모 3,000억원 지속유지

《04년도 영어자금 금리인하 내용》

구 분	`03년도	`04년도	비 고
영어자금	4.0 ~ 4.5%	3.0%	'04. 3. 1부터 시행
원양어업경영자금	4.5%	3.0%	"

라. 추진일정

- 세부추진계획 마련 : 매년 1월
- 운용자금 어업인 지원 : 연중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이차보전	○ 영어자금	584	2,179	482	404	409	444	440
	○ 원양어업경영자금	53	173	33	18	30	42	50
	○ 수산피해복구비	93	247	96	10	44	47	50
	○ 국고사업(일반)	730	2,600	611	432	484	533	540
	- 보조	730	2,600	611	432	484	533	540

1-7 어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WTO-DDA, FTA 협상체결 대비 관련 수산물 수입 증가, 어장 오염 및 자원고갈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가 소득은 줄어든 반면, 원자재 값 인상·인건비 상승 등으로 부채는 증가
- 어가 소득증가에 비해 부채의 증가율이 높아 부채상환능력 상실
 - 어가소득 : ('99) 18,401천원→('04) 26,159천원 (42.2% 증가)
 - 어가부채 : ('99) 19,645천원→('04) 32,544천원 (65.7% 증가)

□ 문제점

- 과거의 부채대책이 일정기간 상환도래한 자금을 연장함으로써 기간 종료시 상환액이 더 커지는 문제 발생
- 상환기간이 짧고, 금리도 시중금리 인하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근본적인 부채대책 효과 적음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금번 어가부채경감대책으로 어업인 수혜액은 3,433억원으로 어업경영 회복으로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
- 어가부채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실시

다. 세부추진계획

- 금융기관(수협)의 부채관련 프로그램 및 홍보책자 마련
- 중장기정책자금 등 5개 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및 기간연장에 대해 해당 어업인들에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
- 수협중앙회 및 일선조합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지도·감독

《 '04년도 어가부채경감대책 및 단기정책자금 금리인하 내용》

구 분	현 행	'04 대책	비 고
중장기 정책자금	3% (`01~`03기간중 상환도래자금)	1.5% `03년말까지 지원된 정책자금	
	2년거치 5년 상환	5년거치 15년 상환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6.5%	3%	
	5년거치후 일시상환	현행유지	
수산업 경영개선자금	6.5%	3%	
	3년거치 7년상환	현행유지	
수산업 경영회생자금	-	<신설>3.0%	
	-	3년거치 7년 상환	
연대보증 피해자금	3.0%	현행유지	
	3년거치 7년 상환	3년거치 17년 상환	
정책자금 정상상환 인센티브	상환액에 대한 이자액의 20% 환급	상환액에 대한 이자액의 40% 환급	
조기상환 인센티브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30% 환급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 환급	

라. 추진일정

- 어업인 홍보 및 담당자 교육실시(계속)
- 어업인 부채대책 추진(계속)
- 수협중앙회 및 일선조합 지도·점검(계속)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 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어가부채 대책자금 이차보전	○ 국고사업(일반)	438	1,455	502	315	233	219	186
	- 보조	438	1,455	502	315	233	219	186

1-8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세제 지원체제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어업인의 어업생산활동 지원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어업용 면세유 공급 등 수산부문에 연간 8천억원의 세제감면혜택 부여
 - 연간 어업용 면세유 공급량 770~800만 드럼 ('04 면세혜택 6,400억원)
 - 기타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적용 등 어업인·영어조합법인·수협 등에 각종 세제 지원
- ※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 적용대상품목 : 50개('04년말 현재)

□ 문제점

-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결과 어업용 면세유 공급 등 수산 세제지원이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경우 더 이상 지원 불가
- 수산부문 세제지원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시 어업인의 비용증가로 어업생산활동의 위축 우려
 - 지원효과가 가장 큰 면세유의 공급 중단시 상당수 어선이 출어를 포기하는 등 국내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 예상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시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시한이 2005년 말에서 2007년 말까지 연장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05. 1. 1 시행)
-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및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품목 등의 확대로 수산세제지원 개선
- WTO-DDA 협상에서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부문 세제지원이 금지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

다. 세부추진계획

- 수산부문 세제지원 연장 및 확대 지속 추진
 - 양식장용 목재틀·스티로폼 어상자 등 부가가치세 사후환급품목에 추가
 -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부문 세제감면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의 개정을 통한 세제감면 방식의 개선 추진
- WTO-DDA 협상에 적극 대응 및 협상결과 대비 국내대책 마련
 - 협상을 위한 다양한 설득논리 개발
 - 협상결과 면세유 공급 등 수산세제지원이 금지보조금에 포함시 어업인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의 개정을 통한 세제 감면방식의 개선 추진('05 ~ '06)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5)	2단계 (2006년 이후)
면세유 등 수산세제지원 연장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한 연장 ◦ 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확대 ◦ DDA협상 적극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A협상결과 금지 보조금에서 제외시 수산세제지원 지속 ◦ 협상결과 금지보조금에 포함시 어업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사업 추진

1-9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발생시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률에 근거한 재해보상제도 도입
 - 선원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어선원보험을 일원화한 “어선원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정('03. 3. 19)·시행('04. 1. 1)

□ 문제점

- 어선원보험의 국고지원율은 소형어선의 경우 종전 수협공제와 변동이 없어 보험가입을 기피하며 지원을 상향 요구

<정책보험 도입 전후 국고보조율 변화>

어선의 톤급별		3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100톤 이상
어선원 보험	2003년	50%	20%	10%	-
	2004년	50%	24.5%	16%	7.5%
어선 보험	2003년	50%(20톤 미만)	-	-	-
	2004년	50%(20톤 미만)	10%(20톤 이상)	-	-

※ 2004년도 보조율은 위탁운영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율(50%)이 포함

- 유가인상에 따른 출어경비의 증가 및 어획실적 감소로 소형어선주의 보험료 납입률이 저조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은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어업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보완 및 조기정착 유도

- 어선원보험 가입률을 2009년까지 85% 수준으로 제고하여 재해보상 체계 확립

다. 세부추진계획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안정기반 구축
 -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국고보조율 확대
- 사업시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는 의견수렴후 점진적으로 보완하여 보험 가입률 제고
 - 어선원 보험 가입률 : ('03) 41% → ('09) 85% → ('11) 90%
- 연근해어선에 대한 보험사업이 정착된 이후에는 원양어선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09)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5)	2단계 (2006-2007)	3단계 (2008년 이후)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험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도입 및 홍보강화 ◦시행초기 문제점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국고보조율 확대 추진 ◦법령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제도의 안정기반 구축 ◦가입대상 확대(원양어선)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험제도	○ 국고사업(일반)	219	1,096	209	207	210	220	250
	- 보조	219	1,096	209	207	210	220	250

1-10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양식어가의 대형화, 기업화 및 양식기술의 안정화로 양식수산물의 사회적·경제적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양식수산물은 재해발생시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복구비가 종묘·치어대금과 증·양식시설 등 일부에 한정되어 실질보상 불가
- 최근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양식수산물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나 시장경제하에서는 보험도입이 곤란하여 국가가 관여하는 보험제도 도입 필요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2. 3 ~ '04. 5)
 - 연구기관 : 수협중앙회(보험개발원 협조)
 - 양식재해보험 도입시 문제점 파악을 위한 도상연습 실시('03. 7 ~ '04. 7)
 - 참가가구 : 118명(육상수조식 61명, 축제식 8명, 해상가두리 49명)

□ 문제점

- 대상어업인의 과소, 지역적 편중 및 양식업의 높은 재해율, 거대재해 발생위험 등으로 보험사업 불안정 및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과중
- 양식재해발생예측 곤란 등으로 대형 재해시 많은 국고부담 초래 및 거대 재해에 대비한 위험분산대책 마련 필요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한 사전 피해 방지
- 어업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반조건을 완비한 후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범사업으로 도입

다. 세부추진계획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 용역 및 도상연습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품종, 대상 재해, 대상 어가 및 정부의 국고지원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 도입이 가능한 품종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도입 후 점진적으로 대상 품종 및 대상 재해를 확대 추진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5)	2단계 (2006-2007)	3단계 (2008년 이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실시 ○ 공청회 및 입법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제정 계속 ○ 예산확보 ○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대상재해 및 대상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

마. 투융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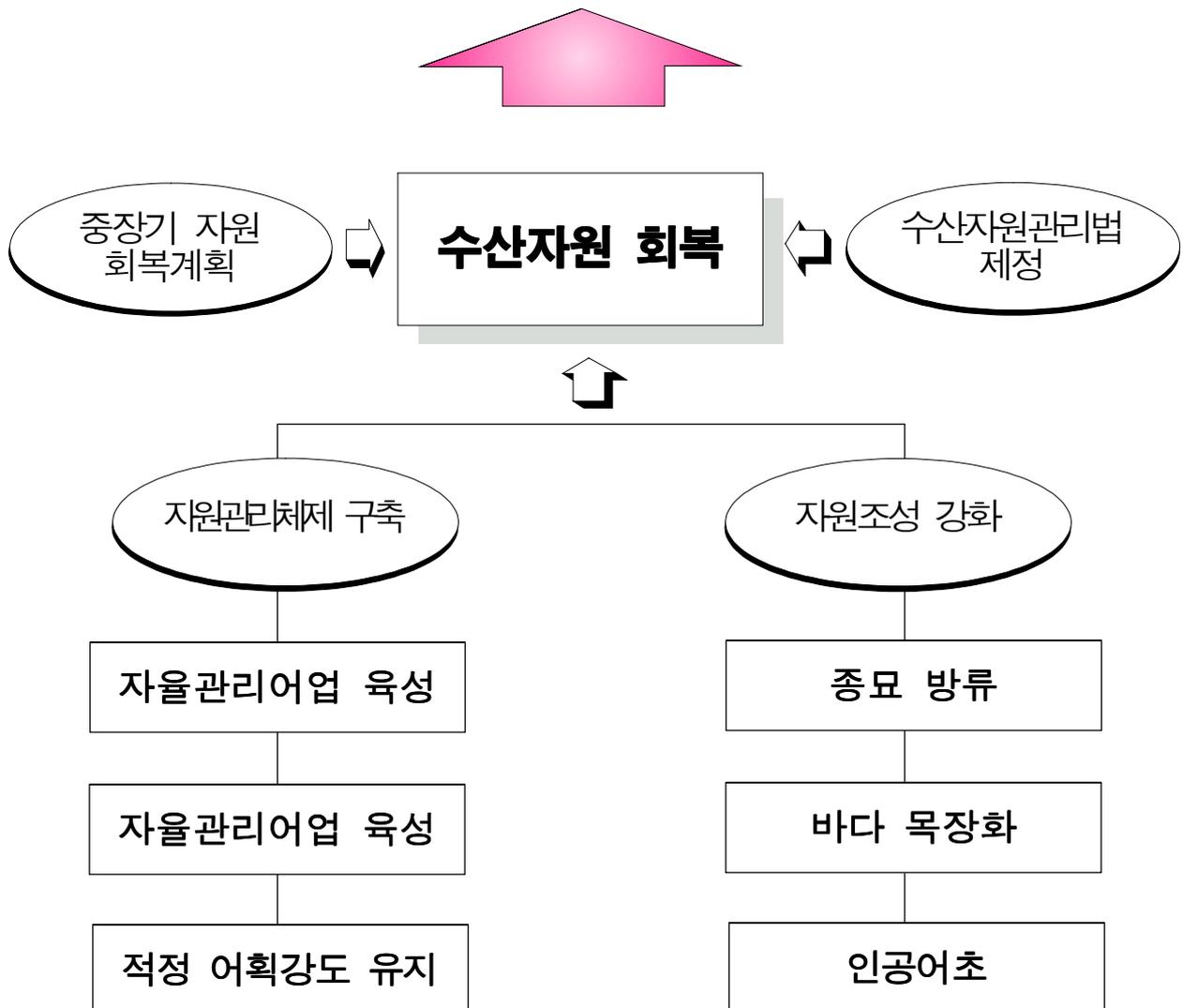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신규)	○ 국고사업	-	425	-	15	55	165	190
	- 보조	-	425	-	15	55	165	190

2.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자원과 생산이 조화되는 어업

- ◆ 연근해자원 : ('04)780만톤→('09)880만톤
-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04)174개소→('09)750개소



□ 수산자원회복계획 추진

- 어업자원의 지속적·안정적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수산자원회복 계획·수립 및 법제정 추진('05~'06)
- 어업인대표가 참여한 해역별 위원회 구성 및 수산자원회복업무 전담조직인 「수산자원회복팀」 설치·운영
 - 연근해자원량 : ('04) 780만톤→('05) 790만톤→('09) 880만톤

□ 자율관리어업의 전국확대 및 활성화

- 정부주도의 어업관리를 어업인의 자율적 자원관리로 전환
 - 마을어업 등 지역 중심에서 어종별·해역별·업종별 공동체로 확산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확대('04년 174개소→'05년 300개소→'09년 750개소)
- 자율관리어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어업인 교육·홍보강화

□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

-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종묘 방류 확대('04년 29종 → '09년 45종)
 - 방류규모를 164백만미('04)에서 189백만미('09)로 확대
- 환경친화적인 시범 바다목장 5개소 완료('98~'10년)
-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다기능성 인공어초 개발('04년 27종 → '09년 45종)

□ 총 허용어획량(TAC)제도 정착

- 대상어종을 점진적으로 확대('04년 9종→'13년 20종)
- 연근해 자원상태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을 위한 어업자원조사 전용선 및 과학장비 확충

□ 지속이용 가능한 적정 어획강도 유지

- 연안어선도 선복량제한제도를 도입('05년), 증톤 억제
- 자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업부터 어구사용량 등 제한('05)
 - 어구실명제 병행 실시

2-1 수산자원 회복계획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세계 주요 연안국들이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자원자국화 정책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 돌입
- 한·중, 한·일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전통적 조업어장의 축소, 과도한 어획과 불법어업에 의한 무분별한 남획 등 어업자원의 급감으로 어업여건 악화
 - 연근해 어업생산량의 지속적 감소 : 150만톤('80) → 110만톤('03)

□ 문제점

- 어업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공어초 투입, 종묘방류, 바다목장 조성 등 단기성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 곤란
- 수산자원의 보호 및 회복에 관한 사항이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고 현행의 '수산자원보호령'만으로는 정책 실효성 확보에 한계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한반도 주변어장은 세계적으로 자원이 급감하는 수역이므로 무엇보다 연근해 수산자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회복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임
- 어업정책을 선진국형의 자원 관리 중심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

다. 세부추진계획

- 중장기 수산자원관리 회복계획추진(안) 연구용역 추진 및 최종안 확정('05년)
 - 어종별 자원평가·분석, 자원회복대상어종(업종) 선정
 - 목표자원량 설정 및 회복기간 산정
 - 시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 단계별 자원회복을 위한 Action plan 수립 및 Road map 작성
- (가칭)수산자원관리법 정부안 확정 추진 및 전담조직 설치('05년)
 -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수산자원보호규정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일원화
 - 수산자원 회복 관련 업무를 위해 「수산자원회복법」 설치
 - 어업인대표가 참여한 해역별 위원회(3개소)를 구성, 자원회복 계획 시행
- 기반조성 및 자원회복체제 구축('05 ~ '10)
- 자원회복 확대·정착('11 ~ '15)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2005)	2단계(2006 이후)
수 산 자 원 회 복 계 획 수립·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수산자원회복 계획 추진(안) 수립 - 어종별자원평가·분석, 자원회복대상어종(업종) 선정 - 자원회복을 위한 목표설정 및 이행을 위한 Action plan 수립 ○ 수산자원관리법 입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조성 및 자원회복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회복 대상 40% 실시 - 국가주도 자원회복계획 실시 - 어업인 참여유도 및 소득보전대책 마련 ○ 자원회복 확대·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회복대상 전 어종으로 확대

마. 투융자 계획

- 중장기 수산자원회복계획추진(안) 수립을 위한 세부용역 추진('05년)
 - 연구개발비 2억원
- 연차별 예상투자액 산출 및 관련법 제정 추진('06년 이후)
 - '05년도 연구용역 추진결과 예산검토 및 반영

(단위 : 억원)

사업명	구 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자원회복계획 지원사업	○ 국고사업(일반)	-	47	-	9	10	18	10

2-2 자율관리어업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자원 조성·관리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참여공동체수 : ('01) 63개소 → ('04) 174개소(15,269명)로 확대
 - ※ 어선어업(54개소), 마을어업(92개소), 양식어업(28개소)
- 공동체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도에 어업인, 수협,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해양수산부에 민간전문가, 과학원, 학계로 구성된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술·행정적 지원 체계 구축
 - ※ 지역협의회 11개소 119명, 추진지원단(자문위원회, 지원팀) 15명으로 구성
- 공동체 운영 및 애로사항 논의를 위한 “자율관리공동체 지도자 협의회”와 공동체간 분쟁을 해소할 “자율조정 협의회” 설치
- 적극적인 자율관리어업 참여를 유도하고 이행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평가·선발하여 육성사업 차등 지원
 - ※ 3년간('02~'04년) 178개소/308억원 지원(최우수 10억원, 우수 5억원, 장려 1-2억원)
- 자율관리어업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지속 추진
 - 2차에 거쳐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참여어업인의 관심 유도
 - 어업인 및 공무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광역지역별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자율관리어업 홍보를 위한 워크숍 개최, 홈페이지 및 비디오, 팸플릿 등 제작

□ 문제점

- 마을을 중심으로 자율관리어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어선어업은 어종에 따라 시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전체 어업인이 아니라 몇몇 공동체 임원 중심으로 운영
 - 마을어업은 어장청소, 종묘살포, 불법어업 자체단속 등 어장관리를 통해 어장 생산성 제고
 - 어장에 적절한 시설, 어장 휴식년제 도입, 생산량 조절 등 어가 유지를 통한 소득 안정
 - 어선어업은 정착성 또는 이동성이 약한 어종의 경우는 자율관리가 확산되고 있으나, 조업구역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성이 큰 어종의 경우에는 실시에 한계
- 일부 공동체에서는 정부지원만 기대하는 등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실천의지가 미흡하고 미참여 어업인과 마찰 발생, 지도자 부재와 노령화 등 애로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자율관리어업을 어업인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와 『새 어촌운동』으로 발전
- 실천이 용이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마을어업에서 어선어업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체어업으로 확산 추진
- 자율관리어업 확산을 통한 불법어업 근절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어업인 의식개혁, 우수사례 발굴, 상호정보교환을 위하여 자율관리지도자협의회 운영 활성화
 - 자율관리 공동체 분쟁조정을 위한 자율조정협의회 및 추진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추진지원단 지속운영
 - 민간주도로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협과 수산회 지원 활성화로 민간단체 역할 확대
-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어업인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광역 및 지역 단위 교육을 구분 시행하고 우수공동체 현장 견학 및 우수공동체 지도자 순회 교육 실시
 - 공동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교육을 추진하여 자율관리어업 핵심주도 세력으로 양성
 -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율관리 어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도록 육성
 - 자율관리어업 유형별 인터넷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상시 온라인 교육 및 토론 문화 정착
- 자율관리 공동체 참여 독려를 위한 우수공동체 선발 및 지원
 - 공정·투명한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민간단체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운영
 - 우수공동체를 선발, 차등 지원하여 경쟁체제 확립('05년 57개소, 94억원)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우수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어촌으로 확산시키고 참여 의지가 높은 신규 공동체에 적극 지원
 - 참여공동체 : ('04년) 174개소(15,269명)→('05년) 300개소→('09) 750개소

- 마을어업 등 지역중심에서 어종별·해역별·업종별 공동체로 확산
-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전국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 자율관리의식 확산으로 참여 동기 부여 및 우수공동체 지도자의 정부 포상으로 자긍심 고취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기반조성단계 (2001-2003)	확산단계 (2004-2006)	정착단계 (2007년 이후)
자율관리 어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 실시로 문제점 도출 및 보완 (122개 공동체 참여, 58개소 지원) ◦어촌계 중심으로 시작 ◦의식확산으로 활성화 ◦우수공동체 자원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어촌운동으로 어업인 자율적 의식 전환 (200~500개 공동체 참여, 60~80개소 지원) ◦어선어업 공동체 확산 ◦지도자협의회 핵심세력 육성 ◦우수공동체 발굴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관리어업 성공적 정착 (모든 어촌계로 확대, 90개소 이상 지원) ◦광역 공동체로 정착 ◦공동체간 협력체제 확립 ◦민간단체 체제로 전환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자율관리 어업육성	○ 국고사업(농특)	56	275	51	56	56	56	56
	- 보조	56	275	51	56	56	56	56

2-3 종묘 매입·방류사업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지역별,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연안정착성 고부가가치 품종 방류
 - 대상지역 : 12개 시·도
 - '86 ~ '04년까지 실적
 - 사업량 : 714백만미
 - 사업비 : 215억원
 - 방류품종 : 29종(해면 19종, 내수면 10종)

□ 문제점

- 열성어 및 근친교배 어종 방류로 종묘방류사업이 생태계 교란 우려
 - 근친교배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 미흡
- 어린 치어 방류 및 자연순치(야성화 훈련)가 되지 않은 치어 방류로 생존율이 저하되어 방류효과 감소
- 방류 후 해역별, 어종별 체계적인 효과조사 미흡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환경친화적이고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건강종묘의 방류사업 확대
- 방류사업체계(역할) 정비

-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한 방류 종묘 생산시스템 마련
 - 방류종묘 사전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실시
- 방류사업의 효과검증시스템 구축
 - 방류종묘에 대한 효과조사 및 경제성 분석 실시(6개 해역/13종)
 - 품종별 방류기준의 표준화 마련·보급

다. 세부추진계획

- 방류사업 체계(역할) 정비
 - 중앙정부(해양수산부 및 수산자원관리조정센터)
 - 수산종묘 방류의 전반적인 계획수립 및 방류관련 제도 마련
 - 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주체)
 - 방류후 일정해역에 머무는 정착성 품종에 대한 방류 실시
- 품종확대 및 방류표준화 마련·보급
 - 해역별 환경 및 어장특성에 적합한 방류품종 지정·방류
 - 동해안 : 넙치, 전복, 참가리비, 가자미, 해삼 등
 - 서해안 : 황복, 대하, 보리새우, 송어, 조피볼락, 꽃게 등
 - 남해안 : 돌돔, 참돔, 넙치, 능성어, 조피볼락, 전복 등
 - 방류해역별 자연집단의 다양성 유지를 고려한 품종 다양화
 - ('04까지) 29종 → ('05년) 30종 → ('10년) 50종으로 확대
 - 품종별 방류기준의 표준화 마련·보급
 - ('05년) 5종(전복, 넙치, 대하, 꽃게, 조피볼락) → ('10년) 50종
-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한 방류종묘 생산 시스템 마련

- 방류전 질병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방류종묘 사전인증제 도입
 - 방류용 종묘생산업체에 대한 등록제 실시
 - 생태계 교란방지 및 방류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피볼락, 황점볼락, 전복, 해삼 등 정착성 품종은 지자체에서, 기타 회유성 품종은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에 위탁·방류하는 방안 검토
- 방류사업의 효과검증 시스템 구축
- 방류품종별 자원증가 효과에 대한 정기적 조사 실시
 - 방류종묘에 대한 효과조사 및 경제성 분석 실시
 - 해역별 주요 대상품종에 대한 경제성 조사(6개 해역, 13종)
 - 어 류 : 넙치, 볼락, 자주복, 감성돔, 참돔, 돌돔, 조피볼락(7종)
 - 패 류 : 왕우럭, 큰가리비, 전복(3종)
 - 갑각류 : 대하, 꽃게, 보리새우(3종)
- 종묘방류후 사후관리 강화
- 시·도지사는 종묘방류 6개월 경과 후 반드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장은 방류품종중 주요 품종을 선정하여 효과조사를 실시, 해양수산부에 보고
 - 방류수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 강구
 - 불교 등 종교단체에서 행하는 방생행사시 생태계 교란 등 악영향이 우려되는 어종은 방생을 지양하도록 적극 홍보
 - 방생품종 및 방생장소 지정 등 제도화 검토
 - 방생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홍보 강화
 - 시·도 등 지방자체단체가 대형방류행사 입회 등 지도 실시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2단계(2005-2008)	3단계(2008년 이후)
종묘 매입·방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해역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 수산종묘 방류 40종으로 확대 ◦자연산 친어 종묘 매입·방류 ◦야성화 훈련이 실시된 종묘매입·방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해역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 수산종묘 방류 50종으로 확대 ◦자연산 친어 종묘 매입·방류 ◦야성화 훈련이 실시된 종묘매입·방류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종묘 매입·방류	○ 국고사업(균특) - 보조	57	376	63	63	66	70	114
		57	376	63	63	66	70	114

2-4 바다목장화 사업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바다목장화 사업은 '98 ~ 2010년까지 해역별 시범 바다목장 모델 5개소 개발
 - 통영바다목장은 기 개발된 연구 결과를 실 해역 적용 등 기반 조성사업 진행
 - 전남 다도해형 바다목장은 종묘방류 등 기반조성사업 진행
 - 동서제주형 바다목장은 최종후보지 선정('03. 12) 및 사업 추진('04. 8)
- 동해 : 울진, 서해 : 태안, 제주 : 북제주
- ※ 2004년까지 258억원 투입(통영 156, 전남 69, 동·서·제주 33)

□ 문제점

- '98 ~ 2010년까지 시범 바다목장 5개소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나 예산 반영 미흡으로 계획 기간내 사업완료에 차질 우려
- 시·도의 수요가 많으나 예산지원 한계로 지원 애로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2010년까지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시범 바다목장 5개소를 개발하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후 전국 연안으로 확대
 - 해역별로 개발된 모델을 기초하여 지자체 주관으로 확대 개발하되, 재원은 지방비 및 국비, 바다목장 이용자도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달

- 순수 지자체 사업으로 바다목장 개발시 개발된 요소 기술 지원
- 바다목장 관리 및 이용의 주체, 관리·이용권의 이양, 각 주체별 책임과 권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

다. 세부추진계획

- 2010년까지 5개 바다목장 조성 완료
 - '06년 1개소, '08년 1개소, '10년 3개소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2단계(2005-2007)	3단계(2008년 이후)
바다목장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영바다목장 개발 및 이용관리 연구 ○ 전남 다도해형 바다목장 개발 및 이용·관리 연구용역 ○ 동해 관광형, 서해갯벌형, 제주 체험·관광형 바다목장 개발 연구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 관광형 바다목장 개발 연구용역 ○ 서해 갯벌형 바다목장 개발 연구용역 ○ 제주 체험·관광형 바다목장 개발 연구용역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바다목장화사업	○ 국고사업(일반)	80	767	100	138	151	178	200
	- 보조	80	767	100	138	151	178	200

2-5 인공어초 사업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인공어초시설
 - '04년 까지 대상적지 307천ha의 59%인 182천ha 시설
 - 해역별, 기능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어초개발 추진
 - ('01) 16종 → ('02) 21종 → ('03) 24종 → ('04) 27종
 - 어초 시설해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갯녹음 발생어장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해중립 조성
 - '04년까지 대상면적 5,501ha의 6.8%인 375ha 조성

□ 문제점

- 해역별, 목적별, 기능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어초시설 및 개발 미흡
 - 콘크리트 재질 어초가 전체시설량의 98% 점유
- 기 시설된 인공어초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장비의 미비 및 전문업체 부재로 사업효과 제고에 애로
- 어초어장 관리인력 전문성 부족
 - 제한된 소수 인력으로 적지조사, 효과분석 등의 업무수행 곤란
- 인공어초 어장의 이용기술개발 미흡
 - 업종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적정 관리기법이 없는 실정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총 적지대상 면적(307천ha)을 대상으로 지속적 시설 및 신규어초 개발
- 어초어장 사후관리 강화로 인공어초사업의 효과 제고
 - 효율적 사후관리 수행을 위한 단지 규모화 및 첨단장비 확보
 - 어초단지 규모화 및 첨단 과학장비 확보, 폐어망 제거 등 사후관리시스템 강화
 - 해중림 조성사업, 해양환경 정화사업 등과 연계,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 어초 어장도 제작 및 어초실태조사 실시 등으로 어초어장의 효율적 이용 및 사후관리 체제 구축
 - 수산자원관리 정보화시스템과 연계하여 어업인에게 정보 제공
-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로 하여금 사후관리사업 체계적·효율적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 인공어초시설 잔여면적(125천ha) 조기완료 및 어초어장 사후관리 강화
-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기 위해 사업시행을 지자체에서 전담부서인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에 위탁·수행
-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다양한 어초를 '09년까지 45종으로 확대 개발하고 인공어초사업의 종합적인 경제분석 실시를 위해 연구용역 추진('05년 3억원 반영)
- 어초시설 수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추진으로 일정기간 조업제한으로 어초효과 극대화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2단계(2005-2008)	3단계(2008년 이후)
인공어초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어초 지속적 시설 ◦어초어장 실태조사 및 폐기물 수거 ◦해중립 조성사업 추진으로 해양 생태계 복원 ◦어초시설 적지, 효과조사 강화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어초 적지 대상면적 시설 완료(307천ha) ◦어초어장사후관리 강화 ◦해중립 조성사업 추진으로 해양 생태계 복원 ◦어초시설 적지, 효과조사 강화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인공어초 사업	○ 어초어장관리	39	256	36	47	51	56	66
	○ 해중립조성	10	66	16	10	10	10	20
	○ 인공어초시설	353	1,444	356	285	257	232	314
	○ 국고사업(균특) - 보조	402 402	1,766 1,766	408 408	342 342	318 318	298 298	400 400

2-6 총 허용어획량(TAC) 제도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높은 혼획률 등으로 현재 9개 어종에 국한하여 실시
 - 4개 어종('99 ~ '00)→7개 어종('01)→8개 어종('02)→9개 어종('03)
 - TAC 설정량('04) : 21만톤(7개 업종 9개 어종)
- 총 허용어획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적 자료 수집
 - 동·서·남해 연구소 등 7개 지역에 읍서버(12명) 운영
 - 지정위판장제도 시행('04) : 93개소

□ 문제점

- 어업자원량 평가가 전문인력, 장비부족 등으로 정확한 어종별 TAC 산정 곤란
- 업종별 어종별 혼획률이 높아 단일어종을 TAC어종으로 선택하기 곤란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읍서버는 12명으로서 이들만으로는 정확한 어획량 파악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적정 어선세력 유지 및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방지로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확대·재생산기반 구축
- 어업인 소득활동 안정화 도모
- UN해양법 협약 준수로 국제사회 참여 강화 및 향후 세계 수산질서 결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 TAC 업종 및 어종선정방법 개선
 - 지역별, 업종별 어종을 전국적,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
 - ※ 대상어종 : ('04년) 9종 → ('13년 까지) 20종
 - 혼획률이 높은 어종은 2~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
- TAC 결정에 따른 실시어종의 자원평가 신뢰성 확보 강구('10년)
 - 어업자원의 과학적인 평가를 위한 시험조사선 건조('07년 1척, '10년 1척) 및 과학장비 구입
- TAC 실시 어종에 대한 위판장 지정제도 운영 및 읍서버 증원 운영(2010년까지 38명)
- TAC제도 확대실시를 위한 기반조성
 - 어업인 참여의식고취를 위한 인센티브제공을 위한 수산발전기금 지원
 - 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강화를 위한 어업인 간담회 개최
- 인접국과 공동이용어종 및 우리연안어종을 구분자원관리 방안 차별화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5)	2단계 (2006-2007)	3단계 (2008년 이후)
총 허용 어획량 (TAC)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TAC추가어종 조사 및 확대 ◦판매장소 지정제 운영 ◦읍서버 증원(1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TAC추가어종 조사 및 확대 ◦시험조사선, 과학장비 및 연구인력 확보 ◦읍서버 증원(23명) ◦처벌규정 등 관련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TAC추가어종 조사 및 확대 ◦시험조사선, 과학장비 및 연구인력 확보 ◦읍서버 증원(38명)

마. 투융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 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 (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총 허용어획량 (TAC) 제도	○ 국고사업(일반) - 보조	2	10	2	2	2	2	2
자원관리형 어업육성	○ 국고사업(기금일반) - 용자	150	1,070	180	190	220	240	240
		150	1,070	180	190	220	240	240

2-7 지속 이용 가능한 적정어획강도 유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근해어선은 '86년부터 선복량을 제한하여 증톤을 억제하고 있으나, 연안어선은 선복량이 제한되지 않아 계속 증톤되어 연안자원의 과도한 어획 및 어업비용 증가 초래
- 중형기선저인망 및 기선권현망 어업을 제외하고는 기관마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경쟁적으로 기관마력을 높임으로써 자원남획, 어업경비 과다 지출 초래
- 근해안강망, 근해형망 등의 일부 어업을 제외하고는 어구사용 규모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어구를 많이 사용하여 자원남획, 어업경비 과다지출, 어장오염 등 초래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연안어선도 선복량 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증톤을 억제
- 어업별 기관마력의 상한선을 설정
-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업부터 어구사용량을 제한

다. 세부추진계획

- 연안어선의 선복량 제한
 - 3톤 이상의 연안어선은 근해어선과 같이 현재의 톤수를 선복량으로 제한
 - 3톤 미만의 어선은 안전조업을 위해 3톤까지 증톤을 허용

- 어업별 기관마력의 상한선 설정
 -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인망류 어업부터 기관마력을 우선 제한
 - 다른 어업에 대해서는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제한 확대
- 어구사용량 제한 및 실명제 도입
 -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업부터 어구사용량을 제한(자망·통발)
 - 어구사용량 제한의 효과 제고를 위해 어구실명제 병행

라. 추진일정

- 연안어선의 선복량 제한(2004 ~ 2005년)
- 어업별 기관마력의 상한선 설정(2005 ~ 2006년)
- 어구사용량 제한 및 실명제 도입(2005 ~ 2006년)

2-8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현행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체계의 분산, 비효율성, 비전문성으로 투입예산에 비해 자원조성 효과 미흡 → 사업추진체계 일원화 및 전문화로 수산자원의 회복 및 증강 시급
- 어장축소 등으로 적극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요구하는 새로운 행정수요 급증 및 어업인들의 요구 강화
- WTO-DDA 수산분야 협상 타결(관세장벽 및 보조금 철폐)에 대비한 수산정책의 변화 및 대응 필요 →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사업만이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유일한 대책

□ 문제점

- 과학적·효율적 TAC제도 운영 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우리나라 EEZ의 수산자원관리체계 미흡
- 자원조성사업의 수행기관이 분산된 결과 기관간 연계성·체계성이 부족하여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사업추진 곤란하고, 사업의 효율성보다는 지자체별 물량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질적 관리 소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야기함
- 전문인력 및 기술 부족으로 자원조성 해역의 적지선정, 효과조사 등 과학적·기술적 관리 미흡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및 활성화 추진
 - 1단계 : 해역별 센터 설치 및 인원 보강 ('05 ~)
 - 2단계 :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후 센터의 방향 설정('06 ~)

다. 세부추진계획

- 수산과학원 내에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 활성화 : '05 ~
 -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조사 및 사후관리 등
-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 기구 안정화 추진 : '05 ~
 - 조직/인원 : 본부 및 동·서·남해 5개 지역센터/ 100명
 - 업무 : TAC옵서버·정보화 시스템 운영, 수산자원조성사업 집행 및 사전조사·사후관리 등 정부위탁업무 수행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5)	2단계 (2006 ~)
센터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어초 사후관리 ○인공어초 적지조사 ○인공어초 기술개발·방류효과 조사 ○자원조성사업 기술공정 표준화체계 개발 ○정책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TAC 옵서버 운영 ○수산자원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 종묘방류, 해중립, 바다목장) 수행 ○수산자원조성사업 경제성 분석 ○기타 수산자원관리 관련 위탁사업 수행

2-9 해외어장개발 자원조사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원양어업은 연근해어장의 축소에 따른 해외 대체어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 31개 연안국에 433척이 출어하여 전체 수산물생산량 252만 톤의 22%인 55만 톤을 원양에서 생산
 - 수산물 총 수출액 1,279백만\$의 31%인 395백만\$ 수출
-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선포 확대와 공해조업규제 강화에 따라 해외어장 마저도 축소되고 있어 '01부터 정부시험조사선 등을 통한 해외 신어장(신규·틈새·재개발)개발사업 추진
 - 인도양 심해어장, 북태평양 쏜치어장, 남태평양동부 전갱이어장 등 6개 어장 자원조사('01 ~ '04, 83억원 투입)

□ 문제점

- 해외어장개발사업은 어장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인 성공효과를 기대하기 곤란
 - 특수어종 개발시 경제성 확보를 위한 시장확보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
- 21세기 공해수산자원의 관리는 지역수산기구를 통한 분할 관리 시대로 정착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공해어장 확보를 위하여 과학적 자원조사 자료 확보 필요

- 해외어장의 체계적인 조사와 신속한 어장정보 수집·관리·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 일본의 경우 독립행정법인 “수산종합연구센터” 및 해외어업협력재단에서 새로운 해양자원·어장개발 등 원양어업 지원사업 추진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체계적인 해외어장 조사 및 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자원조사 대상어장에 대한 어장정보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성공적인 어장개발 추진
-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에 부응한 해외자원의 합리적 보존,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어업자원조사 지속 실시

다. 세부추진계획

- 해외 신어장(신규틈새·재개발)개발을 위한 자원조사 사업 지속실시
- 해외어장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단기적으로는 국립수산과학원내에 “해외어장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원양어업협회 등을 “해외어장개발전담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별도의 기구를 설치
- 해외어장 개발을 위한 민간업체의 참여 유도(인센티브 부여 등)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2005)	2단계(2006-2007)	3단계(2008년 이후)
해외어장 개발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어장 정보시스템 구축 ◦해외어장 자원조사 실시(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어장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해외어장자원조사(매년 2개소) ◦해외어장개발 참여업체 인센티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어장자원조사 (매년 2개소) ◦해외어장개발전담기관지정 (또는 별도기구 설치) ◦해외어장개발 참여업체 인센티브 부여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 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 (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해외어장개발 지원 및 자원조사	○ 국고사업(농특)	29	151	29	30	30	31	31
	- 국고	29	151	29	30	30	31	31
원양어업 옵서버 양성	○ 국고사업(일반)	1	5	1	1	1	1	1

2-10 연안국과의 협력 및 국제수산기구 활동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국제수산기구·협약 등 원양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조치 강화
 - 공해상 참치어업에 대하여 어획능력 제한 등 각종 규제조치 도입이 본격화되고 후발 조업국들의 무분별한 참치 어선세력 확대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협약 발효('04. 6월)
- UN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신국제어업질서를 규율할 각종 국제협정·규범 실행을 위한 논의 본격화
 - UN공해어족보존협정('95), 책임있는수산업규범('95),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01) 등
- 연안국의 어업규제 강화 및 조업경쟁 격화에 따른 여건 악화
 - 연안국의 자원관리 정책 강화 및 자국어선에 대한 조업 우선권 부여 등으로 우리어선의 어획쿼터 감축 및 입어조건 악화

□ 문제점

- 원양어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주요 연안국과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거나 실효적 협력수단이 경쟁국에 비해 미약
 - ※ 일본, 중국, 대만 등은 무상 경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 원양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점증하는 연안국의 협력 요구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 포괄적 협력사업의 수행이 필요
 - 정부 차원에서 고위인사 초청 및 전문가 파견 등의 협력사업을 확대 수행 등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전 망

-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들의 조업규제 조치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양어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추진방향

- 주요 연안국과 어업협정 및 수산협력 약정 체결 확대를 통한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어선 입어국 확대 및 생산량 증대 도모
- 수산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수산개발 조사 지원 등 협력 기대 수요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연안국의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관련업체 진출 기반 확보 및 국가 위상 제고
- 지역수산기구의 신규설립 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수산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입장 반영 및 우리업계 이익보호 추진
- 국제적인 수산규범 논의에 적극 대처하여 책임 있는 수산업 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
- 국제수산기구 및 연례회의를 우리나라에 유치 및 개최함으로써 주요 조업국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향후 영향력 확대 및 우리 어선의 안정적 조업활동 기여

다. 세부 추진계획

- 주요 연안국과의 어업협정 및 수산협력약정 체결 확대
 - 중남미 및 아프리카 수역
 -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나미비아, 터키 등
- 주요 연안국과 정기적 교류를 통한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
 -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과 매년 수산협력회의 개최
- 주요 연안국에 대한 고위인사 초청 및 교섭단·전문가 파견
 -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의 수산 고위급 인사 초청 및 교류 강화
 - 노르웨이, 나미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교섭단·전문가 파견
- 수산개도국에 대한 협력사업 확대
 -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사업을 확대하고, 수산관련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 등 개발(KOICA와 협조)
- 신설 및 미가입 국제수산기구에 대한 가입 적극 추진
 -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가입 추진
 -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등 신설 또는 설립 추진중인 국제수산기구 설립동향 관찰 및 가입 검토
- 지역수산기구 논의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업계 이익 보호
 - 어업활동의 감시·감독·통제(MCS)를 위한 옵서버 승선, 선박감시체제(VMS) 구축 및 타국선박에 의한 승선검색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비태세 확립
 - 자원보존을 위한 어획능력 관리 및 IUU 어업방지노력에 능동적 대처
- FAO 및 OECD의 불법어업방지 노력에 적극 협력
 - FAO의 불법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IPOA-IUU)에 대한 국내 이행계획 수립 및 홍보

- UN공해어류보존협정(UNFSA)에 대한 입장 재정립
 - 동 협정의 조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가입여부 검토
- 국제수산기구회의의 국내 개최로 우리나라 입지 강화
 - 제57차 국제포경위원회, 제10차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존관리위원회, 제13차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05)
 - 전미열대참치위원회 등 적극 개최 추진('06년 이후)

라. 추진 일정

- 주요 연안국과의 어업협정 및 수산협력약정 체결 필요성 검토 및 추진 : 계속
- 국제수산기구 가입 및 연례회의 참석, 개최 추진 : 계속
- 주요 연안국과의 교류강화 및 수산개도국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 계속
- 국제 수산규범 논의 등에 적극 대처 및 대응방안 모색 : 계속

마. 투융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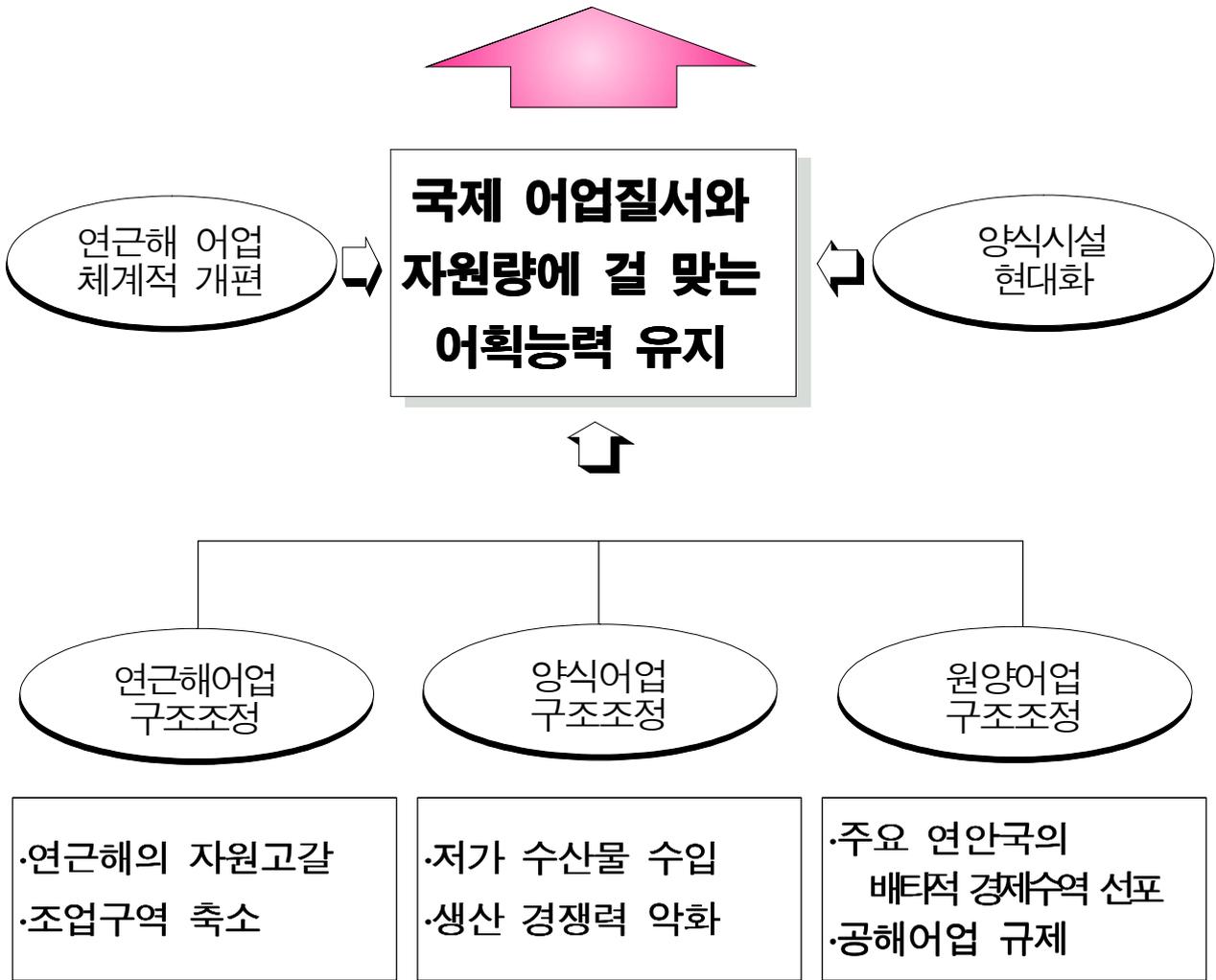
(단위 : 억원)

사업명	재원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연안국과의 협력 및 국제수산기구 활동 강화	○ 국고사업(일반) - 보조	1	5 5	1	1	1	1	1
		1		1	1	1	1	1
NOWPAP 사무국 운영	○ 국고사업(일반)	2	10	2	2	2	2	2

3.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WTO/FTA에 대응한 수산업의 체질개선

- ◆ 연안어선 10%수준 감척(6,300척, '08년)
- ◆ 양식시설 10%수준 감축 : ('04)129천ha→('10)117천ha



□ 자원회복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 연근해 어업의 체계적 개편
 - 유사업종 통합과 불필요 업종 폐지('04년 71개→'07년 53개 업종)
 - 근해와 연안어선의 분류기준을 10톤으로 일괄 조정
- 1단계 근해어선 감척(2004년까지 2,052척)에 이어, 2단계로 연안어선을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연안어선의 10% 수준(6,300척) 감척
 - 입찰제를 도입하여 감척사업의 신속성 확보
 - WTO-DDA 협상결과에 따라 연근해어선 추가 감척계획 검토

□ 양식어업 구조조정 및 시설 현대화

- 안정생산 필요 품종 및 재해 빈발해역 어장에 대한 개발 억제
 - 양식면허 갱신시 최대 20%까지 축소하여 재면허
 - 2010년까지 양식어장시설 정비 : ('04)123천ha→('10)117천ha
- 육상 양식(종묘생산)어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05년)
- 내파성 가두리시설을 태풍에 강한 PE재로 교체 지원
- 외해 가두리(내파성, 수중)양식 개발
 - 참치 등 새로운 고소득 품종 양식

□ 원양어업 구조 조정

- 노후어선에 대한 신조대체지원을 통해 원양어업의 경쟁력 제고
- 경쟁력이 약한 업종 및 노후 원양어선에 대한 감척사업 추진

3-1 연근해어업 체계적 재편

가. 현황 및 문제점

- 어업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및 현실 미반영
 -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구·어법이 각각의 업종으로 구분되거나, 어선 규모 및 조업구역으로 보아 연안어업이 근해어업으로 분류
 - 어업허가건수 및 어업실태로 보아 준치가 무의미한 업종 존재
- 어업별 종류 및 명칭의 분류체계 이원화
 - 어업의 종류와 명칭이 이원화되고, 어구·어법 및 어종 또는 수역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분류체계가 명확치 않아 어업인 혼란 초래
- 연안 및 근해어선의 분류기준 불일치
 - 연안 및 근해어업에 어선톤수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혼란
- 어구·어법의 명확한 기준 설정 미비
 - 어구·어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도·단속 애로 및 어구형태, 조업방법 등을 변형 사용하여 다른 업종간 갈등 야기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어업인의 편의 도모, 소득향상 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편

- 유사한 어구·어법 및 조업형태 등의 업종은 통폐합
 - 남획의 우려가 높은 특정 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은 특별관리어업으로 신설

- 정치성구획어업은 어구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사 업종별로 통합하고, 이동성구획어업의 일부 업종은 연안어업으로 전환
- 현 허가건수로 보아 업종의 유지가 불필요한 업종은 폐지하고, 유어제도 등으로 흡수
- 연안과 근해 어업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구분
 - 연안과 근해어업을 구분하는 어선의 규모를 상호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
- 어구·어법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종간 갈등 해소 등

다. 세부추진계획

- 연근해 어업 등 71개 업종('04년)을 53개 업종('07년)으로 재편하고, 근해와 연안 어선의 분류기준을 10톤으로 조정

◇혼합 사용하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을 어업의 종류로 일원화
 ◇연안어업(8개→8개), 근해어업(21개→18개), 특별관리어업(2개 신설), 원양어업(16개→12개), 구획어업(17개→8개), 신고어업(5개→3개), 종묘 생산어업(4개→2개)
 ◇연안 및 근해어업의 어선규모 분류기준을 8~10톤에서 10톤으로 일괄 조정

- 일부 근해어업은 조업구역, 자원관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관리어업으로, 육상양식어업은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잠수기어업과 근해형망어업은 특별관리어업으로 신설
 ◇육상양식 및 육상종묘생산 어업을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

- 어구명만으로만 단순 정의된 어구·어법을 어구형태, 조업방식, 어업실태 등을 반영하여 명확한 기준 정립

◇어업의 종류에 대한 정의를 비롯, 어구 겨냥도, 조업 모식도 및 조업 방법 등을 알기 쉽게 기술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2단계(2005-2006)	3단계(2007년 이후)
연근해어업 체계적 재편	○재편방안에 대한 법제화 추진 -수산업법시행령 및 어업허가및 신고등에관한규칙 등 개정	○재편방안 시행 -수산업법시행령 및 어업허가및 신고등에관한규칙 등 개정령 시행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 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연안어업 기본조사	○ 국고사업(일반)	-	-	-	-	-	-	-
	- 보조	-	-	-	-	-	-	-
어업자원관리 및 구조개편 연구	○ 국고사업(일반)	7	11	9	2	-	-	-
	- 보조	7	11	9	2	-	-	-

3-2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국내외적인 수산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악화된 연근해어업 경영개선 및 연근해어업자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94부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
- 1단계 근해어선 감척(2004년까지 2,052척)에 이어, 2단계로 연안어선을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연안어선의 10% 수준(6,300척)을 감척

□ 문제점

- 어획강도가 크고 일본·중국수역에서 조업한 근해어선위주로 감척을 시행한 반면, 연안어선은 수산업법령상 폐지된 3개 업종으로 제한하여 연안어선의 감척 미흡
 - 잔존어선 대비 1%에 불과하여 향후 연안어선 감척 필요성 대두
- 사업특성상 사업기간의 장기화, 민원발생 및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으로 사업추진 체계의 비효율성 내재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보조금 철폐, 수산시장 개방 등 WTO-DDA/FTA 체제에 대응하여 감척수요 증가 예상
- 연안어선 총 허가척수 10% 수준인 6,300척에 대한 본격적인 감척 추진
- 근해어선은WTO-DDA협상에서 면세유 중단 또는 고유가 지속 등 어업여건의 근본적 변화와 자원회복계획에 따라 추가감척 검토

다. 세부추진계획

- 감척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입찰제) 추진('05년)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제도개선 용역('04)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근해어선 감척업종 우선순위 및 업종별 예가 등 결정
- 연안어선 감척(6,300척) 지속추진 및 WTO-DDA/FTA 등 어업환경변화와 자원회복계획에 따라 탄력적인 근해어선 감척 실시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1994-2003)	2단계 (2004 - 2008)	3단계 (08년 이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해어선위주의 감척 ○국제협정체결로 인한 영향을 받은 어선 우선 감척 ○투자효과 분석(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어선 위주의 감척 실시 ○어선감척사업에 입찰제 도입 ○자원회복계획과 연동하여 근해어선 감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DDA/FTA에 대응한 감척계획 재검토 ○감척사업추진 주체생산자단체로 이관 ○감척지원금의 잔존어업자 부담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재원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 국고사업(농특)	280	2,159	345	382	420	462	550
	- 보조	254	2,159	345	382	420	462	550
	- 융자	26	-	-	-	-	-	-

3-3 양식어업 구조조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양식기술 발달에 의한 생산량 증가와 저가 외국산 수입 증가로 가격하락 및 경쟁력저하에 따른 구조조정 요구 증대
 - 2002년부터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을 통하여 안정생산이 필요한 품종에 대한 개발 억제

□ 문제점

- 소득향상을 위한 불법 초과·밀식 시설로 생산량 증가 및 품질 저하에 따른 가격하락 초래
- 태풍, 적조 등 상습재해 발생으로 어업인 피해 및 정부 피해복구 재원 과다 소요
- WTO-DDA/FTA 등의 관세인하 압력 가중 및 개발도상국가와의 경쟁력 확보 곤란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김·어류 등 안정생산을 요하는 품목에 대하여 신규어장 개발금지 및 기존어장 축소 재개발 유도
- 재해발생 어장에 대한 어업권포기 보상 및 인공위성 촬영분석 등을 통한 과학적인 어장관리 기반확보로 불법 초과·밀식 시설 지속적인 정비
- 해역특성을 고려한 어장개발 및 새로운 전략품종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 양식어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안정생산이 필요한 김, 어류 등은 신규 양식어업 면허금지 및 개발제한을 통한 어장 축소로 2010년까지 현 시설의 10% 수준 정비
 - 적조, 태풍 등 재해발생 어장에 대한 어업권 포기보상제 도입
 - 어류, 패류, 해조류양식장의 시설·입식기준 개편 및 불법 초과 밀식 양식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 밀식·관리부실 어장에 대한 평가제 도입으로 어장재개발 제한 및 해역특성을 고려한 어장개발로 전략품종 육성
- 어업권 이용제도 개편
 - 품종별 어업면허제를 통합면허로 개선
 - 신규개발 품종에 대하여 기술·자본과 능력 있는 개인·법인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어업면허 우선순위 개선
 - 면허 유효기간(20년) 만료어장은 어장휴식년제와 연계어장청소후 어장 개발
- 육상 양식(종묘생산) 어업제도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05년)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5년)	2단계 (2006년 이후)
양식어업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 어장에 대한 어업권 포기시 보상제 도입 ◦불법초과밀식시설 지속 정비 ◦해역특성을 고려한 어장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종별 어업면허제를 통합면허제로 개선 ◦불법 초과밀식시설 지속 정비

3-4 양식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내만에 위치한 양식어장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수입활어의 급증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식시설 현대화 필요
- 친환경적 개량부자 등 양식산업 인프라 확충 및 양식장 소독제 사용으로 질병 사전방지 필요
- 마을어장 이용확대를 통한 어촌활성화 필요

□ 문제점

-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노후 양식시설 파괴 빈발로 피해복구 재원 과다 소요
 - 어업인 피해 및 정부 피해복구비 과다 소요
- 스티로폼 부자 사용으로 인한 해양오염 심화
- 야간에 선박 등에 의한 양식시설 피해 심화
- 양식시설 등에 의한 양식수산물 질병 감염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내과성 가두리시설 지원 확대
- 일정규격 이하의 스티로폼 부자의 사용제한
- 친환경적 개량부자 사용으로 해양오염 방지 추진

- 야간점등부자 설치로 양식시설 보호 추진
- 소독제 지원으로 양식시설 등으로부터 질병감염 차단
- 마을어장을 양식어장으로 적극 개발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장이용의 효율성 증대

다. 세부추진계획

- 내파성 가두리 시설 지원 확대
 - 기존 목재 가두리 양식시설을 태풍 등에 강한 내파성 PE소재 가두리 시설로 교체 추진
 - ※ 현재 가두리 110천대의 0.6% 수준인 650대, 내파성 가두리 설치
- 개량부자 및 야간점등 부자 등 계속적 지원
 - 양식어장에 스티로폼 부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야간에 어선항해로 인한 양식시설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 ※ '04년까지 개량부자 3,806천개, 야간점등부자 9천개 지원
- 소독제 및 백신 등 계속적인 지원
 -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어류, 갑각류(새우)양식장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소독제 지속적인 지원
 - 백신개발 및 공급 지원
 - ※ '04년까지 1,096톤(어류 26, 갑각류 1,080톤) 지원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3)	2단계 (2004 - 2006)	3단계 (2007년이후)
양식시설 및 기자재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파성 가두리 시설 교체 ○개량부자 및 야간점등부자 교체 ○소독제 및 백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파성 가두리 시설 교체 ○개량부자 및 야간점등부자 교체 ○소독제 및 백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파성 가두리 시설 교체 ○개량부자 및 야간점등부자 교체 ○소독제 및 백신 지원
마을어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패류양식 시설 및 피조개 등 살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지락 등 살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복 등 살포 지원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별	재원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양식장 및 양식기반시설	○ 국고사업(농특)	39	23	3	4	6	8	2
	- 융자	39	23	3	4	6	8	2
양식어업 기반시설	○ 국고사업(기금)	60	668	74	89	133	181	191
	- 융자	60	668	74	89	133	181	191
양식어업 기자재구입	○ 국고사업(기금)	140	250	30	50	50	60	60
	- 융자	140	250	30	50	50	60	60
마을어장 개발	○ 국고사업	(14)	(15)					(15)

※ 양식장 및 양식기반시설('04 ; 39억원), “마을어장 개발 사업” 지방 이양

3-5 외해가두리(내파성, 수중) 양식 개발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거시적 관점에서 양식장 면허 및 관리가 되지 않고 국지적으로 양식의 기술적 측면만을 검토하여 면허처분 되고 있어 장기간 계속적으로 양식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장기양식에 의한 자가오염과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 등으로 어장환경이 악화되어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음

□ 문제점

- 잦은 질병발생, 적조, 태풍 등의 환경악화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의 양식경영 악화로 국제경쟁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항생제, 소독제, 생사료 사용과 관리사의 생활 오폐수 등으로 인한 청정해역 이미지 훼손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연안역의 생태환경회복 및 친환경적 양식
 - 내만의 양식 오염원을 제거하고, 생태환경 복원
 - 어류양식 시설의 이동은 내만의 적조피해 최소화
- 양식잠재력 확대, 양식품종 고급화, 다양화 추구
 - 외해지역을 활용함으로써 양식잠재력 확대
 - 양질의 환경으로부터 고급제품 생산 유도

- 양식산업의 과학화 추진
 - 시스템 구조 및 운영에서 첨단기술 접목 양식
- 연안 자원조성 및 레저사업 유도
 - 외해 가두리는 부어초 기능으로 어류의 운집효과가 있고
 - 외해 양식산업 단지조성은 단지주변에 레저 및 관광산업 유도
- 외해양식은 통합관리 양식
 - 외해양식의 핵심수단은 집단화,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통합 관리

다. 세부추진계획

- 외해 가두리 양식시설 최우선적으로 지원
 - 외해 내파성 가두리 또는 수중가두리 집단양식
 - 내만의 양식시설을 외해로 이설하고자 할 경우 보조 지원
- 양식어장 재개발 억제
 - 어장환경이 좋지 않거나 피해가 잦은 어장은 외해로 이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개발 억제 또는 축소 개발
- 새로운 고소득 품종 양식 개발
 - 참치 양식어장 등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3)	2단계 (2004 - 2006)	3단계 (2007년 이후)
외해 가두리 양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해(수중) 가두리 시설기준 마련 ◦외해 가두리 양식어장 개발 ◦양식어장 개발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해 가두리 양식어장 개발 ◦양식어장 개발억제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재원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					
			소계	`05	`06	`07	`08	`09
외해 가두리 양식(신규)	○ 국고사업	-	(160)	-	(40)	(40)	(40)	(40)
	- 보조	-	(160)	-	(40)	(40)	(40)	(40)

3-6 원양어업 구조조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신 한·일 어업협정으로 일본 EEZ에서 북해도트롤선 전면 철수 및
꽂치붕수망어선 조업구역 축소
 - ※ 일본 연안 12해리 이원 → 35해리 이원 수역
- '92년 UN결의에 의한 북태평양 오징어유자망어업 전면 중단으로
동 어선의 일부가 오징어채낚기로 전업하여 오징어채낚기어선세력 증가
- WTO-DDA 협상 및 FTA 체결시 수산물조정관세가 폐지 또는 대폭
축소될 경우 동 관세 수혜업종 경쟁력 상실 우려
 - ※ 조정관세율 : 냉동민어(70%), 꽂치(40%), 오징어(30%), 명태(30%)

□ 문제점

- 연안국과 국제수산기구에 의한 자원관리 및 조업규제 강화로
어장상실 또는 축소, 조업여건 악화
 - 어선세력 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업체의 채산성 악화
- 오징어 등 원양 생산물의 대량 반입으로 연근해 어업인과 마찰 우려
- 원양정책자금 등이 WTO-DDA 협상결과 보조금으로 분류되고,
조정관세 등 지원수단이 상실될 경우 원양어업기반이 일시에 붕괴될 수
있음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적정 원양어선세력을 유지토록 하여 입어과다로 인한 경쟁지양 및 적정 생산량 국내 반입으로 연·근해 어업과 분쟁을 피하고, 적정 어가에 의한 업체 경쟁력 제고
- 조정관세 폐지 등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여 해외 식량자원 획득을 위한 원양어업 기반 유지

다. 세부추진계획

- 어업협정 체결 및 국제수산물기구의 규제 등에 의하여 어장이 축소된 업종 우선 감척 실시(북해도트롤, 꽁치붕수망, 오징어채낚기)
- WTO-DDA/FTA 협상결과, 수산물에 대한 조정관세 등의 폐지로 인해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적정수준의 감척 추진(해외트롤, 꽁치붕수망 등)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2005)	2단계(2006-2007)	3단계(2008 이후)
원양어선 감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DDA, FTA체결로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업종 감척('07년) - 해외트롤 4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트롤 24척 ◦꽁치붕수망 등 8척

3-7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참치어업은 우리나라 원양업종 중 경쟁력 있는 수출전략 및 고부가치 업종이나 어선의 노후화로 주요 참치조업국과의 경쟁력 약화
- '80년대말 이후 원양어업 대체건조자금 정부 지원 중단 등으로 선박의 신조 실적이 없어 노후화 계속 증가 추세
- 노후어선 신조대체를 통한 선박안전성 확보 및 장비 현대화로 원양 주력업종으로 육성 필요

《주요 경쟁조업국 참치연승 어선현황》

구 분	한 국	일 본	대 만
척 수	190	563	609
평균선령	17	9	7

[자료] 일본 : '03 수산물교역회의 자료('02기준), 대만 : 일본 수산청홈페이지 자료

□ 문제점

- 참치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어업경영비 상승 및 가격경쟁력 약화
 - '04년말 현재 총 210척
 - 11 ~ 20년 143척(67%), 21년 이상 67척(32%)
- 참치연승어선의 경우 -60℃ 이하의 급냉 및 보관시설 등 최신장비 및 설비가 필요하나 노후화로 대만 등 주요 조업국과의 경쟁력 약화
 - 대일 수출 점유율 : 한국('90) 27%(61천톤) → ('04) 13%(57천톤)
 - 대만('90) 27%(61천톤) → ('04) 35%(143천톤)

- 신조시 척당 약 60억원(참치연승기준) 소요로 개인투자에 의한 신조는 부담 과중
 - '04년말 현재 121개사 원양업체중 자본금 2억원 미만 업체 70개사(58%)
- WTO 규제까지 대체선을 건조하지 않을 경우 이후에는 정부지원을 통한 건조는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업계 자율 건조는 사실상 곤란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 방향

- 선령 21년 이상된 노후 원양참치어선의 연차별 대체건조추진을 통해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신조를 통한 제품의 경쟁력강화로 수출 증대효과 및 원양주력 업종으로의 참치어업 육성기반 조성
- 노후어선의 대체건조로 선박운영경비 절감 등을 통한 어업 경영수지 개선 및 조업어선의 안정성 확보
- 참치어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적정 어선세력 유지

다. 세부추진계획

○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2004	연도별 추진계획('05-'09)					
		소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사 업 량(척수)	5	4	2	2	-	-	-
지원계획(억원)	240	394	197	197	-	-	-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용자 80%, 자담 20%, 척당 4,800백만원 이내
- ※ 참치선망 : 용자 70%, 자담 30%, 척당 14,933백만원 이내
- 용자기간 : 15년(5년 거치 10년 상환 연 4%)

라.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04 ~ 2009

마. 투융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재원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					
			소계	`05	`06	`07	`08	`09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	○ 국고사업(기금)	240	394	197	197	-	-	-
	- 용 자	240	394	197	197	-	-	-

4. 선진 어업질서의 정착

선진 어업질서 정착

- ◆ '06년까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매입 정리(2,000척)
- ◆ 첨단어업지도선 : ('04)30척 → ('08)38척



불법어업 근절대책 적극 추진	어업지도 단속기능 강화	불법 양식시설 근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인 단속 및 제도개선 ·전업지원 및 민간참여 확대 ·불법어선의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업지도선 확충 및 단속장비 현대화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해양경찰청 공조체제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적인 어장정비 유도 ·불법양식 상시 감시기구 설치 ·양식어장 기록 카드제 도입

□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근절대책 지속 추진

-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 자원남획 등 자원에 영향이 큰 업종의 불법어업부터 단계적으로 근절
 - ※ 단속실적 : ('02)3,102건 → ('03)2,067건 → ('04)3,673건
-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 불법어선 계류조치 등 제도개선을 통해 상습적 위반행위를 방지
- 합법어선에 의한 명예감시 활성화 등 자율질서 확립 추진
 -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지정 확대
 - “불법어업 없는 마을” 선정 등 민간참여 분위기 확산
- 중국어선 우리 EEZ 침범조업 차단
 - 서해 NLL 등 해역에 지도선, 해경·해군함정을 집중 배치하여 침범 중국어선 즉각 나포

□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매입정리 추진

-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정리에관한특례법” 제정('04. 12)에 따라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선 매입 완료('05 ~ '06까지 2,000척)

□ 불법어업 지도단속 장비확충 및 현대화

- 전천후 고속 첨단어업지도선 연차적 확충('08까지, 940억원)
 - ※ 어업지도선 : ('05) 30척 → ('08) 38척
- 어업지도선 건조시 고속단정(40노트급), 전자해도시스템, 야간관측장비, 물대포 등 첨단장비 장착

□ 무면허·초과시설 등 불법 양식시설 근절

-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불법양식 상시 감시기구 설치 운영
- 면허취소, 각종 정부지원사업 배제, 면세유 공급중단 등 불이익 강화
- 양식어장기록카드제 도입으로 종묘입식, 사료 급이기록 보관 의무화

4-1 불법어업 근절대책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사업목적

- 어업질서 조기정착으로 자원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어업 경쟁력 강화
- 불법어선인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를 위한 선가매입 등으로 어업질서를 조기에 확립하여 어업경쟁력 확보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사업기간

- 불법어업근절추진 : 무기한
- 불법어선정리 : '05 ~ '06

○ 총사업비(국고) : 900억원 예정

○ 사업대상 :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 단속과 병행하여 영세 어업인에 대한 전업지원, 불법어선정리를 통한 불법어선의 근원적 처리

※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자 : 전국 3천여척 (전남 1,440, 경남 730, 부산 700척 등)

□ 문제점

- 경제적으로 합법어업에 비해 나은 수익(저비용 고소득)
- 어업인의 준법정신 결여 및 어업여건 변화에 따른 유인 요인 상존
-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불법어업 근절에 한계가 있음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불법어업 근절시까지 현장 중심의 강력한 단속 실시
- 전업지원 및 민간참여 확대
- 불법어업예방 및 어업인의 의식전환을 홍보 강화
- 불법소형기선저인망어선 폐업 지원

다. 세부추진계획

- 지역별·유형별 특성에 맞춰 단속시스템 구축
- 범 정부차원에서 불법어업근절시까지 지속적인 단속 시행
- 합법어업으로의 전업지원 강화 및 민간인 참여 확대
 - 지원규모 20억원(척당 5,000만원/ 2년거치 3년 상환/ 연리3%)
 -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에 의한 자율감시기반 구축
-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의 의식전환 홍보 강화
 - 3부(해양수산부, 법무부, 행정자치부)합동 담화문 제작·배포
 - 자율적으로 질서를 회복한 “불법어업 없는 마을” 선정
-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관한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및 폐업지원 착수
 -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잔존선가 지급후 매입, 해체·처리('05~'06년 말까지 2,000척)
- 중국어선 우리 EEZ 침범 조업 차단
 - 해경·해군합정 및 지도선을 서해 NLL 부근에 집중 배치

라. 추진일정

- 범 정부차원에서 불법어업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단속 시행(계속)

- 법무부(검찰)와 협조, 불법어업자 적발시 엄격한 사법 처벌
- 해양경찰과 국가지도선과의 상시 공조 단속체제를 확립
-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어획물 육상유통 단속반 운영
- 합법어업으로의 전업지원 강화(불법어업근절시까지)
 - 지원규모 20억원(척당 5,000만원 / 2년 거치 3년)
-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민간인 참여 확대(계속)
 -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감시기능 활성화
- 어업질서확립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계속)
 - 어선몰수 : (현행) 5년내 3회 위반 → (개정) 5년 이내 2회 위반
- 소형기선저인망어선 폐업지원을 통한 정리('05~'09)
 -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하위법령 제정('05)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정리에 관한 절차 등 규정

마. 투자용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용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	○국고사업(농특) - 보조	-	185	-	185	-	-	-
		-	185	-	185	-	-	-
불법어업근절	○국고사업(일반) - 보조	-	22	6	6	6	2	2
		-	22	6	6	6	2	2

4-2 어업지도선 건조 및 단속장비 확충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사업목적

- 한일/한중 어업협정 발효('99. 1. 22 / '01. 6. 30)로 우리 관할해역이 약 4배 확대됨에 따라 부족한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건조
- 어업지도 첨단 단속장비 확충으로 불법어선에 대한 주·야간 전천후 불법조업 증거자료 확보 및 외국어선의 우리수역 침범 불법조업 사전 예방

○ 사업기간 : '02 ~ 계속

○ 총사업비

- 지도선 건조(국고, 자담) : 20척, 2,078억원('04 ~ '13)
 - ※ 기 투자사업비(국고, 자담) : 5척, 344억원('02 ~ '03)
- 단속장비 확충(국고) : 34억원('03 ~ '09)
 - ※ 기 투자사업비(국고) : 5억원('03)

○ 사업대상 : 국가 지도선

○ 어업지도선현황 : 30척

□ 문제점

- 관할해역이 약 4배 확대됨에 따라 어업지도선 절대 부족
- 관할해역이 확대됨에 따라 어업지도선의 운항능력 및 첨단 장비 부족으로 외국과의 어업협정이행 및 정부간의 이익 추구에 대처 미흡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어선안전조업지도 및 불법어업단속 지속 필요
-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어업협정이행사항확인 지속 필요
- 어업질서 재편성으로 변화된 조업구역 관리를 위해 어업감시·감독을 위한 지도·단속 장비의 현대화
- 불법어선에 대한 주·야간 전천후 과학적인 증거자료 확보 필요
- 전천후 고속 단속정(RIB) 보강으로 어업지도·단속역량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 어업지도선 확충 : '04년 30척 → '08년 38척
- 노후어업지도선 대체 : '09년 28척 → '13년 10척
- 야간감시카메라시스템 구입
 - '04년 1대 → '09년 6대(연차별 투자 추진)
- 고속 단속정(RIB) 구입
 - '04년 2대 → '09년 12대(연차별 투자 추진)
- 단속정 승·하강시스템 구입
 - '04년 0대 → '05년 3대 → '09년 12대(연차별 투자 추진)

라. 추진일정

- 어업지도선 확충 : '04년 30척 → '08년 38척
- 노후어업지도선 대체 : '09년 28척 → '13년 10척
- 야간감시카메라시스템 구입 : '04년 1대 → '09년 6대(5대 추가 확보)
- 고속 단속정(RIB) 구입 : '04년 2대 → '09년 12대(10대 추가 확보)
- 단속정 승·하강시스템 구입 : '05년 3대 → '09년 12대

마. 투자용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재원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어업지도선 건조	○ 국고사업(일반) - 보조	188	901	154	160	188	207	192
		188		154	160	188	207	192
어업지도선 첨단단속장비 확충 (어업지도선 시설 보완: 동해)	○ 국고사업(일반) - 보조	4	91	17	18	18	19	19
		4		17	18	18	19	19
지도선 유류비	○ 국고사업(일반) - 보조	106	842	132	147	167	197	199
		106		132	147	167	197	199

4-3 불법양식시설 정비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양식어업은 약 60여개의 품종이 양식되고 있으며 품종별로 다양한 양식방법이 존재하고, 양식시기도 각각 다름
- 일부 품종에 대하여는 한탕주의식 투기성 불법·초과시설로 과잉투자생산으로 인한 부채 증가 및 수급불균형 초래

□ 문제점

- 불법·초과시설을 생계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양식어업인의 준법정신 결여
- 도서지역의 경우 단속 곤란 및 자치단체장의 불법양식어업단속에 대한 의지 부족
 - 양식어업 면허처분후 사후 어장관리 및 단속 소홀
 - 단속시 집단민원 야기 등의 사유로 단속 기피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무면허·초과시설 자진신고운영 등 자율적인 어장정비 유도
- 주요 양식품목(감·어류 등) 대상 불법양식 지속적 단속 실시
 - 인공위성 촬영 분석 등을 통한 과학적인 점검단속 실시
- 유효기간 만료어장의 불법시설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시 어장개발 금지 등 조치

다. 세부추진계획

- 불법양식 상시 감시기구 설치·운영
 - 환경단체·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단체 참여 유도
 -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 및 명예감시관제도 활성화
- 무면허·초과시설에 대한 정기적 합동단속 실시
 - 시·도(시·군)간 교차단속 실시
 - 수협, 어촌계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인 공감대 형성
- 시설초과 등 수산업법 위반양식업자 처벌 강화 및 불이익 처분
 - 어업면허 취소, 어장 재개발 금지
 - 면세유류 공급 중단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 배제
- 양식어장 기록 카드제 도입
 - 어업권자에 대하여 종묘입식량 사료급이량 등을 기록·보관 및 제출 의무화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4년)	2단계 (2005년)	3단계 (2006년 이후)
불법양식 시설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면허·초과시설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 불법양식 상시 감시기구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면허·초과시설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 불법양식 상시 감시기구 설치·운영 ○ 주요품종 어장에 대한 인공 위성 촬영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면허·초과시설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 불법양식 상시 감시기구 설치·운영

마. 투융자 계획 : 해당사항 없음

4-4 어선 안전조업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사업목적

- 전국 주요 항·포구 출입항신고기관에 배치된 수협 어선안전 점검요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로 어선 항해장비, 선원자격 확인 점검 실시
- 전국 주요 항·포구에 설치된 수협 어업무선국의 운영 및 시설보강예산 지원으로, 어선안전조업지도 및 신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의한 국내외 EEZ 출어선 관리 등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

○ 사업기간

- 어선안전점검 : '85 ~ 계속
- 어업무선국운영 : '66 ~ 계속

○ 총사업비

- 어선안전점검(국고, 자담) : 60명 194억원('04 ~ '13)
※ 기 투자사업비(국고, 자담) : 60명, 234억원('85 ~ '03)
- 어업무선국운영(국고, 자담) : 1,547억원('04 ~ '13)
※ 기 투자사업비(국고, 자담) : 1,734억원(국고 1,041, 자담 693)

○ 사업대상

- 어선안전점검 : 수협 어선안전점검요원
.어선안전점검요원 현황 : 39개소 60명
- 어업무선국운영 : 수협 어업무선국 운영 및 시설보강사업 지원
.어업무선국 17국(39개소), 인원 189명(공익요원 78명 별도)

□ 문제점

- 국가 및 시군에서 운영중이던 안전점검업무를 '85년부터 운영비를 국고보조 조건으로 수협에 위탁 운영중에 있으나, 어선안전점검요원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 미흡으로 수협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수협의 부담 감소방안 강구 필요
- 방향탐지시설의 노후화로 계속운행을 위해서는 약 50억원의 사업비 필요
 - 강화('89년), 백령('86년), 고성('90년), 현포('91년)
- 주 5일 근무제의 본격시행으로 인원증원 및 인건비증가 소요발생
 - 현 정원으로 운영시 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자(115명)의 시간외수당(주16시간), 휴일근무수당(연52일) 추가부담 발생
- 어업무선국 운영체제개선 및 업무위탁에 따른 경비보조에 적정을 기하여 수협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방안 강구 필요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연근해 어선에 대한 안전점검 사전실시로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조업분쟁 예방 및 우리어선 안전보호
- 시도별 1개무선국을 대형화하고(9개소), 7개소는 간이국으로 운영
 - 원격 운영장비 보강 등 시설현대화로 인력 증가요소 상쇄

다. 세부추진계획

- 조업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항어선 안전점검 강화(계속)
 - 출입항 어선의 선원수첩, 안전장비구비 확인 및 출입항 신고 접수
- 방향 탐지시설은 시설수명 종료시까지만 운영 ('05 이후)
- 어업무선국 장기발전 방향 수립 ('05)

라. 추진일정

- 주요 항·포구 어선안전점검요원 운영(계속)
 - 39개소 60명(매년 약 73,700척 점검)
- 주요 항·포구 9개소에 집중국 운영('08년까지)
 - 서울, 인천, 속초, 안흥, 군산, 목포, 포항, 부산, 통영, 제주
- 나머지 무선국은 주간국으로 운영(08~20시)
 - 주문진, 동해, 후포, 울릉, 방어진, 삼천포, 여수

마. 투자용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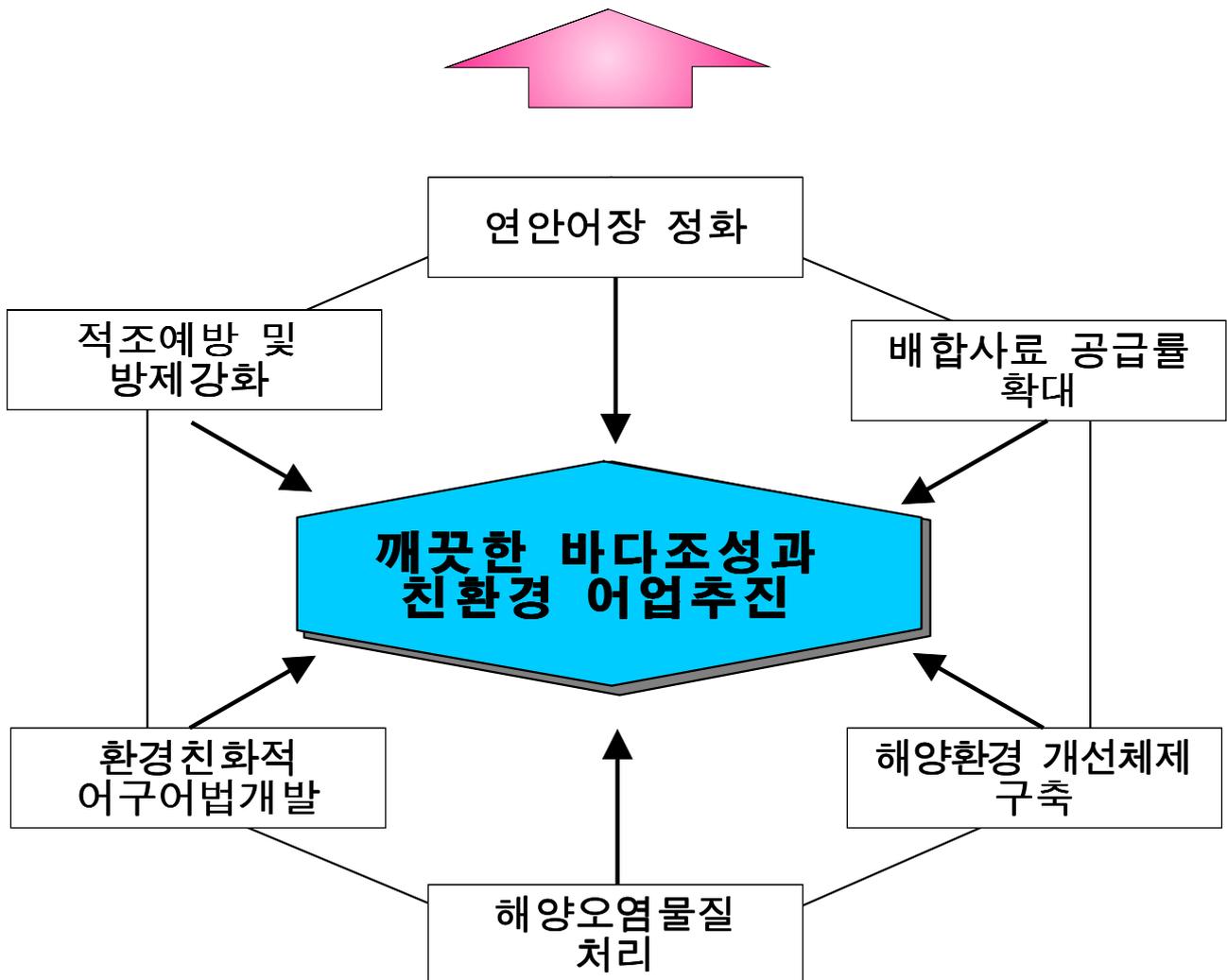
(단위 : 억원)

사업명	재원별	`04	연차별 투용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어업 무선국 운영지원	○ 국고사업(일반) - 보조	115	667	122	125	128	132	160
		115	667	122	125	128	132	160
어선안전점검 요원운영	○ 국고사업(일반) - 보조	14	78	15	15	15	16	17
		14	78	15	15	15	16	17
항해위험물 정밀조사	○ 국고사업(일반)	10	30	10	10	10	-	-

5. 해양환경 개선과 친환경 어업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어업

- ◆ 마산만 등 오염우심해역의 수질을 2등급 수준으로 개선
- ◆ 해양쓰레기 수매 전국 확대('10년까지)



□ 해양환경 개선으로 깨끗한 바다 조성

-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육상오염물질의 해양유입 통제
 - 마산만 등 오염우심해역의 수질을 2등급 수준으로 개선('11년까지)
-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지를 훼손하는 수중 폐기물 제거
 - 연근해 주요 어장에 대한 수중폐기물 실태조사후 체계적 수거사업 실시('07)
-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제 확대 실시
- 해양오염 원격감시체제 구축
 - 특별관리해역 등에 수질자동측정소 설치 확대

□ 연안어장 정화 및 양식 수산물 질병 관리체제 확립

- 환경오염 심화어장에 대한 어장휴식년제 실시('06년)
- 남해안 일대에 만(灣) 단위의 특별관리어장을 지정, 지속 정화 실시(9개소)
 - 퇴적물 수거, 어장 재배치 등으로 어장생산성 향상
- 어류질병 예방용 백신 등 치료제 개발('04년 1종 → '08년 6종) 및 국가공인 수산질병관리사('04) 확대('04년 40명 → '09년까지 140명)

□ 어류양식장 자가오염 방지를 위한 배합사료 공급률 확대

- 양식용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대체('04년 20% → '08년 80%)
 - 산학연 합동으로 환경친화적·고효율 배합사료의 지속적 개발보급
- 생사료 사용 제한제도 마련('07)

□ 적조의 신속대응 및 방제강화

- 친환경적 적조구제물질 연구·개발 강화
- 해양추적자 및 인공위성 표류부이를 이용한 적조 이동·확산 예측모델 개발로 적조예방능력 증진

□ 친환경적인 어구·어법개발 및 내수면 생태계 보전

- 치어 탈출장치 등 생력화·환경친화적 어구·어법 개발 보급
- 내수면 생태계 조사 및 토종어종 보전사업 추진

5-1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오염물질 처리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적용으로 연안어장 및 해양공간의 가치가 종전보다 새롭게 부상
 - ※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해양생물의 산란 서식장의 생태계 복원 시급
- 생활하수산업폐수 등이 장기간 해양으로 유입·퇴적되어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해양생태계 훼손
 - ※ 일본의 경우 '80년대에 이미 전 연안에 대한 퇴적물 준설 완료
- 어장에서 버려지는 어업용 페스티로폼의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해양오염 가중

□ 문제점

- 해저오염퇴적물에는 지속성 독성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인간 건강 및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위협
- 특히 어업활동에서 발생한 폐어구 등도 바다에 투기되어 고기 무덤(ghost-fishing) 형성으로 어족자원 고갈
 - 연근해어획량 추이 ('80) 1,370천톤 ⇒ ('90) 1,542 ⇒ ('00) 1,189
 - 폐기물발생량 추이 ('80) 80천톤 ⇒ ('90) 100 ⇒ ('00) 150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주 5일 근무제의 전면시행으로 해양레저활동 등의 활성화로 해양 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오염해역 준설사업의 해양환경개선 등 가시적인 효과로 인한 사업 확대
 - ※ 오염우심해역의 해저퇴적물조사(16개소)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적 준설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통한 어획자원 회복 기여
 - ※ 연평도 꽃게어장('02), 울진군 대게어장('03), 어획량 약 2.5배 증가

다. 세부추진계획

- 오염퇴적물 준설기준 마련 등 정화·복원 체계 구축
 - 마산만 등 오염우심해역의 수질을 2등급 수준으로 개선
 - 전국주요연안해역의 오염퇴적물 조사('06까지)
 -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염우심해역에 대한 퇴적오니 준설사업 실시
- 연근해 주요어장 중심으로 폐기물 수거사업 확대
 - 전국 주요어장 55개소에 대한 수중침적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후 체계적·계획적인 해양폐기물 관리 및 수거사업 시행
 - 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양정화사업 추진
 -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업체에 우선 위탁·처리
- 페스티로폼 수거 및 관리대책 추진
 - 양식어업인, 관련기관 및 환경단체 등을 통한 페스티로폼 수거체계 구축
 - 품종별, 지역별 자율수거반 편성·운영으로 주기적인 수거작업 실시

- 페스티로폼 집하장 지원 및 감용기 보급
 - 페스티로폼 집하장을 어항배후부지 또는 공유수면에 설치
 - 연안 시·군·구에 감용기 보급(개소당 2억원)
- 개량 부자 공급 확대 및 스티로폼 부자 사용 제한
 - 저장도 스티로폼 사용 제한 규정 마련 등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5년)	2단계 (2006-2007년)	3단계 (2008년 이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오염 퇴적물 준설로 해양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수선소, 영일만, 방어진항 준설, 목호항, 행암만 실시설계 ◦오염우심해역 오염퇴적물 현황조사(5개소) ◦연근해 주요해역 해양 폐기물 분포 및 실태 조사(10개소) ◦해양폐기물수거 : 전남 칠산도 주변해역 등 6개소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 충남 태안 등 31개 시·군 ◦어업용 페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 8대(13억원) ◦ 페스티로폼 수거 및 관리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 방어진항 등 기 시행중인 준설사업 지속 추진 ◦오염우심해역 오염퇴적물 현황조사(9개소) ◦준설해역 우선순위 결정 및 오염퇴적물 관리방안 수립 ◦연근해 주요해역 해양 폐기물 분포 및 실태 조사(10개소) ◦해양폐기물수거 : 고성 명태어장 등 6개소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확대추진 (연안 시·군) -연간 34억⇒50억원 수준 ◦어업용 페스티로폼 감용기보급: 16대(26억원) ◦스티로폼부자 사용제한 (어장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설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오염 퇴적물 준설 ◦해양폐기물 수거 및 조업중 인양된 해양 쓰레기 수매사업 지속 시행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 (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오염해역 준 설	○ 국고사업(균특) - 보조	102	582	107	110	110	110	145
		102	582	107	110	110	110	145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처리)	○ 국고사업(일반) - 보조	93	566	110	108	112	115	121
		93	566	110	108	112	115	121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구축	○ 국고사업(일반) - 보조	18	91	19	18	18	18	18
		18	91	19	18	18	18	18
어업용페스티로폼 감용기보급	○ 국고사업(기금) - 보조	10	52	13	13	10	8	8
		10	52	13	13	10	8	8
적조제어장치 설치사업	○ 국고사업(기금) - 용자	-	10	5	5	-	-	-
		-	10	5	5	-	-	-
이동식선상복합 처리시스템개발	○ 국고사업(기금) - 용자	-	-	-	-	-	-	-
		-	-	-	-	-	-	-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 국고사업(기금) - 용자	-	145	-	25	40	40	40
		-	145	-	25	40	40	40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국고사업(기금) - 용자	20	60	20	20	20	-	-
		20	60	20	20	20	-	-
해사채취행위의 친환경적관리사업	○ 국고사업(기금) - 용자	10	65	10	15	20	20	-
		10	65	10	15	20	20	-
오염퇴적물정화 복원체계구축사업	○ 국고사업(기금) - 용자	3	17	5	12	-	-	-
		3	17	5	12	-	-	-

5-2 해양환경 개선체제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증가한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이 해양생태계 파괴 및 어업생산성을 저하시킴
 - 특히, 임해공업단지에서 발생한 유기오염물질, 중금속 등의 오염은 적조 등 해양오염을 유발하여 수산자원을 고갈시킴
- '95년 여천·광양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및 호남사파이어호 등 대형 유류유출 사고시 양식장 등 수산피해 이외에도 막대한 국가적 해양환경 오염피해가 발생
 - 과학적·합리적 입증기술 미비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은 물론 오염 행위자로부터의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은 미미한 실정
-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공업화와 산샤댐 건설로 인한 황해 해양환경 변화 및 주변국과의 환경무역 장벽화 가능성
-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의 지속성유기오염물질(POPs) 규제 및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한 TBT함유 방오도료 규제 등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 움직임 활발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육상기인 오염물질(적조원인 부영양화물질 : 질소, 인)의 해양유입 억제로 해양환경 개선

- 마산만, 광양만 등 특별관리해역을 중심으로 오염해역의 유역관리 체제 구축
- 해양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유류 유출 사고시 해양오염피해를 정량화하여 국제유류오염손해 보상기금(IOPC Fund) 및 오염행위자로부터 정당한 보상 확보
- 재활용기술개발 및 지원으로 해양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
- 황해 퇴적물의 기원 및 이동 규명 및 퇴적물 오염분석을 통한 황해 환경상태평가

다. 세부추진계획

□ 육상기인 해양오염 물질 해양유입 저감

- 오염우심해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
 - 오·폐수 해역 유입량 사전 억제 추진

□ 인공용승류를 이용한 어장환경 개선

- 남해지역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영양염과 용존산소가 풍부한 저층수를 표층으로 용승시켜 어장환경 개선사업 추진
-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전국연안으로 인공용승류 사업 확대 추진

□ 시화호 해양환경개선사업 추진

-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의 추진성과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화호 환경모니터링 시행

□ 황해 환경보전

- 퇴적물/층 기원 및 경계범위 파악으로 황해-동중국해 해양영토 경계확정 대비 자료축적과 환경상태평가를 위한 오염분석
- 황사 및 황사 부착물질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규명과 황사 이동시 해양 및 대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 분석
- 산사댐 건설에 따른 양자강 유입수 감소로 예상되는 해·조류 체계 변화 연구 및 생태모델 개발

□ 해양환경변화 대응

- 수산생물 검색기법 확립, 국제협력 및 국내외 대응전략 연구
- 해양생태계내 오염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 기법확립, 독성 및 작용기전 연구 등

□ 해양환경개선기술개발

- 수산 폐기물 재활용기술 개발로 정책적 방안 도출, 대책 수립
- 유류오염으로 인한 어업 피해 손해 산정기법 연구 및 과학적인 피해 조사 및 평가 시스템 구축
- 밸러스트수 배출규제대응기술 개발로 외래 생물종에 의한 토착 생태계의 교란 및 파괴로 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저하 예방으로 우리나라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호
- 선박대기오염방지 국제협약 발효에 대비한 오염방지 대응기술을 개발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국내 선박기자재 산업 육성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4)	2단계 (2005 - 2006)	3단계 (2007년 이후)
해양오염 원격감시체 제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자동측정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관리해역 및 오염우심해역에 우선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자동측정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리해역 및 일반해역 설치 기 설치된 상시 측정소 운영 원격측정 관련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자동측정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측정소는 수과원의 국가 해양환경측정망과 연계하여 수과원에서 통합 운영
인공용승류를 이용한 어장 환경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해-소매물도 인근 해역에 시범사업 연구 인공구조물 효과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결과에 따라 전국 연안으로 확대 추진
시화호 해양 환경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화호 해양환경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화호 해양환경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성과 분석 및 문제점 개선책 시행
황해환경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해북부 퇴적물/층 경계선조사 황해 퇴적물/층 DB 구축 등 황사 해양고정관측점 및 집중시기 선박이동 관측점 운영 해황변동 및 양자강 유출수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해 동부-북부 퇴적물/층 이동경계조사 황사광물의 장거리 이동시 변화조사 및 과거 황사광물 변화조사 해황변동 및 양자강 유출수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황변동 및 양자강 유출수 모니터링
해양환경 변화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생물검색기법개발 오염실태 기초연구 오염지역 해양생물 영향 실태조사 유입경로특성과약 및 분배특성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색키트 개발과 현장 적용 ADI 산정 및 수산제품 저감화기술 연구 해양생물 생태D/B 구축 단일작용에 의한 독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D/B구축 및 개발기술의 활용방안 연구 위해도 평가모델 개발 및 적용

추진전략	1단계 (2004)	2단계 (2005 -2006)	3단계 (2007년 이후)
해양환경 개선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패각 혼입 특수 콘크리트 개발 ◦유류오염 환경재해 평가기술 개발 ◦환경친화적인 천연방오제 개발 ◦밸러스트수 배출규제 대응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류오염 환경재해평가기술 개발 ◦환경친화적인 천연방오제 개발 ◦밸러스트수 배출규제 대응 기술 개발 ◦선박오염 관련 국제협약 대응 기술 개발 ◦선박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련 시스템 개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및 보급 ◦유류오염 환경재해평가 기술 개발 ◦밸러스트수 배출규제 대응기술 개발 ◦대기오염방지협약 신기술 개발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재원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해양오염 원격감시 체제 구축	○ 국고사업(일반) - 보조	7 7	35 35	7 7	7 7	7 7	7 7	7 7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사업(신규)	○ 국고사업(일반) - 보조	12 12	24 24	12 12	12 12	- -	- -	- -
황해환경개선사업	○ 국고사업(일반) - 보조	11 11	39 39	15 15	9 9	5 5	5 5	5 5
해양환경변화대응	○ 국고사업(일반) - 보조	6 6	5 5	5 5	- -	- -	- -	- -
해양환경개선기술 개발	○ 국고사업(일반) - 보조	10 10	45 45	9 9	9 9	9 9	9 9	9 9
환경보전 감시활동(교육, 홍보)	○ 국고사업(일반) - 보조	2 2	8 8	2 2	2 2	2 2	2 2	- -
산업부산물 활용 어장환경개선	○ 국고사업(기금) - 보조	10 10	85 85	10 10	15 15	20 20	20 20	20 20
한·중 황해 환경공동조사	○ 국고사업(일반)	2	10	2	2	2	2	2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대응 연구	○ 국고사업(일반)	2	13	2	2	3	3	3
연안통합관리구축	○ 국고사업(일반)	4	14	4	4	2	4	-
새만금해역 해양환경영향조사	○ 국고사업(일반)	32	190	34	32	32	32	60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조성	○ 국고사업(일반)	-	32	8	6	6	6	6
해중경관보전지구육성	○ 국고사업(일반)	-	4	4	-	-	-	-

사업명	구 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청소년해양 환경체험	○ 국고사업(일반)	-	8	2	2	2	2	-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온배수관리방안	○ 국고사업(일반)	-	6	2	2	2	-	-
전국해양자연 환경조사	○ 국고사업(일반)	-	24	2	4	4	4	10
해양환경 국제협력 (APEC, PEMSEA)	○ 국고사업(일반)	-	4	2	2	-	-	-
CO2해양격리 사업	○ 국고사업(일반)	-	36	5	7	7	7	10
유전자변형 수산물안전 관리체제구축	○ 국고사업(일반)	1	5	1	1	1	1	1
환경분야 조정재원	○ 국고사업(일반)	-	64	-	-	9	55	-

5-3 갯벌생태계 및 습지 보호·관리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습지보전법 제8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에 의거, 습지보호지역 또는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03년말 현재 9개소)
 - 습지보호지역(5개소) : 무안('01), 진도('02), 순천만, 보성벌교, 웅진장봉도('03)
 - 생태계보전지역(4개소) : 신두리, 문섬('02), 오륙도, 대이작도('03)
- 보호지역 관리계획 수립('04년말 4개소)
 - 무안('02), 진도, 신두리, 문섬('04)
-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라 전국 연안습지조사 실시 ('99~'05)

□ 문제점

- 매립·간척 등 개발행위의 제한 및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한 지역 주민의 반대로 주요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지연
 - 습지보호지역 지정후 체계적인 관리 미흡시 지정효과의 반감 및 정부정책 불신 초래
- 해양자연환경에 대한 기본조사 미흡
- 보호지역 관리사업의 경우 사업주관 지자체에서는 지정의 목적인 생태계보전 및 복원 보다 수익·시설사업에 관심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습지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 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체계적 보전계획 수립
 - 조사결과의 GIS 구축을 통한 일반국민의 갯벌 등 해양자연환경 관련 정보접근성 제고
- 장기적으로 보호지역 지정 확대 필요
 -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추가 지정
-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보호지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생태계 보전사업 지속 추진
 -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사업 전개
 - 지자체,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율적인 관리체제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 전국 연안습지 조사 및 해양자연환경조사 실시로 보전가치가 있는 갯벌 및 해양생태계를 규명하여 보호지역 지정 및 모니터링 실시
 - 갯벌생태계 조사결과 DB화 및 GIS 구축('05)
 - 연안습지국가기초계획 수립시행('05)
 - 전국자연환경조사사업 실시('05 ~ '11)
- 습지보전법제11조 및 시행령제8조에 의한 습지보전사업 추진
 -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복원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
 - 보호지역 관리사업 확대 실시 : 무안갯벌, 진도갯벌
 - 보호지역 관리계획 수립 : 순천만, 보성벌교, 웅진장봉도

-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생태계보전 사업 추진
 -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사업 실시 : 신두리, 문섬
 - 관리계획 수립 : 오륙도, 대이작도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5)	2단계 (2006)	3단계 (2007년 이후)
기초조사 수행 및 보호지역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갯벌생태계조사 완료 ○ 연안습지국가기초계획수립 ○ 전국해양자연환경조사 기본계획 수립 ○ 보호지역 관리사업 4개소 ○ 관리계획수립 4개소 ○ 보호지역 관리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조사결과 DB화 및 GIS 구축·운영 ○ 자연환경조사 1차년도 사업 수행 ○ 보호지역 관리사업 지속 및 추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조사 지속 추진 ○ 보호지역 관리사업 지속 및 추가 지정 ○ 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 방안 수립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재원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갯벌 생태계조사	○ 국고사업(일반)	7	-	-	-	-	-	-
	- 보조	7	-	-	-	-	-	-
습지 및 생태계 보호 지역관리	○ 국고사업(일반)	28	179	28	49	62	30	10
	- 보조	28	179	28	49	62	30	10

5-4 연안어장 정화를 통한 어장환경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육상오염원, 양식장 자가오염 등으로 어장 자정능력 저하
- 장기 연작 및 과도한 시설로 생산환경 악화

□ 문제점

- 육상오염원의 유입증가, 연안어장의 과도한 이용 등으로 연안어장 오염 지속
- 어업인의 어장환경 개선의지 부족 및 어업권자의 시설물 철거 등의 지연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어장자정 능력저하 및 생산량 감소를 개선하기 위한 어장환경 개선사업 강력 추진
 -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양유입 방지 및 해·육상양식장의 자가오염 저감 추진
- 생태계와 수산물 안전성을 고려한 양식어장관리 강화
 - 어장관리 기본계획 수립
 - 오염 심화어장 휴식년제 및 동시 면허갱신제 실시

다. 세부추진계획

- 깨끗한 양식어장 환경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양식환경 유지
 - 어장정화사업 추진체계 및 관련제도 정비
 - 어장관리해역 환경용량 산정을 위한 환경조사 실시
-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실시
 - 연안어장의 오염이 대규모화 되어감에 따라 기존의 양식어장 중심의 소규모 어장정화사업으로는 오염의 효율적 제거 곤란
 - 오염정도가 심한 남해안 일대 9개만을 지정, 만(灣) 단위로 정화사업 실시
 - ※ 특별관리어장(9개소) : 전남 4개만(여자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가막만), 경남 5개만(고성만, 진해만, 강진만, 한산만, 자란만)
- 폐각 재활용업체 운영 활성화로 폐기물량 최소화
 - 폐화석비료를 농림부 토양개량사업에 공급 추진
 - 친환경 굴폐각 어초 및 건설자재 등으로 자원 재활용
- 양식어장 휴식년제의 시범실시 방안 마련('06년)
 - 오염이 심화된 해역에 대하여 우선 시범 실시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5년)	2단계 (2006년 이후)
어장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 및 특별관리어장정화 사업 실시 ◦어장휴식년제 시범실시 예산확보 ◦어장정화관련 제도 및 법령정비 ◦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 및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지속 실시 ◦오염심화 어장 휴식년제 및 동시 갱신제 실시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재원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어장정화	○ 양식어장정화	143						
	○ 특별관리어장정화	114						
	○ 적조방제	35						
	- 황토구입							
	- 적치장							
	- 황토살포기							
	- 적조제어장치설치							
	○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 불가사리구제기구							
	○ 연구용역비							
	○ 국고사업(균특)	292	1,411	210	226	300	325	350
	- 보조	292	1,411	210	226	300	325	350
어장휴식년제 시범 실시	○ 국고사업(일반)	-	160	-	10	50	50	50
	- 보조	-	160	-	10	50	50	50

5-5 수산물 질병관리체계 확립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양식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양식 어패류에 바이러스 혼합감염 등 난치성 전염병 발생 증가에 의한 양식어류 피해 증대로 연간 3,000억원 피해 추정
- 양식동물 질병 발생시 어업인 등이 임의 치료 및 과잉 투약
- 해양환경악화 및 수입자유화로 어류질병 발생률 증가

□ 문제점

- 2000년대 들어서는 20~30%로 질병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약제 오·남용에 의한 내성균 출현 증가로 치료효과 저하 및 수산식품의 안전성 저해
- 외래종 수산동·식물 이식 등의 증가와 질병이 감염된 종묘 이동에 의한 질병 확산 우려
- 수산동물의 질병의 체계적 관리 및 수산용약제의 용법·용량에 대한 제도 미비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향후 3년 이내에 백신 제조기술 및 병원균 검출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현재는 50% 수준)

- 수산동물전염병예방법 제정으로 체계적인 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및 수산용 약제 사용에 대한 제도적 관리 마련
- 기르는어업육성법 제정·공포에 의한 국가면허시험 실시로 수산 질병관리사 육성 및 진료체계 확립

다. 세부추진계획

- 수산동물 전염병 예방법 입법 추진
- 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고효능 저가 백신 개발
 - ('04) 1종 → ('08) 6종 개발
- 항생제 대응 가능한 천연 면역증강제 개발
- 질병 조기 진단법 개발(진단키트 등)
- 국가공인 수산질병관리사 확대 및 수산질병관리원 제도 신설 추진
 - 수산질병관리사 ('04) 40명 → ('09년까지) 140명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5)	2단계 (2006 - 2007)	3단계 (2008년 이후)
백신 및 치료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쇄구균혼합백신 개발 ○이리도바이러스 재조합 백신(어종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쇄구균혼합백신 산업화 연구 ○이리도바이러스 재조합 백신 현장보급 ○비브리오패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브리오패균 현장적용시험 및 산업화 연구 ○버나바이러스 재조합 백신
수산생물 질병예방 제도도입 및 방역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동물 전염병 방역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동물 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성전염병 차단을 위한 검역제도 개선 -국내 전염병 방역제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동물 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성전염병 차단을 위한 검역제도 개선 -수산용 약제 사용에 대한 관리

5-6 어류양식 배합사료 공급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어류양식 사료량중 80%를 소형어류 등의 생사료 사용

계	생 사 료	배 합 사 료
47만톤 (100%)	37만톤 (79%)	10만톤 (21%)

※ 생사료중 6만여톤은 중국산 잡어를 수입하여 총당

□ 문제점

- 생사료 위주의 양식은 수산자원남획 및 오염의 원인
 - 사료 유실로 인한 연안어장 환경오염(사료유실 20% 수준)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배합사료직불제 확대 실시
 - ('04) 50억원 → ('05) 100 → ('06) 150 → ('07~'08) 800
- 생사료 위주의 양식용 사료를 배합사료로 대체
 - 배합사료 사용 : ('04) 20% → ('08) 80%
- 실용배합사료 개발 연구 지원조직의 강화
- 산·학·연 합동으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배합사료 개발 및 보급

다. 세부추진계획

□ 실용배합사료 개발('03~'06)

- 양식 대상종의 실용 배합사료 개발 및 보급
 - 어종별 영양요구량 및 사료원료 이용기준 마련
 - 어종별 배합사료 공급체계 확립
- 영양 요구량 기준에 의한 실용 배합사료 개발 및 지원
 - ※ 2003년에 대중성 어종인 넙치 배합사료 시제품 생산
- 실용 배합사료 사용 시범어장 운영 및 어업인 홍보
- 배합사료 품질관리 및 사료영양 특성 연구('04~'08)
 - 배합사료 품질평가 기준 확립 및 품질 평가와 품질인증제 도입
 - 기능성 사료개발(인삼넙치 등), 육질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 국립수산과학원내 사료전문 연구기능 강화

- 사료전문연구소 신설(포항) 및 연구인력 보강
 - 사료전문가 2명 → 6명
- 산·학·연 합동연구 및 협조체제 구축
 - 사료연구협의회 구성(14명) : 과학원 6, 학계 2, 사료업계 4, 수협 2
 - 사료회사에서 기술개발시 개발비용 보전방안 강구
- 배합사료 개발 연구 및 품질관리 방안 연구
 - 양어사료개발 연구팀 구성(10명) : 과학원 5, 학계 2, 사료업계 3

□ 사료관리법령의 정비

- 양식사료 관리를 농림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
- 배합사료의 품질관리 실시 근거 마련
 - 생사료의 사용제한 근거마련('07년)
 - 배합사료의 품질평가기관 지정 운영(국립수산과학원)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3)	2단계 (2004 - 2005)	3단계 (2006년 이후)
배합사료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용 배합사료 설계 및 제조(넙치) ◦상품사료와 효과 비교시험(넙치) ◦배합사료 준공급체계 연구(넙치) ◦영양요구 및 사료원료 이용성 연구(돔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용 배합사료 제조 및 효과시험 (넙치, 조피볼락) ◦배합사료 표준공급체계 연구(넙치, 조피볼락) ◦현장배합사료 현장 실증시험(넙치) ◦배합사료 품질관리 및 사료영양 특성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용 배합사료 제조 및 효과시험(농어, 돔류) ◦배합사료 표준공급체계 연구(농어, 돔류) ◦실용배합사료 현장실증 시험 (농어, 돔류) ◦배합사료 품질관리 및 사료영양 특성 연구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별	재원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환경친화적 해산어 배합사료 개발 (신규)	○ 국고사업 - 보조	(-) (-)	(38) (38)	(-) (-)	(6) (6)	(10) (10)	(11) (11)	(11) (11)

5-7 적조의 신속대응 및 방제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유해성 적조로 인한 대규모 수산피해 반복 발생
- 상승 적조발생으로 인한 어업인 재산피해 및 수산물 소비위축 등 사회적 문제 대두

□ 문제점

- 해양환경 악화로 적조현상 빈발 및 광역적·장기적·지속적 발생
- 황토 살포방법 이외의 다양한 적조 구제물질 개발 필요
- 환경기초시설 설치시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 확보 애로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적조 감시·예보 시스템의 자동화, 첨단화로 적조피해의 최소화 구현
- 적조 조기에보, 피해방지 기술개발 및 방제체제 개선

다. 세부추진계획

- 적조 원격감시망 구축
 - 남해안 나로도 주변해역에 2개소 시범운영
 - 주요 적조발생해역 10개소(남해, 동해) 자동 적조관측망 시설

- 적조의 이동·확산 예측모델 개발
 - 해양추적자(SF-6) 및 인공위성 표류부이 등을 이용한 적조의 이동·확산 예측모델 개발
 - 적조발생 및 적조의 이동·확산 예측 프로그램 개발
- 친환경적 적조방제물질 연구개발
 - 고효율 황토제품 등 친환경 구제물질 연구 개발
 - 적조 방제장치 및 기구의 연구개발
- 적조 신 구제물질 사용에 관한 기준·절차제도 마련
- 양식어업 시설기준 강화
 - 양식장의 적조방제 장비 구비 요건 등 어업허가 조건 강화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4년)	2단계 (2005년)	3단계 (2006년 이후)
적조의 신속대응 및 방제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추적자 및 인공위성 표류부이 등을 이용한 적조의 이동·확산 예측모델 개발 ◦친환경적 적조방제물질 연구개발 ◦적조 신구제물질 사용에 관한 기준·절차제도 마련 ◦양식어업 시설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추적자 및 인공위성 표류부이 등을 이용한 적조의 이동·확산 예측모델 개발 ◦친환경적 적조방제 물질 연구개발 ◦적조방제막 시설어장 시험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조원격 감시망 구축 (남해안 나로도 주변해역에 2개소 시범 운영) ◦적조발생해역 10개소 (남해, 동해) 자동 적조 관측망 시설 ◦인공위성 표류부이 등을 이용한 적조의 이동·확산 예측모델 개발 ◦적조발생 및 적조의 이동·확산 예측 프로그램 개발 ◦친환경적 적조방제물질 연구개발

마. 투융자 계획 : 어장정화사업에 포함

5-8 내수면어업 개발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정부의 맑은물 공급정책에 따라 가두리양식 어업면허 불허 및 육상양식장의 수질환경 규제강화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어업생산성이 저하되고 어업인 환경시설 부담과중 등 내수면 어업활동에 제약
- 대부분의 양식장이 전통적 양식방법인 지수식으로 양식규모가 작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등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
- WTO체제 출범에 따른 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물량 점증으로 국내 내수면 양식어업 기반 위축
- 어류 서식지의 난개발과 외국산 수입 어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 및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유어낚시 등 레저 수요 증가에 따른 수산자원의 고갈 추세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5년 이내에 내수면 생산량을 30천 톤으로 증대
 - 현재 : ('03) 19.7천톤 ⇒ 목표 : ('09) 30천톤
- 전통적인 양식시설의 환경친화형 현대화시설 전환하여 환경보전과 비용절감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식품종 다양화 및 관상용 양식 등 고소득 내수면 양식어업 개발

- FTA 체결 가속화에 따른 시장 완전개방 이전에 고부가 양식어업의 개발과 생산량 증대기반 구축
- 내수면 수산자원을 관광·레저와 연계하여 지속 이용·관리체계 방안 마련

다. 세부추진계획

-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자원조성과 보호관리
 - 토산어종, 연어 등 종묘 매입·방류사업 확대('93년부터)
 - 주요 강·하천에 생태정보를 알리는 홍보시설물 설치('05년부터)
 - 내수면 잠재력조사('04 ~ '06)
- 환경친화적 내수면 고도 양식기술 개발과 생산량 증대
 - 국내 소비수요가 많고 경쟁력이 있는 뱀장어 양식시설 등에 집중·대규모 용자 지원
 - 고부가 창출이 가능한 국내 토속어종의 관상어 품종개발과 양식시설에 용자 지원
- 우리나라 민물고기 자원의 생태체험관 건립 지원
 - 수산자원의 중요성 인식 및 자연학습과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

라. 추진일정

(단위 : 개소)

추진전략	세부사업별	'04	연도별 추진계획					
			소계	`05	`06	`07	`08	`09
내수면 어업개발	○담수어양식장시설	10	50	10	10	10	10	10
	○고부가 양식시설	-	57	-	12	15	15	15
	○내수면잠재력조사용역			잠재력 1건 (`04-`06)		-	-	-
	○생태정보 홍보시설물 설치	-	600	100	150	150	200	-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1개소 (`03-`05)	1	1	-	-	-	-
	○민물생태과학관 건립	1개소 (`05-`07)	1	-	-	-	-	-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 (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내수면 어업개발 사업추진	○ 내수면어업개발(농특)	23	20	4	4	4	4	4
	○ 토속어류생태보존(균특)	20	20	20	-	-	-	-
	○ 도립수산종묘배양장(균특)	15	75	12	33	25	-	5
	○ 국고사업 - 보조	58 58	110 110	36 36	37 37	29 29	4 4	9 9

5-9 방치 폐선 처리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98년~'03년 6월 전국연안에 6,929척의 방치폐선이 발생되어 이 가운데 6,000척 제거(평균처리율 87%)
 - 방치폐선 발생현황 : '01년 762척/ '02년 577척/ '03년 6월 406척
- 일부어민들은 전업·폐업 등으로 폐어선을 방치후 이주함으로써 무연고 방치폐선이 연간 380여척 발생
- 목선 및 FRP재질어선은 산업폐기물로 분류, 처리비용과다와 처리절차 복잡 등의 사유로 폐기·방치되어 해양경관을 저해하고 해양오염을 유발시킴

□ 문제점

- 각 지방청과 지자체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방치폐선의 발생을 억제하고 이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담보권설정 폐선의 장기방치 및 방치폐선처리 예산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지자체의 경우 재정난이 심하여 신속한 방치폐선처리에 애로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방치폐선처리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확대 및 적극적 투자로 소유자 미확인 방치폐선의 신속한 처리
- 담보권설정 방치폐선의 직권처리를 위해 관계법령 개정추진
- 수협, 해경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방치폐선 사전발생 억제를 위한 감시 및 계도활동 전개

다. 세부추진계획

- '04년도 방치폐선처리 지원비 예산 집행 (50백만원)
 - 방치폐선의 수가 가장 많고 소형어선들이 다수 방치된 전남에 지원
- 담보권이 설정된 방치폐선의 직권처리를 위한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으로 장기 방치된 대형선박 제거
- 어선 등 소형선박의 재질을 FRP에서 알루미늄 합금선 등 환경친화적 재질로 전환 유도하고 FRP폐선 처리기술개발을 위한 용역 실시
- 방치폐선처리를 위한 전국관계관 회의 개최(매년), 방치폐선처리실태 일제점검(매년 상·하반기) 지속 추진
- 방치폐선처리 독려를 위한 장관친서 발송 및 유공자 장관표창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2004)	2단계(2005)	3단계(2006년 이후)
방치폐선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폐선처리비지원사업 -'04년 50백만원 전남 지원 ◦ 명예연안관리인 재위촉('04.3) ◦ 방치폐선처리 전국관계관 회의 개최(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관리법개정 추진 - 담보권설정 폐선 직권처리 ◦ 상하반기 방치폐선 일제점검 (유관기관 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폐선처리비 지원 사업의 예산확대 추진 (남해안의 방치폐선 제거) ◦ 환경친화적 FRP폐선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실시 ◦ 관계관회의, 방치폐선 일제 점검, 명예연안관리인 재위촉 등 지속 추진

마. 투융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재원별	'04	연차별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방치 폐선 처리비 지원사업 (신규)	○ 국고사업(일반)	(0.5)	(2.5)	(0.5)	(0.5)	(0.5)	(0.5)	(0.5)
	- 보조	(0.5)		(0.5)	(0.5)	(0.5)	(0.5)	(0.5)

5-10 폐어구 수거·관리 및 환경친화적 어구·어법 개발

가. 현황 및 문제점

- 폐어구에 의한 어장오염, 산란장 훼손 등으로 어장 생산력 저하 및 해양생태계 파괴
- 인망류 어업은 자루그물을 끌면서 어획하기 때문에 대상어종이나 크기 등을 선택적으로 포획하기 곤란하여 자원남획의 요인으로 작용
- 통발어업은 어구방치시 입망된 수산동물의 탈출 불가로 자원남획 및 어장오염 요인으로 작용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폐어구 수거 및 관리체계 확립
- 경비절감 및 환경친화적 어구개발·보급
- 트롤·저인망·통발어업의 치어탈출장치 개발·보급

다. 세부추진계획

- 폐어구 수거·관리대책 추진
 - 어장관리법 개정으로 폐어망 수거·관리체계 확립
 - 폐어망 투기·방치자에 대한 과태료 도입 검토
 - 어선이 수거해 온 폐어망을 수매사업비로 처리 확대방안 강구
 - 폐어망 집하장 및 처리비용 지원 및 폐어망 종량제 도입

- 경비절감 및 환경친화적 어구개발·보급
 - 현재 사용어구보다 생산성은 증대되고, 인건비 등 어업경비는 절감되는 환경친화적인 최적어구 개발·보급
 - 생분해성 통발·자망 어구 등 환경친화형 어구개발·보급
- 트롤·저인망·통발 어업의 치어탈출장치 개발·보급
 - 트롤·저인망 어구에 입망된 치어의 탈출율과 탈출한 치어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장치 개발·보급
 - 통발어구의 그물감에 치어 탈출구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어구를 개발·보급

라. 추진일정

- 경비절감 및 환경친화적 어구개발·보급(2005 ~ 2006)
- 트롤·저인망·통발어업의 치어탈출장치 개발·보급(2006 ~ 2008)

마. 투융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재원별	`04	연차별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어망생산 운영	○ 국고사업(기금) - 용자	45	150	30	30	30	30	30
		45	150	30	30	30	30	30

5-11 친환경 어선건조 및 안전설비 지원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90년 이후 신규어업허가 억제 및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시책에 의한 감척사업 추진 등으로 어선세력 감소 추세
 - ('92) 94,135척 → ('99) 94,852척 → ('03) 93,257척
 - ※ '77연근해어업진흥계획에 의거 '78년부터 노후어선대체건조 지원
- WTO-DDA 협상 발효시기 도래 및 연안국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등으로 어업여건 악화
- 해난취약 노후어선 및 저효율기관 설치어선 과다 등으로 어업 생산성 저하 및 해양사고 위험 증가
 - 선령 16년 이상의 노후어선이 '92년 18,852척에서 '03년 16,937척으로 10.2% 감소
 - 동력어선 88,521척 중 육상용 등 저효율기관 설치 어선이 '03년 34,308척(39%) 차지

□ 문제점

- 어업자원 감소 및 주변국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으로 조업어장 축소 등 연근해어업 여건 악화로 경쟁력 약화
- 연근해어업 여건 악화로 인한 조업 손실 증가로 어업 채산성 감소 및 어업기반시설인 어선의 자력 대체능력 저하
- '70년대 후반부터 건조 보급된 FRP어선 척수 증가로 환경오염 발생 및 폐선시 고가의 부대비용 손실 초래
- 고부가가치어선의 건조보급 및 적정어선 개발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 미흡

나.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

- 노후어선의 대체 및 장비설비 지원을 통한 친환경어선 건조 및 안전설비 지원을 위하여 매년 61억원씩 2009년까지 304억을 지원,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 친환경 알루미늄 합금선의 대체 건조 보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조업비용 절감 및 어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업 경쟁력 도모
- 새로운 어선어업 환경에 적합한 어선의 세력기반 확보 유지를 위하여 정부주도의 표준어선형 연구개발·보급

다. 세부추진계획

- 새로운 어선어업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06년부터 적정규모 친환경 어선의 표준어선형 개발 보급(3-8톤급) 등 적극 추진
 - 환경 친화적이고 자원 재활용이 용이한 연료절감형 고부가가치 알루미늄합금 어선의 일반화
 - 학계, 연구소 및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연구체제를 구축하여 개발 효율성 증대
 - ※ 표준어선형 개발 : '06~'08까지 매년 2종씩 6종, '09~'13년까지 3종
- 어선의 안전설비지원은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기관대체, 장비·설비개량, 어선용기계공급 등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해양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장비·설비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어선기관대체 : 저효율노후기관을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
 - 장비·설비개량 : 어선냉동설비, 선체구조개량 등 현대화설비 지원
 - 어선용기계공급 : 안전조업 및 어획 제고를 위한 기계 지원
 - VHF무선설비 : 어선과 일반선박간 통신 연계용 설비지원
 - ※ 지원실적 : '77~'03년까지 4,106억원('04계획 : 41억원)

라. 투융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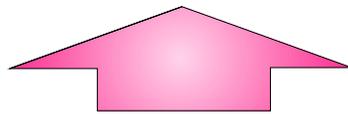
(단위 : 억원)

사업명	구 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 (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친환경 어선건조 및 안전설비 지원사업	○ 국고사업(농특)	41	180	36	31	35	41	37
	- 보 조	13	64	11	13	13	13	14
	- 융 자	28	116	25	18	22	28	23
	○ 국고사업(기금)	17	85	17	17	17	17	17
	- 보 조	-	-	-	-	-	-	-
	- 융 자	17	85	17	17	17	17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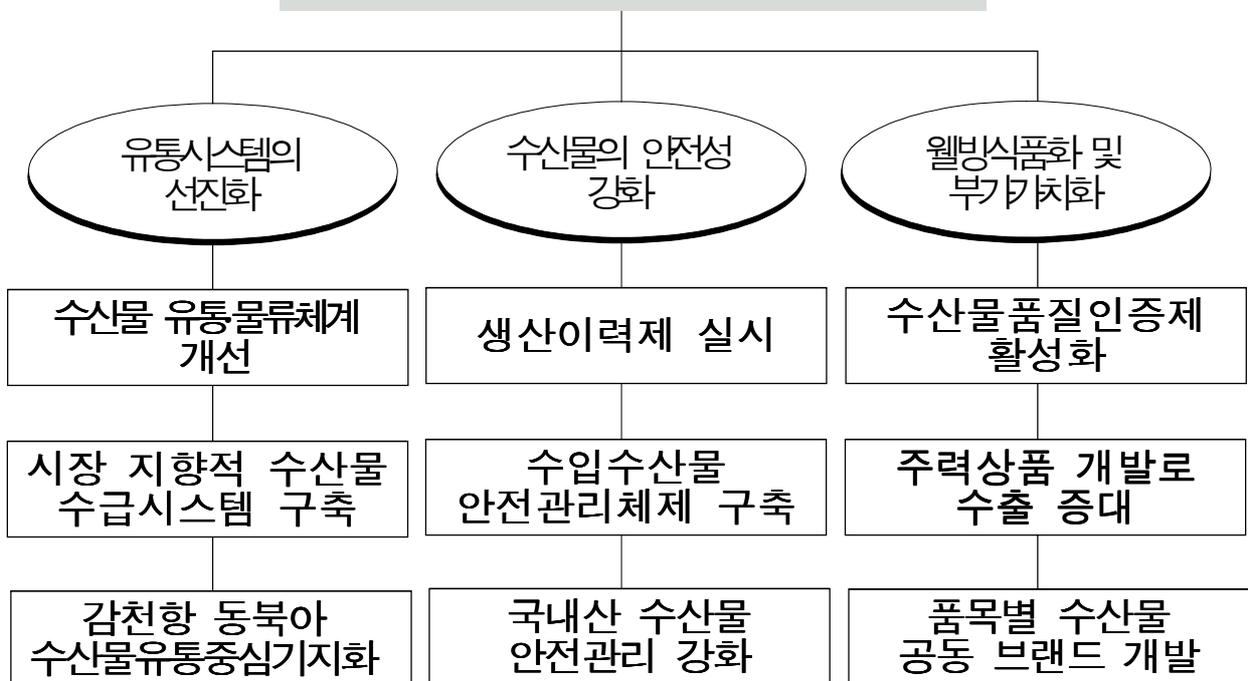
6.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보호되는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 ◆ 수산물 생산이력제 '11년까지 도입 완료
- ◆ 산지 및 소비지시장을 지역특성에 맞는 거점시장으로 육성
 - 산지위판장 : ('04)240개소 → ('09)250개소



유통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와 부가가치 극대화



□ 수산물의 웰빙식품으로서의 인식제고와 마케팅 강화

- 수산물의 홍보강화와 단계별 안전성 조사체계 구축으로 수산식품=웰빙 이미지 제고
 - 생산이력제 도입·확대 등 수산물 위생관리의 강화 및 검사장비 확충
 - 양식어장 HACCP 도입 : ('05)20개소 → ('08)160개소
-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관리
 - 전국을 약 60개 해역으로 구분하여 매년 점차적으로 위생등급 설정('05~'08)
- 수산물 품질인증제 활성화와 품목별 공동브랜드 개발·보급
- 수출상품 개발 및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
 - 세계 일류상품 추가 발굴(다시마국수, 전복 등)

□ 수산물 유통·물류체계 개선

- 산지 및 소비지 시장을 지역특성에 맞는 거점시장으로 육성
 - 산지 위판장 : ('04) 240개소 → ('09) 250개소
 - 소비지 직판장 : ('04) 33개 → ('09) 56개
 - 소비지 도매시장 : ('04) 16개 → ('09) 17개
- 수산물 물류표준화 등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 감천항을 「동북아 수산물유통중심기지」로 조성
 - 수산물도매시장과 종합가공단지 '08까지 조성 완료
 - 도매시장 내에 「국제수산물거래센터」 개설로 국제적 수산물류 중심지로 육성

□ 시장 지향적 수산물 수급시스템의 구축

- 비축사업의 단계적 축소, 유통협약제에 의한 자율출하조절 유도
- 자율적 생산량 조절 등을 위한 수산물수급동향예보제도 확대 실시
 - ('04) 김 → ('05) 김, 넙치 → (장기) 어선어업

6-1 수산물의 웰빙식품화 및 고부가가치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최근 수산식품=웰빙식품이라는 이미지 부각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시행('04. 9)
 - ※ 수산물품질인증현황(68개 품목) : 수산물(21), 특산물(4), 전통식품(43)
 - 싱싱회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위생적이고 안전한 선어 공급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양식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 문제점

- 최근 웰빙 분위기간 고조되고 있으나 수산식품=웰빙식품의 이미지 정착 미흡
 -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문제 등
- 수산식품의 품질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취약
 - 국가의 품질인증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및 신뢰감 취약
 - 관능위주의 품질인증 기준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성 요구에 부응하는데 한계

- 어업인·생산자 단체의 영세성으로 수산가공품 판로개척에 애로
 - 소량 다품목 생산에 의한 원가 및 물류비 상승으로 판로개척에 필요한 투자 및 홍보 미흡
- 싱싱회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기 시장형성의 어려움으로 선어회 소비문화 정착에 애로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수산식품=웰빙식품에 초점을 맞추어 소비촉진 홍보활동 전개
- 수산식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제도개선 및 홍보강화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 소비자 중심의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유지 및 유통단계별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 부가가치 중심의 산지가공산업 육성으로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싱싱회 소비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및 싱싱회 품질관리 강화
 - 싱싱회 가공시설지원 및 소비기반 확충
- 공동브랜드 중점 육성으로 브랜드 상품에 대한 차별성 부각 및 국제경쟁력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 수산식품이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도록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
 - 계절별, 품목별, 기능별 식품을 엄선하여 홍보활동 전개

- 수산물 품질인증제 활성화 및 친 환경 수산물 인증제 도입
 - 품질인증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강화
 - 친 환경 수산물 품질기준 및 사후관리 제도 도입
 - 신문, 인터넷, 잡지 등을 통한 홍보강화로 인증품 소비 확대
- 수산물 품질관리 인프라 구축
 - 냉동·냉장시설 지원 등 Cold Chain System을 구축하여 신선한 고품질 수산물 공급
 - 산지 가공시설 지원 확대 및 감천항 가공단지 조성 추진
 - 싱싱회 가공시설 본격 가동 및 소비촉진 홍보 강화
 - 공동 브랜드 개발·보급으로 내수 및 수출촉진 기반 마련
-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수산물 표준출하규격 재정비
 - 북어, 굴비 등 기준출하규격 10개 품목을 현실에 맞게 개선
 - 수산가공품 등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규격 설정
- 품질인증 제도개선 및 홍보 확대
 - 비 인증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한 인증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인증기준 강화 추진
 - 건제품, 해조류 등에서 냉동품, 활어, 횡감용으로 확대
 -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강화
- 친환경 수산물 등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
 - 항목 : 생산해역의 수질 및 저질기준, 양식용 자재사용 기준 등
- 산지가공시설은 기존 공장의 경영내실화에 중점을 두되, 신규 지원은 부가가치가 큰 지역특산물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
 - 지역특화 부가가치 품목에 대한 보조사업 발굴 지원
 - 지역의 전문가(대학, 연구기관) 및 생산업체와 협력하여 기술개발
- 가공업체 운영 및 유통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

- 생산자 단체와 연계하여 수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인지도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 철저한 자체 품질관리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우수업체 발굴 육성

라. 추진일정

추진과제	1단계(2005)	2단계(2006-2007)	3단계(2008년 이후)
품질인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인증 강화 기준 마련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도입 - 기준마련 용역 및 제도도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도입 - 친환경 수산물 인증 기준 마련 	
가공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가 높은 특화품목 지원 ○ 가공업체 경영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가공업체 차등 지원제 도입 ○ 고부가가치가 높은 특화품목 지원 ○ 가공업체 경영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업체 경영자금 지원(계속)
공동브랜드 개발 보급 및 브랜드 사용 생산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브랜드 시범사업 추진 ○ 표준사양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개발·보급 ○ 생산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개발 및 보급 ○ 생산자 관리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산지가공 시설	○ 국고사업(균특)	20	80	19	10	10	20	21
	- 보조	20	80	19	10	10	20	21
유통가공 운영지원	○ 가공업체운영자금	100						
	○ 산지중매인유통자금	120						
	○ 국고사업(기금)	220	1,660	240	280	340	380	420
	- 융자	220	1,660	240	280	340	380	420
수산물 가공시설	○ 산지가공시설	12						
	○ 가공시설현대화	12						
	○ 국고사업(기금)	24	223	34	45	48	48	48
	- 융자	24	223	34	45	48	48	48
가공처리시설 (수산물가공산업육성)	○ 선어회가공시설	15						
	○ 처리저장시설	50						
	○ 굴박신장시설	12						
	○ 공동폐수처리	5						
	○ 국고사업(균특)	82	352	60	50	60	82	100
	- 보조	82	352	60	50	60	82	100
수산물가공업체 경영지원 및 브랜드화	○ 국고사업(농특)	1	25	5	5	5	5	5
	- 보조	1	25	5	5	5	5	5
수산물수요개발	○ 국고사업(농특)	4	38	6	8	8	8	8

6-2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확대 및 신종 유해물질 모니터링 강화
 - 조사실적 : ('01) 2,678건 → ('02) 2,996 → ('03) 3,823
 - ※ '03년도 부적합 91건을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 조치
 - 신종유해물질(Dioxins, PCBs 등)조사대상 및 물량 확대 추진
-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산물 기인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산물 검사기준·규격 설정 추진
 - 생산자 및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 지도강화
 -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비디오(1,000개) 및 리플릿(10만부) 제작 배부
 - 대중소비 수산물(김)에 대한 중금속(납) 기준·규격 설정
-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협력 추진 및 검사검역 강화
 - 위생관리 취약국가와 위생협정 체결 확대 추진
 - ※ (현재) 중국, 베트남 → ('05 이후) 인니, 태국, 러시아 우루과이, 칠레 등
 - 수입활어 검사방법을 “선 검사 후 통관제”로 강화
-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정해역의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으며, 지정해역 확대도 추진
 - 지정해역 확대 : 6개 해역 29,095ha → 7개 해역 34,385ha
 - 지정해역 주변 어류양식장 및 선박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 패류독소 상시 감시체제 가동 및 피해대책반 운영

□ 문제점

- 수산물 안전관련 제반 여건은 급변하고 있으나, 수산물 안전관리 에 대한 투자 및 인식미흡
- 수산물 수요증가로 외국산 수산물의 수입증가 및 부적합 수산물 유통사례 발생
- 수산분야 품질위생관리업무를 통합하여 수행중에 있으나 어장부터 식탁까지의 각 단계를 통괄한 리스크관리 기능 취약
 - 비위생적 수산물 생산의 원천적 방지를 위한 생산해역관리 시스템이 취약하고, 양식수산물의 항생물질 관리체제 부실
 - 생산·출하 전 단계 및 유통단계의 위생관리 연계 미흡
- 수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고조와 WTO 출범이후 세계 각국의 위생조건 강화추세에 대응한 능동적인 대처 미흡
 -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발생(명) : ('01) 41→ ('02) 60→ ('03) 80
 - HACCP, 생산이력제 등 선진위생관리기법 적용을 위한 지원부족
 - OIE, CODEX위원회 등 국제기구와의 연대 부족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소비자 중심의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유지 및 유통단계별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 해역별위생등급 설정, HACCP 및 수산물생산이력제 실시
- 주요 수입국 및 위생취약 국가와 위생약정 체결로 불량수입수산물 차단
 -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위생약정국 확대 및 성실이행 추진
- 비브리오패혈증 등 하절기 식중독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수산식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제도개선 및 홍보강화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 부가가치 중심의 산지 가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 세부추진계획

-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수산물의 신뢰성 확보
 - 수산물 주요 생산해역(약 60개)을 안전, 생산제한 또는 금지해역으로 설정하여 어장에서부터 비위생적인 수산물의 생산 방지('05~'08)
 - 생산에서 저장까지 단계별 종합적인 안전성조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유도
- 예방적 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의 점증적 적용 확대 등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 HACCP조기 정착을 위한 수출수산물 가공업체 지원 추진
 - 생산·출하 전단계 수산물에 대한 HACCP 이행업체 등록관리
 - 활넙치, 활뱀장어 생산업체 시범사업 실시('05~'09)
- 수산물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이력제 도입 확대
 - 수산물 생산이력제 시범사업 실시('05년부터 단계적 확산)
 - 양식굴, 양식넙치, 김 시범사업 실시('05)
- 수산생물 방역체제 구축
 - OIE 지정질병 등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
 - 과학원 및 지방청(12개)에 수산질병 정밀 진단실 설치(620백만원)
- 생산, 출하, 저장단계 수산물 및 수입수산물 안전성조사 강화
 - 안전성 조사 횟수 확대 : ('04년) 3,500회 → ('05년) 4,500회
 - 신중유해물질 조사 확대 및 조사기관 일원화
- 수산물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 강화
 - 수산물 주요수출국과의 MOU 성실 이행 및 FTA협상에 적극 대응
 - 수입수산물 사전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태국, 러시아, 인니 등 주요 수입국과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 한·중 활어위생약정 관련, 양식장 등록관리 및 현지점검

라. 추진일정

추진과제	1단계(2005)	2단계(2006-2007)	3단계(2008년 이후)
수산물안전관리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역별 위생등급설정 (15개 해역) ◦HACCP도입(2품종) ◦OIE수생질병관리 - 정밀진단실 설치(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역별 위생등급설정 확대 추진 ◦HACCP 확대 ◦OIE수생질병관리 - 정밀진단실 설치(2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해역, 품목확대 ◦자율적 관리 추진 ◦OIE수생질병관리 - 정밀진단실 설치(4개소)
국가간 위생관리 협정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베트남과 체결한 수산물위생약정 이행 철저 ◦기타 한·인니, 한·러 및 한·태국과 위생약정 체결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인니, 한·러 및 한·태국 위생약정 및 한·중 활어위생약정 이행 철저 ◦기타 수입국 및 위생취약국가와도 위생약정 추가체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과 체결한 수산물 위생약정 철저 이행
생산이력제 (수산물이력추적 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 실시(3품목) - 양식 굴, 넙치, 김 ◦수산물생산이력제 가이드라인 책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 확대 추진 - 3품종→40품종 ◦사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대 적용 - 전품목으로 확대 - 수입수산물 적용 ◦자율관리체제 마련 * 수입수산물 적용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재원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수산물 안전관리 체제 구축	○ 해역별 위생등급설정 ○ OIE 질병관리 ○ HACCP							
	○ 국고사업(농특) - 보조	- -	79 79	15 15	16 16	17 17	15 15	16 16
생산이력제 (수산물이력추적 시스템) 도입	○ 국고사업(농특) - 보조	- -	14 14	4 4	10 10	- -	- -	- -
	○ 국고사업(농특) - 보조	2 2	11 11	2 2	2 2	2 2	2 2	3 3
국가간 위생관리 협정 이행	○ 국고사업(농특) - 보조	2 2	11 11	2 2	2 2	2 2	2 2	3 3
	○ 국고사업(일반) - 보조	2 2	11 11	2 2	2 2	2 2	2 2	3 3
수산물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 국고사업(일반)	-	3	1	1	1	-	-
수산물 생산해역위생등급 유지관리	○ 국고사업(농특)	-	41	-	8	10	23	-
활어폐류용 해수 공급시설 지원	○ 국고사업(농특)	-	60	-	-	20	40	-
항생(위해)물질 관리체계 구축	○ 국고사업(농특)	-	24	-	8	8	8	-

6-3 감천항을 동북아 수산물유통중심기지로 개발

가. 현황 및 문제점

□ 필요성

- 세계수산물 소비 1위인 일본과 수산물 생산·수출 1위인 중국 외에 러시아(8위), 우리나라(12위) 등 수산물 생산대국으로 구성된 동북아 지역은 세계 수산물 교역의 중심지로 급부상
 - ※ 한·러·일·중 : 세계 총어획량의 42%, 수입의 47%
- 수산물 유통가공단지 조성과 국제 수산물거래소 설치 등 수산물 교역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경쟁력 우위확보로 부산 감천항을 동북아 수산물 Hub 시장으로 구축 필요

□ 현 황

- '99. 12 종합보세구역 지정(7만평, 관세법)
- 원양어업전용부두 축조('91. 11 ~ '01. 4)
 - 9척 동시 접안(1천톤 4척, 5천톤 4척, 10천톤 1척)
 - 배후단지: 51,358평(공공용18,566평, 수산물가공 단지 32,792평)
-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조성 추진중('95 ~ '08)
 - 공동이용시설('95 ~ '97) : 수질정화시설, 업무복지시설 각 1동
 - 냉동·냉장시설('95 ~ '08) : 2 ~ 8만톤급, 12개소 46만톤
- 공영도매시장 건설추진중 ('95 ~ '06, 1,995억원)
 - '04. 12 현재 도매시장동, 냉동창고동 공사 등 공정진도를 55%
-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예비타당성조사('02. 8)

□ 문제점

- 현재 운용중인 종합보세구역과 유통가공단지는 내수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입주사 등은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국제화에 부정적임
-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의 사업비 투입 부진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 지연

나.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

- 도매시장과 종합가공단지가 완공되면 감천항의 지리경제적 이점으로 신규고용 창출과 관련 산업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등이 국제수산물교역센터가 활성화될 경우 환적화물, 현물/선도거래 등으로 명실공히 감천항이 동북아 국제수산물 거래 중심지화

다. 세부추진계획

□ 인프라 구축 완료

- '08. 12 : 수산물종합 가공단지 조성 완료
 - 2008년까지 냉동·냉장시설(2~8만톤급) 12개소 시설 완료
- '06. 12 : 공영 수산물도매시장 준공 및 국제수산물거래센터 개설
 - '06년 말 준공을 위해 사업예산 확보에 최선

□ 동북아 수산물 유통 중심기지화를 위한 전략 수립

- 사업의 가속화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동북아물류중심추진기획단」에 별도의 전담반 구성
 - 우리 부 전담직원 1명(5급) 보강 및 부산시 직원(1명) 파견하여 기존 인력과 공동 추진
 - 우리 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부산시 관계자를 중심으로 '05. 1/4분기중 T/F 구성 운영
 - 감천항의 물류 경쟁력, 국제신뢰도 제고방안
 -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전략 수립 등
- 동북아 수산물 유통 중심기지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 산·학·연과 정부, 자치단체 연계
- 관련 부처, 부산시, 학계, 업계 등으로 자문단 별도 구성

라. 투자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수산물 종합 가공단지조성 (감천항)	○ 국고사업(농특)	229	15	4	4	4	3	-
	- 보조, 용자	229	15	4	4	4	3	-
	○ 국고사업(기금)	-	641	192	192	150	107	-
	- 용자	-	641	192	192	150	107	-
수산물도매시장 건립(감천항)	○ 국고사업(균특)	60	644	140	281	223	-	-
	- 보조	60	644	140	281	223	-	-
	○ 기금(용자)	-	229	78	107	44	-	-
윈스톱 수출물 수출단지 조성	○ 국고사업(균특)	-	558	-	-	23	327	208
	- 보조	-	558	-	-	23	327	208

※ 수산물도매시장계획은 '06 예산 확보가 안 될 경우 대비계획임.

6-4 수산물 유통·물류체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현재 수산물의 유통체계는 산지 위판장 및 소비지 도매시장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음
- 연근해 수산물 생산의 급격한 감소 및 소비지 시장의 구매형태 변화에 따라 지역별 수산물 공급 및 수급구조가 빠르게 변화
- 최근에는 민간의 대형 할인점 및 바다마트(수협) 등에서도 수산물 유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직매장이나 홈쇼핑 또는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실적도 급증 추세임

□ 문제점

- 낙도 또는 벽지에 어항시설 준공 등으로 새로운 위판장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족한 위판장시설 확충 필요
- 기존 소비지 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및 위생문제 내재 및 소매시장의 혼재로 인한 도매시장 기능 저하
- 수산물직매장의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주로 산지나 산지 인근의 지역에 위치하여 관광 등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꾸준한 수요 진작에 한계
- 현재까지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기반이 부족한 형편이나,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한 판로의 다양화가 시급함

나. 앞으로의 전망

- 신규 어항의 개발에 따라 위판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쾌적한 환경을 갖춘 시장에서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구매욕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 소비층 밀집지역인 대도시나 수도권에 수산물 직매장을 많이 설치·운영함에 따라 수산물 수요기반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됨
- 젊은 주부층들의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수산물 구매 행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다. 세부 추진 계획

- 매년 2~3개의 수산물 위판장을 지속적으로 건립
- 수산물직매장 사업
 - 산지 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소비지에도 수산물 직매장을 신설하여 수산물 수요확대 추진
 - '03(25개소)→'09까지 24개소 추가지원(소비지 6, 산지 18개소)
- 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여 원활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가격 형성으로 공정거래 유도
 - 신규 건설(인천), 기존 시설 현대화(가락, 노량진)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03년부터 추진중인 인터넷 수산시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확대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3)	2단계 (2004-2008)	3단계 (2009년 이후)
수산물 직매장	3개소(산지 3)지원 - 7억원	매년 산지 3개소, 소비지 1개소 지원	
전자상거래	인터넷 수산시장 (100개소)개설(3억원)	`05년까지 400개소를 개설(5억원)	
선어회 유통망 구축	-	`08년까지 100개소(250억원)	-
수산물 위판장	3개소 건립	매년 2-3개 건립 추진	기 건립된 위판장의 시설 유지 보수 추진
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2006년까지 부산 감천항 도매시장 건설 지원	○ 3개소 건립 추진 - 신규 건설(인천, `07~`10) - 기존 시설 현대화 · 가락(`06~`15), 노량진(`06~`10)	
자갈치 시장 현대화	2006년까지 자갈치시장 현대화 건설 지원		
수산물물류 표준화	매년 도매시장의 물류표준화를 위하여 어상자, 지게차, 팔레트 등 지원		
수산물 원산지 관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여비 및 홍보비 등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재원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수산물 직매장	○수산물직매장							
	○황토갯벌뽕장어판매							
	○ 국고사업(균특) - 보조 - 융자	22 19 3	99 99 -	19 19	19 19	19 19	19 19	23 23
수산물 위판장	○ 국고사업(균특)	10	23	4	5	5	5	4
	- 보조	5	23	4	5	5	5	4
	- 융자	5		-	-	-	-	-
선어회유통망 구축(신규)	○ 국고사업	(-)	(250)	(-)	(50)	(100)	(100)	
	- 보조	(-)	(250)	(-)	(50)	(100)	(100)	
수산물 물류표준화	○ 국고사업(농특)	19	104	28	19	19	19	19
	- 보조	19	104	28	19	19	19	19
수산물유통 시설 보완	○ 국고사업(지방)	-	(39)	-	-	-	-	(39)
	- 보조	-	(39)	-	-	-	-	(39)
수산물유통정보 시스템 구축	○ 국고사업(농특)	2	12	4	2	2	2	2
	- 보조	2	12	4	2	2	2	2
자갈치시장 현대화	○ 국고사업(균특)	30	48	30	18			-
	- 보조	30	48	30	18			-
수산물원산지 표시	○ 국고사업(농특)	3	28	3	5	6	7	7
	- 보조	3	28	3	5	6	7	7

6-5 시장 지향적 수산물 수급시스템 구축

가. 정부 비축사업 현황 및 문제점

□ 대외적 여건의 변화

- WTO/DDA 협상 및 FTA 추진 등 수산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산업동향 등에 대하여 사전 파악 필요
 - 현재의 각종 통계 및 동향자료는 어종별로 유용한 정보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WTO에서 규정한 보조금 사업에 정부비축은 부정적 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 내재

□ 정부 비축은 다품목 소량수매로 실질적 수급 및 가격안정기능 미흡

- 품목별 정부수매량이 전체 생산량의 0.3 ~ 3.8% 내외에 불과
 - 김(1.3%), 오징어(0.7), 명태(3.8), 고등어(2.0), 갈치(0.3)
- 매년 정부 비축품 판매손실액 과다 발생
 - 누적 결손 : '79년 이후 '03년까지 1,477억원 ('03년 79억원)
 - ※ '04년까지 농안기금에서, '05년 부터는 수발기금에서 결손 처리

나. 앞으로의 전망

- 시장에 의한 수급중심의 수산정책 전환
 - 어업인과 수산관계자들의 능동적 대응자세 필요
- 생산자와 유통인의 자율적인 생산조정과 수급조절 필요
 - 수산물 수급동향 예보를 통한 유용한 정보 제공

다. 세부 추진 계획

□ 수산물 수급동향 예보 실시

- 국제경쟁력이 치열하고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 우선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
 - ('05) 김, 넙치, 조피볼락, 전복, 굴 → ('11) 새우, 농어 등 20품목으로 확대
- 수산인과 정책수립자 등 수혜자 계층 전체의 정보 유용성을 증시하여 품목별 수급동향을 정기적으로 예보('05. 7월부터 격월 제공)
 - 생산량, 출하예정물량, 산지·소비지가격, 해외동향 등

□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

- 정부 구매 품목 및 물량을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어업인의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정부비축사업 운영
 - 구매품목 조정 : '05) 5개 품목 → '06) 4개 품목
 - 마른오징어('03), 간미역·냉동조기('04), 냉동갈치('06) 제외

라.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재원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정부출하 조절사업 (관측, 유통협약 등)	○국고사업(기금)	5	147	27	30	30	30	30
	- 보조	5	147	27	30	30	30	30
수산물규격출하사업	○국고사업(기금)	144	938	180	180	180	218	180
도매시장출하촉진사업	○국고사업(기금)	40	526	86	86	95	120	139
원료구매지원 (수산물유통자금)	○국고사업(기금)	250	1,011	135	196	220	230	230

6-6 주력상품 개발을 통한 수출상품의 부가가치 증대(수산물수출 촉진활동)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수산물 수출은 연근해 및 원양수산물의 생산부진에 따른 수출용 원자재 확보난으로 어려움이 지속
 - 연근해 생산량 : ('90) 2,349 → ('03) 1,922천톤(△18%)
 - 원양 생산량 : ('90) 925 → ('03) 544천톤(△41%)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고급어종 선호 및 수산물 소비증가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 역조현상은 심화되고 있음
 - 수 출 : ('90) 1,513 → ('04) 1,279백만\$ (△15%)
 - 수 입 : ('90) 368 → ('04) 2,261백만\$ (614%)
 - 무역수지 : ('90) 1,145 → ('04) △982백만\$ (△186%)
- 수산물 수출은 주력 수출시장인 일본시장의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 수산물의 수출 점유율이 감소('03년 66% → '04년 65%)되고, 중국의 저가 수산물의 수출물량 공세로 어려운 입장
 - 대일수출 : ('01) 925 → ('03) 835백만\$(10%, 90백만\$ 감소)
 - 중국 수산물의 일본시장 점유율 : ('01) 16.4% → ('03) 18.2%
 - 우리 수산물의 일본시장 점유율 : ('01) 6.8% → ('03) 5.6%

□ 문제점

- 수산물 가공생산업체의 영세화로 독자적 해외 수출마케팅 곤란
- 수산물 수출은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03년, 65%)하고 있어 중남미, 유럽 등 시장다변화 정책 필요
- 수산물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수출수요개발이 미흡하며, 거대시장인 일본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 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수산물 수출대책이 요구
- 고품질의 가공원료 및 생산량이 없어 수출물량 확보가 곤란함
 - 김, 미역, 피조개 등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09년도 수산물생산은 연근해 수산물 및 양식수산물의 생산증가로 전체적으로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
- 국내수산물의 생산부진 및 소비증가 등에 따라 수산물의 수입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여, 이후에도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수산물 수출 주력상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추진방향
 - 수출환경을 개선하고 시장별·상품별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등 수출지원 총력체제 구축
 - 적극적인 통상외교 활동 강화를 통하여 수출증대 도모
 - WTO/DDA협상 및 각국과의 FTA협정에 대응한 수출대책 수립 시행
- 수출확대 가능 품목(김, 미역)에 대한 우량종묘 개발 등 양식기술 및 시설지원강화로 고품질 원료생산 증대
-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성별 전략품목 및 수출확대 방안 마련
 - '05 ~ '06 수산정책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연구계획 수립

다. 세부 추진계획

-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
 - 국제식품박람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지원
- 우리수산물의 우수성 광고 등 홍보활동 강화
 - 국내 및 외국에서 홍보활동 강화로 우리 수산물 인지도 제고
 - 수출품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 및 종합 상품 카탈로그 제작 배부
- 수출주력상품에 대한 지원 강화로 수출상품 부가가치 증대
 - 대일수출 김의 품질향상을 위한 김 냉동망 보급시설 등 지원
 - 고품질 가공원료 생산을 위한 수출양식단지조성 지원(김, 미역, 피조개)
- 중국, 일본, EU, 미국 등 개별 국가별·지역별·연령별 수산물 선호도 조사를 통한 수출 수요 개발
 - 국가별·지역별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를 연차적으로 조사
 - 국가별·지역별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에 따른 상품 개발
- 해외시장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수출전략상품 개발 지원
 - 수산물 수출주력업체 및 세계일류상품(산자부 주관) 추가 발굴 및 지원
 - 수산물 수출주력업체 : ('04) 95개사 → (확대) 100개사
 - 세계일류상품('04년) 5품목 → ('09) 10품목
 - 수출원료 구매자금 우선지원 및 수출보험료 우대지원 등
 - 한류열풍을 활용하여 일본, 중국 등에 수출할 브랜드와 아이디어 상품 개발

□ 수출진흥 대책회의 등을 통한 수출애로 발굴 및 해소 노력

- 수산물 수출진흥대책회의 및 간담회 개최
- 인터넷홈페이지 “수산물 수출상담실” 적극 운영
 - 수출상대국의 현지 시장동향 등 교역정보 제공 확대

□ 비관세 무역장벽인 수입쿼터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 강화

- 한·일 수산물 교역 실무회의 : 매년 2회(상, 하반기)
- 일본, 중국 및 EU 등 수출용 가공공장 등록 확대 추진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2004까지)	2단계(2005-2008)	3단계(2009 이후)
수출촉진기반조성 및 수출상품 부가가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수출 주력업체 및 세계일류상품 (산자부) 선정 ◦한·일 무역실무회의 연 2회 개최 ◦김, 굴 등 주력품목에 대한 지원 (김 이물질 선별기 및 실험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 수출주력업체 및 세계일류상품 지속 개발 및 지원 ◦한·일무역실무회의 지속 개최 ◦김 이물질 선별기 지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DDA협상 및 각국과의 FTA협정 결과에 대응한 수출 지원체제 구축
국별 수출 수요조사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별 지역별 수산물 소비형태 조사연구 및 수출수요개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별 지역별 수산물 소비형태 조사연구 및 수출수요개발 연구
해외시장 다변화 및 우수수산물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부산국제수산무역 엑스포 개최 지원 ◦우수 수산물에 대한 와이드 칼라 광고 실시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및 카탈로그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박람회 및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지속 ◦우수수산물에 대한 홍보 지속 	-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재원별	`04	연차별 투융자 계획					
			소계	`05	`06	`07	`08	`09
수산물 수출촉진 (박람회, 해외시장)	○ 국고사업(농특)	15	89	17	17	18	18	19
	- 보조	15	89	17	17	18	18	19
수산물 수요조사 연구 (신규)	○ 국고사업(농특)	-	(40)	(-)	(10)	(10)	(10)	(10)
	- 보조	-	(40)	(-)	(10)	(10)	(10)	(10)
	○ 국고사업(기금)	-	(20)	(-)	(5)	(5)	(5)	(5)
	- 융자	-	(20)	(-)	(5)	(5)	(5)	(5)
수출양식 단지조성	○ 국고사업(농특)	-	(90)	(10)	(20)	(20)	(20)	(20)
	- 보조	-	(90)	(10)	(20)	(20)	(20)	(20)
수출주력 품목 개발	○ 국고사업(농특)	3	10	2	2	2	2	2

6-7 수산물 검사 기능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수입수산물 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본원 및 13개 지원, 정원 : 202명)에서 담당, 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수입검사 업무량이 급증
('91) ('03)
 - 수입검사건수 : 1,065건 → 80,093건 <75배 증가>
115천톤 → 930천톤 < 8배 증가>
- 이식용수산물 질병검역 및 유전자변형 수산물 검정업무 등 신규 검역 소요 증가
 - 이식용수산물 검역업무 개시('01. 1. 1)
 - 수산자원보호령 개정('00. 12. 28)에 따른 낚시터방류용 어류질병검사 실시('01. 6. 28 시행)
 - 유전자변형 수산물 검정 실시('04. 1. 1)
- 내분비계장애물질(다이옥신, PCBs, TBT 등) 및 항생물질 검사 강화 필요성 확대

□ 문 제 점

-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외 검사기준·규격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각종 위해물질(다이옥신, 유전자변형, 생물체 등)에 대한 조사·연구 전담조직이 없어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애로

- 새로운 항만이 건설되고 검역기관(CIQ)이 설치됨에 따라 신항만 등으로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인력부족에 따른 검사 지연 초래
- 수산물 안전성확보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검사할 수 있는 첨단장비는 부족한 실정임
 - 현 보유장비 : 94종 951대 ('04. 9월말 기준소요대비 : 70% 보유)
 - 검사인력 축소 : ('91) 218명 → ('03) 202명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WTO/FTA 영향으로 수출입 검사물량 계속 증가 전망

《 연도별 예상 검사건수 》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계	110,800	126,800	145,100	159,600	175,600	193,100	212,400
수 출	11,700	12,900	14,200	15,600	17,200	18,900	20,800
수 입	99,100	113,900	130,900	144,000	158,400	174,200	191,600

- 이에 따라 연차별 검사인력·조직 및 장비확보 추진

다. 세부 추진계획

- 검역기관(CIQ)이 있는 항만이나 지역에 수입수산물 검사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지원 신설
 - 동해항에 동해지원·부산 감천항에 감천지원 신설
- 남북경협에 대비,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따른 통관역에 지원 신설
 - 파주 도라산·동해 저진 지원 신설

- 수도권으로 공급되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천지원의 기능 강화
 - 지원장 직급조정(5급 → 4급), 검사과, 관리과 신설
 - 국내·외 검사기준 등 새로운 기준·규격과 새로운 위해물질 (다이옥신, 유전자변형, 생물체 등) 조사·연구 전담조직 신설
 - 본원에 조사분석과 신설
 - 항생물질, 중금속 검사 등을 위한 장비의 지속적 보강
 -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어분중 동물성 단백질 혼입여부 판별을 위한 유전자 자동서열 분석기 등 신규 도입('05)
 - 내분비계 장애물질 검사를 위한 고분해능질량분석기 등 첨단장비 교체('09)
- ※ 현 94종 951대 → (2010년까지) 97종 1,571대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2005)	2단계(2006)	3단계(2007)	4단계(2008)	5단계(2009)	6단계(2010)
○조직확충 (본원, 13개지원)						
- 지원신설(4개지원)	동해지원	도라산지원	저진지원	부산감천지원		
- 조직확대				인천지원기능강화	조사분석과	
○인력증원 (현 202명→322명)	29명	24명	22명	23명	22명	
○장비확충 (현 94종 951대 → 97종 1,571대)	37종 83대 (21억원)	45종 99대 (20억원)	45종 114대 (19억원)	47종 110대 (19억원)	46종 103대 (21억원)	46종 111대 (17억원)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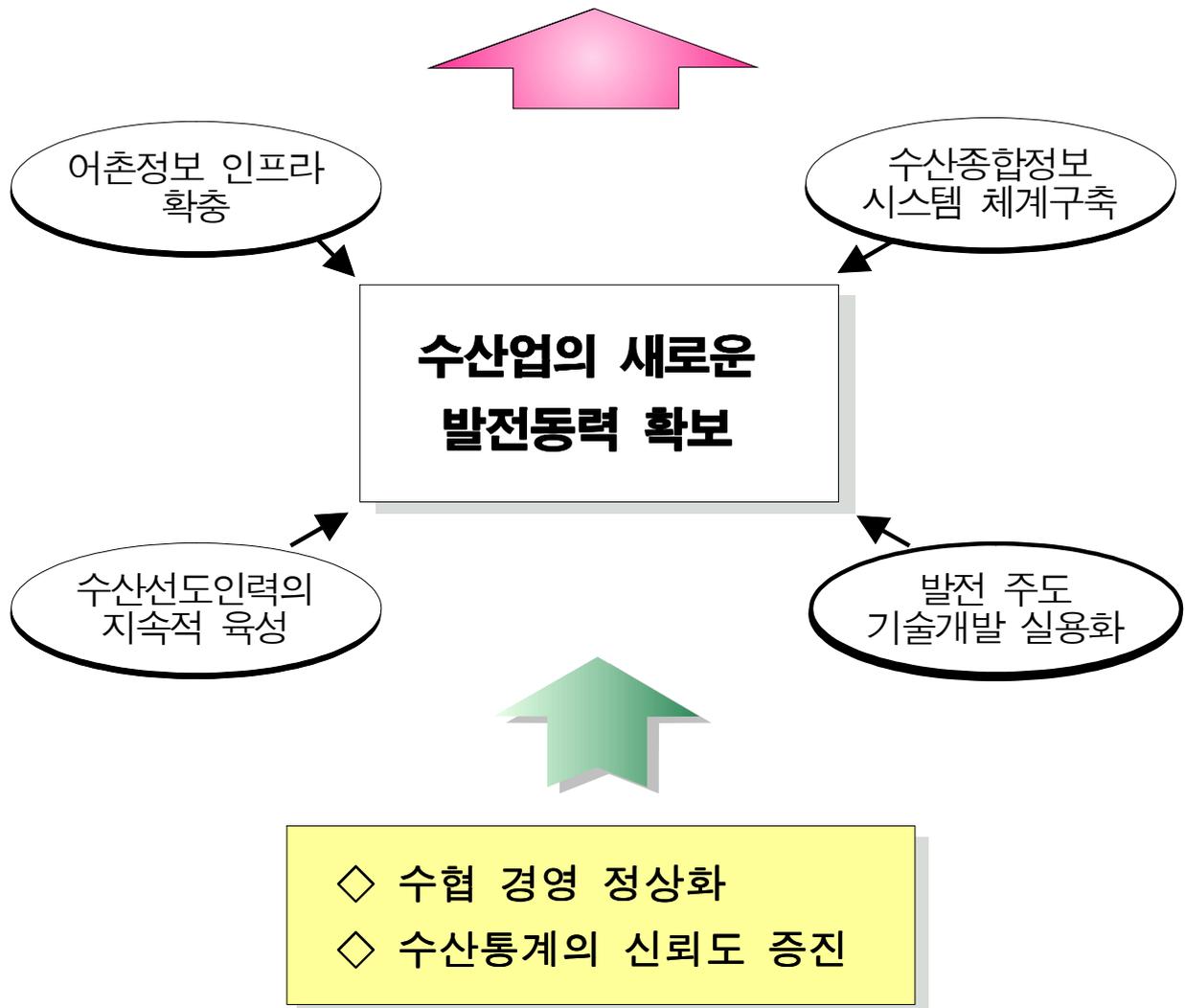
사업명	재원별	`04	연차별 투융자 계획					
			소계	`05	`06	`07	`08	`09
검사시설 및 장비 확충	○ 국고사업(일반) - 보조	(13) (13)	(100) (100)	(21) (21)	(20) (20)	(19) (19)	(19) (19)	(21) (21)

※ 비 12.4조원 사업임.

7.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수산업과 어촌의 새로운 활력 증진

- ◆ 어업인후계자 육성 : ('04)16→('09)18→('11)20천명
- ◆ 양식 생산비 50% 이상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08)
- ◆ 수협 경영 정상화 2010년까지 완료



□ 수산선도인력의 지속적 육성

- 어업인후계자 확대 및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 어업인후계자 육성 : ('04) 16,000명→('09) 18,000명→('11) 20,000명
 - 교육훈련 : 신규·보수교육→경영자 교육·해외연수 등
- 어업인후계자 사업기반 조성자금 지원 확대
 - 1인당 지원 : 20~50백만원 → 50~100백만원
- 어업인 자녀중 수산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 학자금 지원

□ 수산업협동조합의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

- 중앙회에 대해선 당초 예정대로 2017년부터 공적자금 상환 가능토록 조치
-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및 합병 등 행정조치 지속 추진
(2010까지 경영정상화 완료)

□ 수산연구 개발투자 확충과 개발기술의 실용화

- 양식생산비를 50% 이상 절감하기 위하여 사료, 품종개량 등 4대 핵심요소에 대한 기술개발 강화
- 옥돔의 인공종묘 생산기술 등 어업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기술 연구개발 강화

□ 수산종합정보화체계 구축과 어촌정보 인프라 확충

- 수산관련 기관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수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어촌과 도시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실시
 - 어촌정보 사랑방 : ('04) 393개소 → ('09) 600개소(850대)
- 수산통계의 신뢰도 증진을 위한 조사방법 개선 및 신규통계 개발

7-1 수산업 선도인력의 지속적 육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어촌에 정착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우수한 수산인력의 양성과 수산업을 합리적으로 자영할 수 있는 어업후계인력의 육성 및 우수한 수산전문인력의 어촌정착 유도
- 지역별 현장애로기술 개발과 최정예 고급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위하여 수산계대학에 시설·장비지원으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수산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체제 구축

□ 문 제 점

- 수산계 고교 학생들에게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촌정착을 유도하였으나 어촌정착률 미흡
 - 수고학생의 어촌정착률 : ('90)56% → ('00)30% → ('01)25%
- 수산계 대학의 시설·장비지원 미흡 : ('95 ~ '02) : 100억원
- 어업인후계자 사업기반 조성자금 지원규모 미흡 : 20~50백만원/1인당
- 어업인후계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단순 : 신규 및 보수교육 1회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어촌에 정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수산전문인력 양성과 수산인력의 저변 확충을 위한 효율적 인력육성체제 구축 및 지역개발 중심학교로 육성

- 수산계 대학 연구기반 조성과 인재양성을 통한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첨단기술 개발
- 어업인후계자 사업기반 조성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조건 개선 등으로 어촌사회 선도경영체로 육성
-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로 경쟁력 있는 어업인 육성

다. 세부 추진계획

- 수산계대학 수산계학과의 등록금 면제방안 강구
 - 국립학교설치령 제16조(학비보조) 규정개정 추진
-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 지원('03 ~ '07)
 - 강릉대, 조선대, 군산대 등 지역별 해역특성에 맞는 연구센터 건립 추진
- 어업인후계자 사업기반 조성자금 확대 및 지원조건 개선
 - 사업기반 조성자금(1인) : '04)20 ~ 50백만원→'11)50 ~ 100백만원
 - 지원조건 : 연 4%, 5년 거치 10년 상환→연 3%, 5년 거치 15년 상환
- 어업인후계자 확대 및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어업인후계자 육성 : '04)16,000명→'09)18,000명→'11)20,000명
 - 신규 및 보수교육 1회 → 경영자 교육 및 해외연수 등
- 선도어업경영체 및 수산지식인 지원 확대
 - 매년 각 10명씩 증원 및 지원 확대(1억원 ~ 3억원)

라.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어업인 후계자육성	○ 국고사업(기금)	143	735	143	143	143	153	153
	- 용자	143	735	143	143	143	153	153
어업인육성 (교육)	○ 국고사업	4	18	4	3	4	3	4
	- 보조	4	18	4	3	4	3	4
해양생물연구 센터설립	○ 국고사업(균특)	-	70	35	35	-	-	-
	- 보조	-	70	35	35	-	-	-

7-2 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과도한 자본잠식에 따른 경영악화로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등 조합의 정상적 기능수행 곤란
- 일선수협 경영진단('02. 11 ~ '03. 4) 결과를 토대로 경영개선자금 지원 및 부실조합은 통폐합 등 구조조정 강력 추진 필요
 - 경영진단 결과 수협구조개선법에 의한 부실조합에 대하여는 자금지원 및 MOU 체결을 통해 경영정상화 추진
 - 부실 조합은 합병명령 조치, 합병 조치유예, 회생조합 자금지원
- 일선수협의 부실 사전예방 및 안정적 경영을 위한 수협법 개정('04. 12)

□ 문제점

- 합병명령 조치 유예조합의 1년후 재평가 결과에 따른 합병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
- 수협의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에 필요한 자체자금 조달의 부담 가중
- 부실조합의 합병명령 등 구조조정에 대한 해당 수협 및 조합원들의 조직적 반발 등
- 해양환경오염 악화, 적조 등 재해빈발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로 추가 부실 발생 우려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중앙회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대로 2017년부터 공적자금 상환 가능토록 조치
- 자금지원과 자체 자구노력의 추진으로 2010년까지 목표 순자본비율 0% 달성 등 경영정상화로 수협의 정상기능 회복
- 자금지원 및 합병명령 등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 수협법 및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 추진 등 제도 개선

다. 세부추진 계획

- 자금지원 조합의 MOU이행상황에 대한 분기별 평가 및 점검 실시
 - MOU 불이행시 제재 및 추가 경영개선방안 마련 후 추가 조치
- 합병명령 조치유예 조합은 '04년말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재평가하여 합병 등 후속 조치
 - 유예조건 불이행 및 경영악화 조합은 통폐합 조치
 - 회생가능 조합은 자금지원으로 경영정상화 추진
- 수협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수협법시행령, 시행규칙, 수협정관(예) 등
- 일선수협의 경영기반 확립시까지 부실조합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추진
 - 자금지원 조합의 MOU이행상황 점검과 병행한 부실책임조사 실시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2005)	2단계(2006-2007)	3단계(2008년 이후)
수협경영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지원 조합 분기별 MOU 이행상황 점검 ◦부실수협의 부실책임 조사 실시 ◦수협법 및 수협구조개선법에 의한 전조합의 경영상태 평가 ◦합병유예 조합의 경영상태 재평가 및 조치 ◦부실수협 합병 등 구조조정 지속 추진 ◦수협법개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지원 조합 분기별 MOU 이행상황 점검 및 적기 시정 조치 ◦부실수협의 부실책임조사 실시 ◦수협법 및 수협구조개선법에 의한 전 조합의 경영상태 평가 ◦합병유예 조합의 경영상태 재평가 및 조치 ◦부실수협 합병 등 구조조정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조합의 합병 등 구조조정 추진 ◦자금지원조합의 MOU 이행상황 분기별 점검 ◦경영정상화 확립시까지 부실책임조사 실시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 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수협유통경영 개선자금	○ 국고사업(일반) - 보조	203	608	203	203	202	-	-
수협지도부문 경영개선지원	○ 국고사업(농특) - 보조	30	173	30	30	30	30	53
수협경영개선 자금	○ 국고사업(농특) - 보조	576	2,306	630	670	665	132	209
경영개선이행 약정관리	○ 국고사업(농특) - 보조	6	36	7	8	7	7	7

7-3 수산시험연구의 실용화 기술개발 및 보급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신해양 질서 정착, WTO-DDA 체제 및 해양오염, 자원남획 등으로 인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로 국내수산업 여건 악화
 - 연근해 총 어획량 : 137만톤('80) → 109만톤('03)
- 수산시험연구 결과의 수산정책지원, 기술이전 및 실용화 기술개발 추진('98 ~ '03, 국립수산과학원)
 - 시책자료 제공(284건), 특허등록(47건)
- TAC 대상어종 적정어획수준 산정 및 연안어업자원 관리
- 다랑어 등 원양어장 개발 및 관리형 어업기술 개발
- 해양환경 보전 및 광역 해양변동 탐사
 - 연안생태계의 환경관리기술 구축, 해양환경정보시스템 및 KODC 운영
- 수산물의 위생관리기술 개발
 - 수산식품 위생안전 위해평가, 제어기술개발 및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관리
- 생명공학에 의한 수산생물자원 개발 및 종 보존

□ 문제점

- 과도한 어획과 연안수역의 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어업인의 자율관리 의식 미흡

- 기르는 어업의 생산성 저하 및 어장환경 악화에 따른 양식비용 증가
- 첨단분야 및 시급 현안과제 수행시 예산부족으로 수산 신기술 개발을 통한 국민육구 해소 미흡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연차별 적정수준의 예산확보에 의한 첨단기술개발 및 어업인이 어업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 연구개발사업 추진
- 연안자원 회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자원회복계획 수립 추진
- 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국가통합형 해양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국내외 연구동향 파악 및 진단을 통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다. 세부추진계획

- 대형 기획연구과제 추진 : '05 ~ '07
 - 해파리 대량 발생원인과 피해대책 연구
 - 한국형 전천후 외해가두리 산업화 기술 개발
 - 동해 왕돌초 수역의 종합적 이용방안 연구
-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중점 연구과제 추진 : '04 ~
 - 양식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4대 핵심기술 개발
 - ※ 양식생산비를 '08까지 50% 이상 절감하기 위한 사료, 백신, 품종개량, 시설자동화 등 4대 핵심요소기술개발 강화
 - 수산자원회복계획 추진
 -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수산식품 위생관리 체제 구축
 - 국가통합 해양환경 정보망 구축
 - 해양생명공학산업을 통한 해양생물 고부가가치 창출

라.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수산연구 개발사업	○ 첨단양식기술개발	22	149	33	26	28	30	32
	○ 해양환경관리체제구축	38	184	34	37	37	37	39
	○ 수산자원평가 관리	18	95	23	18	18	18	18
	○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 및 산업화	18	107	21	20	21	22	23
	○ 수산공학기술산업화	7	36	8	7	7	7	7
	○ 국고사업(일반) - 보조	103 103	615 615	124 124	111 111	114 114	117 117	149 149
수산기술 연구시설	○ 국고사업(일반) - 보조	52	401	62	81	82	88	88

7-4 수산업 발전을 주도할 기술개발 실용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94년부터 어업현장의 애로기술해결을 위한 수산기술개발사업 추진

계('94~'05)	'94~'04 실적	'05년 계획
562억원	505	57

- '94~'04년까지 331과제 선정 지원
 - 첨단기술개발 115과제, 현장애로기술개발 216과제

<주요 산업화 과제>

-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에서 비만해소제 개발
- 계껍질로부터 키토산 올리고당 생산기술 개발
- 장어 통발어선 활어창 냉각시스템 개발
- 제주도 특산품인 옥돔의 인공종묘 생산기술 개발

※ 주요 추진성과

- '94~'04년까지 연구완료된 275과제 실용화·산업화 추진
 - 기술이전 31, 이전추진 40, 지도교육 등 204
 - ※ 특허출원 100건, 특허등록 100건, 논문발표 1,364건, 학술지게재 1,400건
 - 매출액 1,959억, 수출 125억, 수입대체 838억, 고용창출 906명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A등급” 획득('03년)

□ 문제점

- 개발된 기술에 대하여 성과활용에 대한 홍보부족 등 소극적인 관리로 연구성과 활용 미흡
-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명공학 등 최첨단 기술개발 및 어업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부족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여 미흡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국내 수산업 구조개혁과 수산업 부문의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 확보를 위한 최첨단 수산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수산분야 기술개발투자의 획기적 확대 및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적정규모의 예산확보
- 수특사업이 어업인의 수익창출로 직결되고,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로의 변화 유도를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프로그램 확대 필요

다. 세부추진계획

□ 기술개발결과의 홍보 강화 및 어업인 활용 촉진

- 수산기술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관리기관 홈페이지에 기술개요, 산업재산권, 시장정보 등 관련 자료를 게재하여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기술개발 결과의 현장 보급 강화
 - 기술개발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의 어업인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급을 촉진

- 어업인의 수익창출로 직결되고,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생명공학 등 최첨단 기술과제 집중 개발
 -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뱅크” 제도 도입·운영 등 다각적인 정책 추진
 - ※ 아이디어뱅크 : 관리기관 홈페이지에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개발된 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단기 산업화과제(“브릿지연구비”)에 대한 연구비 추가 지원
 - 완료된 기술과제중 어업현장 적용이 가능한 완성형 기술 및 산업체상용화 기술이 가능한 우수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비 추가 지원
- “사이버 기술중개소” 및 사업의 프로그램 평가와 성과분석 지원시스템 구축
 - 기술을 이전 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관련기술에 대한 시장정보, 도입효과 등을 3차원 애니메이션을 통해 입체적으로 지원
 - 연구성과물 D/B화를 통하여 성과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프로그램 평가 및 실시간 분석이 가능토록 지원시스템 구축
- 수산과학기술기획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설립·운영
 - 우리 부에서 추진중인 수산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총괄·기획하는 전문기관 설립으로 연구 및 관리의 효율성 배가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2005까지)	2단계(2006-2007)	3단계(2008 이후)
첨단기술 연구개발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안 및 기반기술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수산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술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전략기술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핵심 수산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선도기술 - 세계 일류 수준의 선도기술 개발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 국고사업(일반, 농특)	62	354	64	68	71	74	77
	- 보조	62	354	64	68	71	74	77
	<일반회계>	8	39	7	8	8	8	8
	<농특회계>	54	315	57	60	63	66	69

7-5 수산종합 정보화체계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수산관련 각 기관 및 부서(해양수산부 각 부서, 소속기관, 지자체, 수협 등)별로 개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기관단위로 정보가 생산·제공되었으나, 2003년도에 관련정보를 연계·공동 활용할 수 있는 수산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 기관/부서별 수산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부서/ 기관	정보시스템 명	구축년도	주요 정보
정보화담당관실	수산종합정보시스템	2003	어업인허가, 어선등록, 수산자원, 수산통계, 원양어업, 어업인후계자, 수산물수출입 통계
자원관리과	어업자원관리시스템	2002	수 산 자 원 조 사 · 조 성 · 분 석, EEZ·TAC 관리, 불법어업, 고래자원
수산경영과	어업생산통계시스템	2002	어업생산통계정보 (년, 월, 어종, 업종, 지역별)
원양어업담당관실	원양어업정보시스템	2001	원양어업허가, 원양업체관리, 원양어업통계
유통가공과 (수협)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2001	산지위관정보, 거래알선정보, 경락정보, 전자상거래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연구정보시스템 해양과학정보시스템 어업인신지식시스템	2001, 1999, 2001	수 산 시 험 연 구 정 보 (연 근 해 · 원양자원관리, 위생환경관리) 원격영상정보, 신지식공유시스템, 해양조사자료 관리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수산물검사관리시스템	2002	수출입수산물검사관리, 수산물원산지표시, 이식용수산물관리
행자부 지자체	시군구 수산행정정보시스템	2002	어업인허가, 어선등록, 어항시설, 불법어업, 어장관리

- 한정된 양식가능 수면을 체계적·집약적으로 이용하고,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식어업 정보화 체계 구축(2004~2009)
 - 2004년 : 양식장 시설관리, 양식장생산관리, 수산질병관리사 관리, 수산동식물 이식승인 연계처리
 - 2005년~ : 어병관리, 종묘생산, 품종기술, 사료관리, 어장환경 관리, 양식수산물 이력관리, 양식장 경영관리 등
- 해양조사자료 및 해양과학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시스템 구축(1999~, 국립수산과학원)
 - 시험연구정보시스템, 해양과학정보시스템
- 수산물품질검사정보시스템 구축(2002~,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수출입수산물검사관리, 수산물원산지표시, PDA를 이용한 수산물품질검사 및 실시간 DB 구축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구축(1999~2005, 유통가공과)
 - 수산물유통정보화 기반구축, 수산물전자상거래구축, 수산물 유통정보 공동 활용체제 구축
- 수산자원관리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 확보 및 공동활용체계 마련
 - EEZ조업, 불법어업, 고래자원, 어선조업 등 기초자료 DB화(2,360만건) 및 관련 기관간 자료의 공동 활용

□ 문제점

- 시·군·구 수산행정정보시스템의 수산관련정보를 제공받아 관련 부서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와 일부 기초자료 생산·입력 기관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정보의 신뢰도 저하 및 활용도 저조

- 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의 산지위판 가격정보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공하지만, 현 위판장 경매체제에서 수산물의 정확한 물량(중량) 계측 및 입력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중량 부문 신뢰도가 크게 저하
- 어촌어항분야는 105개 국가어항을 지정, 개발하여 오고 있으나 관련 자료가 전산화(DB구축) 되어 있지 않아 어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속한 수집, 통계, 분석 등이 어려워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 있음
- 각 기관별 업무특성상 개별 추진되는 수산정보시스템의 조정역할 및 분담이 요구되고, 관련정보의 통합 활용을 위한 코드체계·DB 구조의 표준화가 필요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수산관련정보의 다양한 컨텐츠 구축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고
 - 수산물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통합하고, 컨텐츠를 확대 개발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어업인 및 단체에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 제고
- 양식어업의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운영시스템 구축
 - 양식어장의 기본 시설관리 기반하에 종묘·품종관리에서부터 입식 후 사료 및 약품투여 관리, 어병진료관리 그리고 입식·폐사·출하량 관리까지 양식어업 일련의 Life cycle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양식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적인 정책 지원 가능

- 수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수입수산물의 급증, 환경오염 심화 및 식품의 안전사고 증가 등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로 대두
 -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Food Chain 전반에 걸친 종합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관련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 대두

다. 세부추진계획

- “해양수산연구종합시스템(OFIRIS) 구축” ('06 ~ '09)
 - 동 시스템 구축 : '06 ~ '09
- 수산자원관리 정보화 구축 실시 : '05년부터
- 시군구 수산 기초자료 정비 추진 : '05. 3 ~ '05. 7
- 단계별 양식어업 정보화를 위한 수산종합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 '05 ~ '09
- 수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05 ~ '09
 - 수산물 검사정보 분석시스템 개발
 -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시스템 구축
- 어항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06 ~ '08
- 내수면어업 정보시스템 구축 : '07 ~ '09

라. 추진일정

추진업무	2004	2005	2006-2007	2008-2009
수산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장관리일반 ◦어장시설관리 ◦어장생산관리 ◦수산질병관리사 관리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연계 확대 ◦포털시스템 기반 확대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장시설(GIS) ◦종묘생산관리 ◦수산특정연구 DB 화 ◦품종기술관리 ◦사료기술관리 ◦어병연구관리 ◦수산 기초자료 정비 ◦수산물 안전 관리 ISP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장환경관리 ◦양식기술관리 ◦어장경영정보 ◦어병지도/분석관리 ◦양식수산물 이력관리 ◦어항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내수면어업 정보화 ◦해양수산연구종합 시스템(OFIRIS)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면양식 관리 ◦어장경영정보관리 ◦수산물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어항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해양수산연구 종합 시스템 (OFIRIS) 구축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수산종합 정보시스템	◦ 국고사업(일반)	13	64	16	12	12	12	12
	- 보조	13	64	16	12	12	12	12
해양수산과학 정보망	◦ 국고사업(일반)	15	68	16	13	13	13	13
	- 보조	15	68	16	13	13	13	13
수산물 검사 관리, 안전관리 시스템(신규)	◦ 국고사업	(-)	(110)	(-)	(40)	(30)	(20)	(20)
	- 보조	(-)	(60)	(-)	(20)	(20)	(10)	(10)
	- 기금	(-)	(50)	(-)	(20)	(10)	(10)	(10)
국가어항 관리정보화 (신규)	◦ 국고사업	-	(26)	-	(3)	(10)	(10)	(3)
	- 보조	-	(26)	-	(3)	(10)	(10)	(3)
내수면어업 정보화(신규)	◦ 국고사업	-	(11)	-	-	(4)	(4)	(3)
	- 보조	-	(11)	-	-	(4)	(4)	(3)
수산자원 관리정보화 (어업자원관리 정보화)	◦ 국고사업(농특)	1	10	2	2	2	2	2
	- 보조	1	10	2	2	2	2	2
어업정보도 제작(조사원)	◦ 국고사업(일반)	3	11	3	4	4	-	-
	- 보조	3	11	3	4	4	-	-
농특회계 신규재원	○ 국고사업(농특)	-	207	-	-	-	160	47

7-6 어업인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 어촌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어촌지역 PC 보급률은 전국 평균 78.6%에 크게 미흡한 34.5%로 정보격차 심화

(단위 : 가구)

구 분	어가수	PC보유	PC활용	어업정보활용	비고
컴퓨터보급	72,760	25,098 (34.5%)	3,304 (13.2%)	2,874 (11.5%)	

※ 2003년 통계청 자료

- 도시권 정보화 인프라구축에 비해 정보활용능력 상대적 저조 등 계층간 격차 심화
- 도서·벽지 어업인 교육인원 확보어려움 및 양적 성장보다는 정보화 선진그룹양성 등 질적 전환 필요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기초교육에서 수산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용화 중심 교육
- 어촌정보사랑방 PC보완 및 정비, 효율성 낮은 정보사랑방 통합 운영
- 다양한 S/W 보급 및 프로그램 개발로 활성화 도모

다. 세부추진계획

- 어업인 정보화교육의 내실화
 - 전문가 그룹의 정예화 육성(전문어업인, 신지식어업인 등)
- 어촌정보사랑방 운영 지원 : ('04까지)393개소→('09까지)600개소(850대)
 - 모범어촌계,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어업인단체 등
 - 정보사랑방 PC교체 및 정비
 - 우수 어촌정보사랑방 포상, 활용도가 낮은 사랑방 통합운영
- 어업인 정보화 S/W 개발 보급
 - ('03까지) : 81개 S/W 개발 보급
 - ('13까지) : 200여개 S/W 개발 보급
- 수산모바일 서비스 지원
 - 수산관리과소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바일(휴대폰+PDA) 서비스 실시
 - 적조, 태풍, 이상해황, 교육안내 문자(음성), 설문조사 가능
- 어업인 정보화활성화 방안 모색
 -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로 마인드 확산

라.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어촌정보 사랑방 및 원격영상시스템 구축(신규)	○ 국고사업	(-)	(40)	(-)	(10)	(10)	(10)	(10)
	- 보조	(-)	(40)	(-)	(10)	(10)	(10)	(10)
디지털어촌구축	○ 국고사업(농특)	-	35	7	7	7	7	7

7-7 수산통계의 신뢰도 증진을 위한 조사방법 개선 및 신규통계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수산관련 정부승인통계는 9종으로 각 기관별로 조사·발표
 - 우리 부 4종, 통계청 4종, 수협 1종
-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이후 WTO-DDA/FTA 협상 전개에 따른 국내·외의 어업여건 변화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요구 증가

□ 문제점

- 정부승인 수산통계는 대부분 어업분야에 국한되어 유통·가공, 양식분야 및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부재
- 어업생산통계 표본수 확대 제한에 따른 오차발생과 통계 신뢰도 저하
- 통계조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인력, 시스템 부족으로 통계의 부실 가능성 상존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급변하는 국내외 수산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통계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응한 정부 승인통계의 꾸준한 확대·제공
- 협상·정책수립 등에 정확한 기초통계자료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므로 조사방법의 개선 등 통계생산과정의 품질관리 및 인력 확충을 통한 통계 신뢰도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 정부 승인 수산통계자료의 정확도 제고
 - 어업생산통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해면어업 비계통 표본수 및 양식품종 전수조사의 꾸준한 확대
- 새로운 통계 수요에 대응하는 수산분야 정부승인통계 확대 지정
 - 양식생산시설조사, 어류양식생산비통계조사, 수산물 유통통계조사, 수산업종사자통계 등 다양한 정부승인 수산통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정책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업무 종사자의 업무인식 제고 및 인력 확충
 - 통계업무담당자 표창수여 및 통계 선진사례 학습기회 제공
 -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표본수·전수조사 품종 확대에 필요한 통계인력 보강
 - 임시 조사원 추가 확보 : '05)94명 → '09)180명
 - 통계 전문직 추가 확보 : '05)2명 → '09)27명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2005)	2단계(2006-2007)	3단계(2008 이후)
생산통계 신뢰도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본 확대 및 양식 전수조사 확대 ◦어업인의 정의 재정립 ◦양식생산시설조사의 신규조사 등 정부승인통계 2종 조사·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본어가 관리 및 양식 전수조사 확대 ◦양식생산비통계조사의 정부승인통계 추진 등 통계 3종 조사·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본 확대, 설계 및 양식 전수조사 확대 ◦수산물유통통계조사의 정부승인통계 추진 등 통계 4종 조사·공표

마. 투융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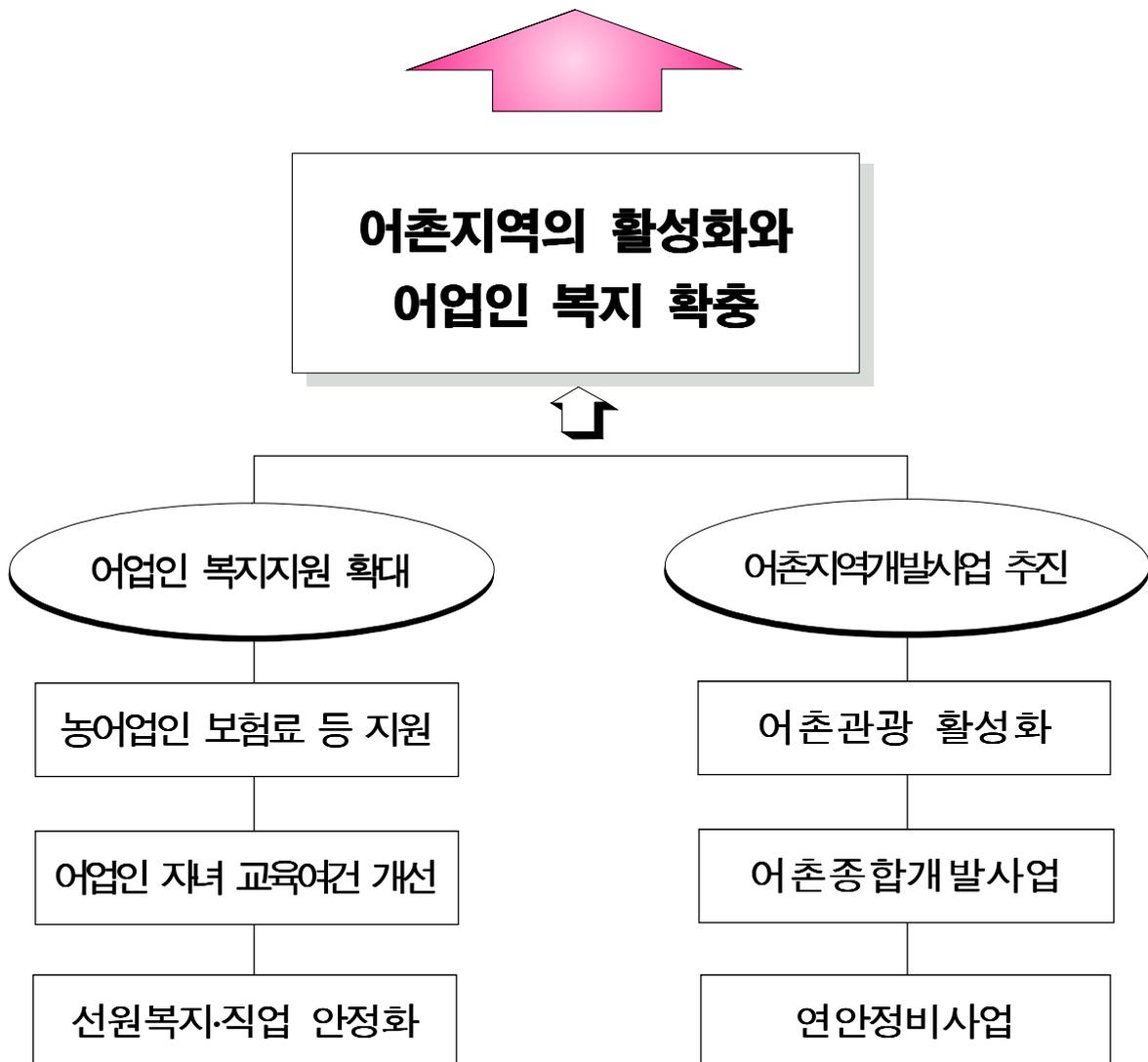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신뢰 높은 수산통계작성	○ 국고사업(일반)	7	92	14	17	18	19	24
	- 보조	7	92	14	17	18	19	24

8.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쾌적한 정주환경의 복지어촌 건설

- ◆ 전국 24개소 어촌관광 거점 개발('09)
- ◆ 어촌종합개발사업 : '13년까지 225개 권역 개발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어촌·어항의 종합개발

- 어촌인구 유입을 위한 어촌기반시설 확충 및 복합생활 공간 조성
 - 어촌종합개발사업 '13년까지 225개 권역 개발
-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다기능종합어항 집중개발
-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05년 어촌·어항법 제정)

□ 어업의 소득원 개발을 위한 어촌관광 육성

- 생산기반 위주의 사업지원을 관광기반 지원으로 전환
 -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추진 및 어업인 관광교육 실시
- 어촌관광 중심의 어촌·어항개발 추진('09년까지 24개소)
 - I모델(어촌어항복합공간), II모델(다기능어항), III모델(어촌관광단지) 등
- 해양레저와 연계한 낚시관리제도 마련
 - 어류양식장을 낚시터로 활용방안 강구 등 레저어업 육성

□ 어촌 주민의 복지후생과 삶의 질 향상

- 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 ※ 건강보험료 지원 : ('05년) 40% 경감→('06년 이후) 50% 경감
- 기초생활보장 재원을 마련하고 어촌에 기본적 문화시설 확충
- 교육비 부담 경감과 어촌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유치원 무상교육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 고교생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지원

8-1 어촌종합개발사업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어장오염, 자원감소 등 어업생산여건 악화로 어촌경제 침체
- 어촌의 정주환경 및 복지여건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 낙후
- 젊은 층의 이촌 현상에 따른 노령화 가속 및 어가인구 감소

□ 문제점

- 농특세 재원부족에 따른 어촌종합개발 사업추진 실적 부진
 - 당초계획 : '94 ~ '04년까지 160권역에 5,432억원 투자
 - ※ 농특세 재원부족으로 '02년 계획기간 변경('94 ~ '06)
 - '03까지 실적 : 130개 권역에 4,046억원 투자(투자율 74%)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어촌은 단순한 식량생산의 공간을 넘어 생태·문화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삶의 공간임
 - 경제원리에 따른 접근보다는 균형발전 및 복지차원의 접근 필요
- 어촌지역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보전·이용과 다양한 소득원 발굴로 고부가 가치화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다. 세부추진계획

- 어업지원 및 어촌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정비
 - 선착장, 물양장, 방파제, 선양장, 호안, 등 해안 및 어항시설
 -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해안도로 등 도로 및 어업지원시설
 - 상하수도, 어업인회관, 해안조명 등 복지 및 생활환경시설
- 어가소득향상을 위한 유통·관광 등 소득원시설 확충
 - 산지가공, 화입건조, 냉장냉동, 활어직판장 등 가공 및 유통시설
 - 특산품판매장, 주차장, 해양소공원, 전망대 등 관광기반시설
- 2차 개발대상 65개 권역 확대 추진('07~'13)
 - 농특세 시한연장('05~'10)과 '03년 수산정책연구과제로 채택된 “어촌종합개발사업 평가 및 향후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 재설정 검토
 - ※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에 '13년까지 65개 권역 확대 반영

라. 추진일정

- 1차 어촌종합개발사업(160권역) 추진 : '94~'06
- 2차 어촌종합개발사업(65권역) 추진 : '07~'13

추진전략	1단계 (1994-2006)	2단계 (2007-2013)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정주환경개선을 위한 160개 권역 개발	새로운 개발방향에 따른 신규 65개 권역 개발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어촌종합 개발사업	○ 국고사업(균특)	272	1,679	254	349	350	361	365
	- 보조	272	1,679	254	349	350	361	365
	○ 국고사업(농특)	4	31	4	6	7	7	7
	- 보조	4	31	4	6	7	7	7

8-2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신 해양질서 정착 및 WTO-DDA / FTA 진전 등 어업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보조금지급 등 직접지원보다는 어항·어촌개발 등 SOC시설투자의 간접지원을 통한 어촌 경쟁력 제고 필요성 대두
-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5일 근무확대실시·교통망 확충 등으로 소득 및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다양한 관광수요 발생
- 현행 어촌어항개발은 기본시설, 유지보수 위주로 연간 약 2,600억원 분산 투자
 - 국가어항 : 총 105개항, 30,762억원 → ('04) 56개항, 1,514억원
 - 지방어항 : 총 313개항, 15,939억원 → ('04) 56개항, 548억원
 - 어촌종합개발 : 총 160개 권역, 5,432억원 → ('04) 25개 권역, 504억원

□ 문 제 점

- 관광업무의 수요증가에 비해 법적 지원체계 및 재정지원 미흡
 - 어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및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부재
 - 어촌관광 투자재원은 연간 160억원으로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

- 어촌관광에 따른 실질적인 어가소득 증대에 어려움
 - 교통과 도로망의 발달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관광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고부가가치 '어촌체류형' 관광수요 유발에 애로
 - 어업인 소득과 직접 연계되는 지원사업의 경우, 경영능력 및 사업주체(어촌계 공동소유)의 문제로 사업부진
- 지역개발사업의 특성상 집행의 애로 상존
 - 어촌관광을 추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제도적 체계의 부재로 효율적인 사업집행에 장애
- 어촌관광사업의 제약요인
 - 당일 나들이형 '먹거리' 위주의 관광이 주종
 - 난개발로 인한 훌륭한 관광자원 훼손 우려
 - 계절적인 요인으로 지속적인 관광수요 유지에 애로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생산기반 위주의 사업지원을 관광기반 지원중심으로 전면 재편
-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촌관광수요 창출
- 어업인중심의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촌소득 증대
- 지속가능한 어촌관광 확산을 위한 어업인의 의식전환 유도

다. 세부 추진계획

-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통합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어촌·어항법」 제정 추진

- 어촌관광중심의 어촌·어항개발사업의 통합모델 개발
 - I 모델(어촌·어항복합공간) : 기존어항·어촌+ 관광기능
 - II 모델(다기능어항) : 기존어항+ 관광기능
 - III 모델(어촌관광단지) : 기존어촌+ 관광기능
-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어촌관광 수요 창출
 - 해역별·지역별 특색에 적합한 권역별 지역계획 수립 시행
- 어업인 주도의 어촌관광으로 실질적인 어촌소득 증대
 - 지역계획 수립시부터 어업인의 적극적 참여 유도도 내실 있는 계획 도모
 - 어업인 스스로가 어촌관광을 경영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도시자본 유치에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 전개
 - 다양한 이벤트 사업개발로 도시민의 관심 제고
 - '바다의 날' 행사시 어촌관광 축제 병행 실시
 - 도시지역에 어촌관광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아름다운 어촌 100선 마을' 찾아가기 행사개최 등
 - 매월 '이달의 어촌'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건전한 어촌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육성·지원
-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직 및 예산지원 체계 재편
 - 현행 어촌·어항과 조직에서 어촌관광팀 신설
 - 2개 담당을 신설하여 관광기획 및 지원 강화
 - 지방청의 어촌관광 지원조직의 보장

라. 추진일정

- 2003년 : Ⅱ모델(다기능어항) 선정타당성조사용역 착수
- 2004년 : I 모델(어촌어항복합공간), Ⅲ모델(어촌관광단지)
후보지 선정용역 및 I·Ⅱ·Ⅲ모델 대상지 선정
I 모델 1개소 사업 착수
- 2005년 : 모델별 기본설계·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
- 2006년 : Ⅱ·Ⅲ모델 사업 착수
- 2009년 : 사업완료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어촌관광 진흥종합대책 (신규)	○ 국고사업	(-)	(553)	(-)	(112)	(176)	(155)	(110)
	I 모델사업	(-)	(195)	(-)	(63)	(57)	(50)	(25)
	Ⅲ모델사업	(-)	(358)	(-)	(49)	(119)	(105)	(85)
	- 일반				(14)	(16)	(5)	(5)
	- 농특				(8)	-	-	-
	- 균특	-	515	-	90	160	160	105
어촌관광개발특화	○ 국고사업(일반)	-	29	6	6	6	5	6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	○ 국고사업(농특)	-	8	4	2	2	-	-
	○ 국고사업(균특)	-	175	-	50	50	50	25
어촌관광단지조성	○ 국고사업(균특)	-	330	-	40	110	100	80

8-3 국가어항 개발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지금까지 어항개발은 투자가 열악하여 방파제, 물양장 등 수산업 위주의 기본시설 개발에 그쳐 종합기능 효율성 저하
- 신 해양질서 정착 및 WTO-DDA등 어업여건 악화 등으로 정책보조금 지급대신 어항·어촌개발 SOC시설투자로 간접지원을 통한 어촌 경쟁력 향상 필요성 대두
-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5일 근무확대실시 등으로 어항·어촌 관광수요 급증
- 수산업 여건변화에 따른 자원관리형 어업지원과 환경 친화적인 어항개발 요구 확산

□ 문 제 점

- 어항개발 투자미흡으로 어항기능 저하 및 이용불편 초래
 - 어항개발 투자미흡으로 시설부족 및 어선안전수용률 저조
 - 어선의 안전수용률이 낮아 태풍 등 기상악화시 대처능력 저하로 재산피해 확대
 - 어선안전수용률 : 2004년 현재 55%
 - 매년 소규모투자로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개발비용 증가
- 기본시설 위주 개발로 종합기능 미비, 환경개선 소요 빈발
 - 관광, 교통, 수산물유통 등 종합기능 수행능력 미비
 - 기존 시설의 해수소통 등 환경개선 요구 증대
- 어항내 유희부지 증가 및 관리부실로 활성화 저해
 - 민자 및 지자체 투자 부진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어항시설 확충으로 재해방지 및 어선안전수용률 제고
- 도시민의 휴양공간 제공 및 어촌소득 창출을 위한 다기능 종합어항 개발
- 여건변화와 미래수요에 대응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어항모델 창출
- 수산 인프라시설 구축과 주변 어촌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집중투자로 어업 외 소득증대 기반조성

다. 세부 추진계획

- 신규 개발항은 21세기 해양관광수요에 맞추어 종합기능항으로 개발
 - 지역특성에 따라 어촌관광·교통 등을 고려하여 개발
 - 어항배후부지내 위판장, 가공유통시설, 관광판매시설을 체계화
 - 유람선·유어선부두 시설 등 해상관광 기반시설 확충
 - 마리나, 윈드서핑, 요트 등 해양레저 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구축
 - 녹지공간 및 낚시터 조성, 친수 방파제 등 친수시설 확보
 - 활어보관시설 등 수역확보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생산의 장으로 활용
- 정비 대상항은 이용자 편의 위주로 기존어항의 과감한 정비·확장
 - 입지여건, 이용실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 개선
 - 수역확장, 접안시설 보완, 하수유입차단 관거 설치, 친수공간 제공 등
 -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가로등 설치 등
- 어항 신규지정 및 시설 확충
 - (현재) 105개→ (2016년) 150개
 - 어선안전수용률 : (현재) 55%→(2016) 100%

- 기 지정 국가어항의 조기 완공을 위한 집중 투자
 - 국가어항 105개항중 계속투자항 33개항을 2010년까지 완공
 - (현재) 65% → (2010년) 100%(목표)
 - ※ 어선의 안전수용률이 낮은 서·남해안에 중점 투자
- 개발잠재력이 있는 어항을 종합다기능어항으로 시범 개발
 - 시범적으로 동·서·남해에 각 2개씩 선정 집중 개발
- 다기능 어항개발 제도확립을 위한 가칭“어촌어항법” 제정
 - 어항시설사업에 수산자원육성을 위한 시설 등 추가
 - 어항부지내 민자유치 촉진 규정 마련
 - 어항구역내 “어촌관광구역” 마련
- 어항부지 매각 및 민자유치활성화 방안 마련
 - 기본시설부지 및 공공용지 외의 부지매각 추진
 - 어항부지내 수산물유통센터, 특산물판매장 등의 유치로 어촌 소득증대 및 관광객 유치 확대

라. 개발 추진일정

<다기능어항>

- 2003년 : 다기능어항 선정타당성조사용역 착수
- 2004년 : 대상어항 선정 및 기본설계용역(다기능어항 모델개발)
- 2006년 :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
- 2007년 : 사업착수(5개항)

<국가어항신규지정>

- 2003년 : 국가어항지정 타당성조사용역 착수
- 2005년 : 국가어항지정(10개항)
- 2006년 : 기본설계착수

- 2007년 : 환경영향평가
- 2008년 : 실시설계
- 2009년 : 공사착수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국가어항 건설	○국고사업(보조)	1,645	9,056	1,736	1,747	1,773	1,900	1,900
	- 일반회계	1,209	7,534	1,325	1,338	1,447	1,712	1,712
	- 농특회계	264	615	239	232	144	-	-
	- 책특회계	172	907	172	177	182	188	188

8-4 지방어항 개발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WTO-DDA출범과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적용으로 조업수역이 감축되는 등 어업여건악화에 따른 어촌지역 경제활성화대책 필요
- 어업여건 변화에 따라 대형어선이 감소하고 근해양식·연근해 조업을 위한 소형어선이 증가됨에 따른 지방어항 및 소규모 어항 조기개발 필요성 대두
- 지방어항의 조기개발을 위해 농특세 재원을 대폭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나 2004년 10월 현재 완공률은 30%(313개 항중 94개항 완공)에 불과하여 태풍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어촌사회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임

□ 문제점

- 지방어항은 어업활동 및 어촌정주생활의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 시설이나, 개발부진에 따라 어업인의 재해위험노출과 어선유실·파손 등 생계불안이 가중
-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열악으로 인한 지방어항건설의 미진을 개선하고자 `94년부터 `04년까지 국고 4,50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절대액 부족으로 개발 부진
- 어촌지역의 필수시설인 어항건설부진으로 ‘탈 어촌 현상’ 가속화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어업여건악화로 어업소득이 급감함에 따라, 어업과 연계한 소득 기반조성 및 투자 확대
 - 어업여건변화에 따른 어촌경제 변화에 따라 어업과 연계산업까지 수용 가능한 다기능어항으로 개발 추진
- 지방어항의 조기완공으로 쾌적하고 안정된 어촌정주여건 조성

다. 세부추진계획

- 어항개발계획수립 시 당해 항과 관련되는 어촌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반영
 - 어촌체험, 리조트, 휴양(낚시, 해양공원 등), 양식, 전시관 등 어촌지역 소득기반시설을 어항개발계획과 연계
- 지방어항의 조기완공을 위한 국고지원액 대폭 상향조정 추진
 - 매년 국고예산을 상향(전년 대비 10% 이상) 확보 추진
-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완공률 제고
 -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항당 투자비를 상향하는 등 집중투자 유도
 -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확보 독려 및 조기집행으로 투자효율성 제고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4)	2단계 (2005 - 2009)	3단계 (2010년 이후)
완공 위주의 집중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농특세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국고지원 예산확보 - '05이후 균특회계 지원 ◦ 대상항중 정비 - 여건변화로 항세가 커진 항은 국가어항으로 승격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8개항 완공 - 2003년 완공률 29% → 2009년 완공률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까지 지방어항 건설 완료 - 어항 완공 촉진을 위한 대폭적인 국고지원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 (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지방어항 개발	○ 국고사업(균특) - 보조	295	1,784	353	253	350	353	475
		295	1,784	353	253	350	353	475

8-5 연안정비사업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99. 8월 제정된 연안관리법에 의거 수립된 「제1차 연안정비 10개년계획」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행
- 연안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환경 개선·복원을 통한 연안의 자연생태적 가치증진 및 삶의 질 제고

□ 문제점

- 태풍, 집중강우 등에 인한 연안재해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연안의 구조적 재해 취약성과 방재기능의 미비
 - 해일, 고조 등에 의한 침수, 침식, 퇴적 등 연안피해 빈발
 - 태풍피해복구 등 사후복구위주의 시설정비에 치중함에 따라 재해원인 규명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여 연안정비의 종합성·체계성 결여
- 연안의 인구·산업 집중에 따른 연안의 개발압력 집중으로 연안 환경의 훼손 및 오염 심화
 - 연안오염의 약 80%가 육지에서 유입된 오염원에 기인
 - 간척·매립 및 준농림지역의 난개발로 연안생태계 파괴
- 연안개발 및 방재방식의 미숙으로 친환경적 연안보전·이용 및 개발 결여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예방위주의 연안보전으로 안전한 연안축의 구축
 - 태풍, 해일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의 많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연안시설 정비
 - 연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붕괴·노후시설의 계획적인 정비로 『재해에 강한 연안국토』를 구축
- 환경복원을 전제로 한 해역 개선
 - 선점식 난개발로 훼손되었거나 훼손우려가 있는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환경훼손 및 오염의 사전예방을 도모하고 환경복원을 전제로 하는 해역개선 추진
- 환경친화적 친수연안의 조성과 시민의 접근권 확보
 - 연안정비사업 추진시 친수성을 제고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친수연안 조성하여 시민의 연안접근권 확보 및 해안경관 보호

다. 세부추진계획

- 연안환경보전 도모를 위한 정비사업 확대추진
 -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환경 개선·복원을 위하여 「제1차 연안정비10개년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지속 추진
- 연안침식방지 종합대책수립 및 모니터링 체제구축
 - 연안 난개발로 인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침식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연안침식방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04. 10)
 - 근간의 증가하는 연안백사장 침식피해에 대해 정확한 원인규명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한 과학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0-2004)	2단계 (2005-2009)
연안정비사업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30개소 - 연안보전사업 : 125개소 - 해역개선사업 : 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50개소 - 연안보전사업 : 505개소 - 해역개선사업 : 25개소 - 친수연안조성사업 : 20개소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680개소 9,808억원 / 2000 ~ 2009

※ 1단계('00 ~ '04) : 130개소 2,759억원, 2단계('05 ~ '09) : 550개소 7,049억원

○ 사업내용 : 연안보전사업, 해역개선사업, 친수연안조성사업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재원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연안정비 사업	○ 국고사업(일반)	105	408	86	70	83	83	86
	- 보조	105	408	86	70	83	83	86
	○ 국고사업(균특)	163	773	174	139	140	150	170
	- 보조	163	773	174	139	140	150	170
	○ 국고사업(책특)	14	47	15	8	8	8	8
	- 보조	14	47	15	8	8	8	8

8-6 해양레저와 연계한 낚시관리제도 도입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제 시행으로 해양레저 수요증대에 따른 낚시인구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 추정낚시인구 : 연 570만명(민물 220, 바다 160, 혼합 190)
- 낚시인구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과 자원남획에 따른 유어관리 제도. 전담부서 필요
 - 현재 해양수산부, 환경부, 건교부 등 5개 부처 17개 법률에 의해 환경보전 및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주로 규제위주로 관리
- 내수면은 정부의 맑은물 공급정책에 따라 양식장의 배출수 규제가 강화되고 무분별한 외래종의 이식으로 생태계 교란

□ 문제점

- 낚시인구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 및 자원남획, 유어관리 제도. 전담부서 일원화 필요
- 내수면의 생태계 회복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제도개선 필요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낚시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남획 가속화

- 해양레저 수요에 부응한 낚시관리제도 마련
- 낚시관리제도의 법제화 및 레저어업 육성
- 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자원의 효율적관리 및 제도개선
- 해상 어류가두리 양식장의 낚시터 허용방안

다. 세부 추진계획

- 낚시인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친환경 미끼 개발지원 등 낚시업 발전 등 종합적인 낚시관리제도 도입 필요
 - 우리 실정에 맞는 낚시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 수행기관 : 한국수산회('03. 8 ~ '05. 8, 180백만원)
- 내수면의 생태계 회복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제도개선
 - 내수면 생태계 회복·보존·관리방안 마련과 5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내수면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조정
 - ※ 내수면 잠재력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실시('04 ~ '07, 9억원)
- 해상 레저인구 확산에 따른 어류가두리 양식장 일부의 낚시터 허용 추진
 - 유어장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개정('05)
 - 이용실태분석 및 확대방안 모색('05 ~)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2005)	2단계(2006-2007)	3단계(2008 이후)
낙시관리제도 마련 및 레저어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시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낙시인의 공감대 형성(상반기) ◦낙시인이 자발적 참여 가능한 낙시관리제도 마련(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법 제정 및 관리조직 신설 ◦스킨스쿠버 등 모든 레저어업으로 확대 모색 ◦레저어업의 지원·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킨스쿠버 등 모든 레저어업으로 확대 ◦레저어업의 지원·육성
해양어류가두리 양식장의 낙시터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규칙 개정 ◦이용실태분석 및 확대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실태분석 및 확대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실태분석 및 확대 방안 모색
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전한 유어질서 정착 및 과도한 어획방지 제도 개선 ◦자연생태계에 적합한 어도시설설치 및 관리 기준 마련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근절 ◦잠재력 조사를 통한 생태계 복원 및 발전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근절 ◦잠재력 조사를 통한 생태계 복원 및 발전방안 마련 	-

마. 투융자 계획 : 없음

8-7 어촌체험마을 조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삶의 질 향상 및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 여가시간 증대
- 각종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어촌지역의 접근성 향상
- 어촌에서 가족단위로 체험·휴양하는 새로운 관광형태 증가

□ 문제점

- 어촌지역의 관광기초시설의 미비 및 부족
- 관광마인드가 있는 리더 및 전문가 부족
- 체험프로그램 및 관광자원과 연계개발 미흡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국민관광패턴이 현장체험을 통한 어촌지역과의 사회적인 교류와 자기개발을 위한 창조적 여가활동 추구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어촌관광자원 개발이 필요
- 인구감소, 노령화부녀화로 쇠퇴하는 어촌현실에 대응하여 수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원화된 국민의 휴양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어촌관광사업 진흥

다. 세부추진계획

-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 종합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 어촌체험기반시설
- 어촌과 어우러진 여가활동을 위한 마을별 체험프로그램 개발
 - 갯벌체험, 승선체험, 양식장체험, 바다낚시, 문화체험 등 어촌체험
- 어업인의 자율적인 어촌관광 운영을 위한 리더 육성
 - 체험프로그램 및 안내를 담당할 관광리더·가이드 교육과정 운영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
-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확대추진('08년 이후)
 - 전국 60개소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조성 검토
 - ※ 수산업·어촌종합대책에 '13년까지 43개소 확대 반영

라. 추진일정

- 1차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추진 : '02 ~ '07
- 2차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추진 : '08 ~ '13

추진전략	1단계 (2002-2007)	2단계 (2008-2013)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어촌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60개소 조성	새로운 개발방향에 따른 신규 43개소 조성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재원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어촌체험 마을조성	○ 국고사업(균특)	30	160	55	20	25	30	30
	- 보조	30	160	55	20	25	30	30

8-8 어업인 복지지원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어업 경영여건 악화로 후계인력의 양적·질적 저하로 어촌의 고령화 심화

※ 50대 이상 어업종사자 : ('75) 24% → ('90) 40% → ('04) 62%

- 19세 이하 어업가구원의 급속한 감소 및 교육·의료환경 미비
 - 농어촌 읍·면(1,422개)중 809개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음

※ 19세 이하 어업가구원(천명) : ('75) 447.8 → ('90) 181.0 → ('04) 35.8

※ 2004년 어업가구원 구성(천명)

합계	15세 미만	15-19세	20-59세	60세 이상
209.9	25.8	10.0	117.3	56.8

□ 문제점

- 어가소득 정체, 어촌고령화,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어촌형 사회안전망 미흡

- 어촌의 영유아 보육여건 미흡 등으로 젊은층의 출산기피 및 이어(離漁) 심화

- 지리적·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 부담과 열악한 의료·문화생활환경 등이 어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음

- 어촌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 융자 등 지원폭 확대 필요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어업인 연금, 건강보험료 지원방식 개선을 통한 지원 확대
- 농어촌지역에 시설보육 수요가 확산되어 민간 및 각종 보육시설 설치 유도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다. 세부추진계획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의 지원액을 상향조정 및 지원방법 변경추진
 - ('03~'04. 6) 최저등급(원보수 기준 220천원) 보험료의 50%를 균등 지원(1인당, 7,700원)
 - ('04. 7~) 45등급중 11등급 이하는 50% 정률 지원하고, 12등급 이상은 12등급을 기준으로 50% 정액 지원(1인당 17,600원)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단계적으로 50%까지 경감 추진
 - ('04) 30% → ('05) 40% → ('06 이후) 50%
- 농어업인의 자녀 0-5세아 중 보육시설 및 유치원 취원아에 일정액의 양육비 지원
 - 보육료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액의 50% 수준 지원(단, 5세아는 100%)
 - 교육비 : 국공립·사립 유치원 취원아를 대상으로 하되
 - 5세아는 입학금과 131,000원/월 범위내 수업료 납부액
 - 3-4세아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수업료의 50% 수준 지원(국공립 11,000원, 사립유치원 월 55,000원 수준)
- 농어업인의 고교생 자녀 학자금(수험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
 - 당해 학교의 매학기별 등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 전액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4)	2단계 (2005)	3단계 (2006 이후)
어업인연금보험료의 확대 지원	◦보험료의 50% 지원 - 12등급 기준 보험료의 50%, 1인당 17,600원	-	-
어업인건강보험료 확대 지원	◦보험료의 30% 경감	◦보험료의 40% 경감	◦보험료의 50% 경감
농어촌고교생 자녀 학자금 보조	-	◦학자금 전액	◦학자금 전액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용자	◦매 학기별 등록 한도내 신청금액 전액	-	-
농어업인의 양육비 지원 확대	◦42천명	-	-

마. 투융자 계획(소관부처 반영)

(단위 : 억 원)

사업명	소관부처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계		467	3,737	630	697	740	800	870
농어민연금보험료 지원	복지부	54	335	58	62	67	71	77
농어민건강보험료	농림부	121	1,151	181	218	227	251	274
농어촌 실업고학과개편	교육부	3	15	3	3	3	3	3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문광부	11	55	11	11	11	11	11
농어촌출신대학생자금용자	농림부	56	346	60	64	69	74	79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복지부	56	355	60	65	70	75	85
농어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농림부	33	202	35	38	40	43	46
농어촌 주택개량	행자부	39	242	42	45	48	52	55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마을)	농림부	44	276	47	50	54	58	67
생활용수개발사업(면단위)	환경부	40	248	43	46	49	53	57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환경부	10	50	10	10	10	10	10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행자부	-	462	80	85	92	99	106

8-9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교육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적용으로 연안어장 및 해양공간의 가치가 종전보다 새롭게 부상
 - 어장 축소에 따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으로 어선감축사업 실시
 - 연근해 어선의 구조적인 낙후 및 종사자들의 교육수준 저하로 신규 발효 법규에 적응 미흡
- ※ 연근해 어선원 자질향상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필요

□ 문제점

- 한반도 주변해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적용으로 어장의 축소 등 환경변화에 미온적 대처
 - 어장 감소에 따른 정부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실시로 연근해어선 사업종사자 및 선박의 감소
- ※ 연근해어선 선원수 ('01) 23,606명 ⇒ ('02) 20,523 ⇒ ('03) 18,230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선원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금어기, 휴어기에 선원들에게 새로운 정보의 제공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전수

다. 세부추진계획

- 연근해어선 종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기회 확대
- 연근해어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업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전문과목의 신설 등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해양경찰청의 연근해 어선의 입출항관리시스템 개발과 연계하여 어선원 승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로, 총톤수 5톤 미만 소형선박 종사자에 대한 새로운 하위등급 해기사면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무자격자 운항에서 유자격자로 양성화하는 방안 검토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5)	2단계 (2006-2007)	3단계 (2008년 이후)
연근해 어업종사자의 자질향상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총톤수 5톤 미만 종사자에 대한 하위등급 해기사 면허제도 도입 추진	○선박안전운항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재원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교육훈련	○ 국고사업(일반) - 보조	(65) (65)	(378) (378)	(68) (68)	(72) (72)	(75) (75)	(79) (79)	(84) (84)
어업인교육훈련	○ 국고사업(농특)	4	18	4	3	4	3	4

※ ()는 12.4조원 사업이 아님

8-10 선원의 복지 및 직업안정을 위한 정책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선원의 최저임금 고시 등을 통한 최저생계 안정 지원 및 선원 권익보호와 사업자의 선원법령 준수를 위한 선원근로감독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저소득선원자녀 장학금 지급 및 장애선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선원복지 및 직업안정 정책 추진
- 효율적인 선원수급을 위한 선원 구직·구인 프로그램 운영

□ 문제점

- 해양수산산업, 특히 선원분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3D업종으로 인식됨에 따른 젊은인력의 취업기피로 기존선원들의 노령화 및 업체의 경영난 가중
- 선원에 대한 지원 및 복지정책 미흡으로 매년 승선선원수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나.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선원의 체불임금 등의 적극 해소를 위한 선원근로감독업무 강화
 - 현재 : 49명 ⇒ 목표 : 59명(근로감독관 10명 증원)
- 선원 구인·구직활동 강화
- 선원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다. 세부추진계획

- 선원 처우개선을 위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홍보활동 강화
- 선원의 최저임금을 육상근로자 대비 20% 상회하는 수준 반영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사업규모 확대
 - 선원복지를 담당하는 동 기관의 사업규모 확대 및 기구확대 개편
 - 선원 구인·구직관련 주요지역 전산망 구축(부산, 인천, 여수 등)
 - 선원 휴양시설 확충(현재 22개소) 및 장애선원 재활프로그램 강화
 - 저소득 선원 생계지원대책 마련

라.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 (2005)	2단계 (2006-2007)	3단계 (2008년 이후)
선원복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원가족장학금 지급범위 확대(저소득 선원 우선) ◦선원구직구인시스템 개선 ◦선원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근해 어선원 복지시설 확충(부산 남항동) ◦선원복지프로그램 단계별 시행 ◦장애선원 지원규모 확대 ◦선원병원 건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원복지시설 확충 및 홍보 지속추진 ◦선원복지프로그램 지속 시행

마. 투융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재원별	`04	연차별 투융자계획(2005-2009)					
			소계	`05	`06	`07	`08	`09
선원복지사업	○ 국고사업(일반)	(19)	(102)	(20)	(20)	(21)	(21)	(20)
	- 보조	(19)	(102)	(20)	(20)	(21)	(21)	(20)

※ 12.4조원 사업이 아님

제5장 새로운 수산정책을 위한 기반조성

1. 수산행정조직 정비

가. 배경 및 사유

-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은 대폭 축소하고, 핵심역량 위주의 수산관련 기능개편
 - 해양생명공학 등 첨단 과학분야의 연구인력 확충, 수산식품의 안전성의 체계적 확보 및 배타적 경제수역내 어족자원 보호 등 전담 조직 및 수산인력 보강

나. 수산행정 조직 정비방안

- 국민들의 수산물 식품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수산식품안전과' 신설
- 북한산 수산물의 수입급증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도라산, 저진) 신설
- 해양바이오 사업의 효율적 관리 구축을 위한 국립수산과학원내 '마린바이오21사업단'을 신설하고, '05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책임성 제고로 수산관련 연구성과 배가
- 배타적경제수역(EEZ)내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지도 단속에 필요한 신조 어업지도선 운영인력 확보
-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고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 수산종묘 매입·방류, 바다목장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

2. 법령 및 제도 정비

가. 어촌·어항법(제정)

□ 제정 사유

- 최근의 수산업 여건 악화와 젊은 층의 탈어촌 현상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어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국가가 수립한 5년 단위 『어촌발전기본계획』 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어촌지역계획」 을 통해 어촌개발비전을 제시
 - 지자체는 주민참여하에 어촌지역계획을 수립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품 등 어촌 특성을 활용한 어촌특성화사업을 개발·추진
- 어항환경개선사업의 신설,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어항구역내 양식시설 보호 등 어항기능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

□ 추진일정

- 법제처 심사 : '04. 7
-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제출 : '04. 11
- 시행(예정) : '05 상반기

나. 수산자원관리법(제정)

□ 제정 사유

-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수산자원보호령'으로 시행되고 있어 법적문제 및 정책 실효성 확보에 한계
- EEZ 정착에 따른 어장축소,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수산업법은 수산분야 기본법 성격 유지, 제정법률은 수산자원회복(관리)에 관한사항 반영
-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에 부합되는 개념과 내용 반영
 - 지속가능한 이용, 책임 있는 수산업 제도 마련
 - 수산자원 보호(보존)에 관한사항과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자원의 이용, 개발(조성) 관리 등

□ 추진일정

- 수산자원회복 초안 작성을 위한 Working Group 운영 : '04. 12
- 수산자원회복계획(안) 연구용역 추진 : '05. 4 ~ 10
- 수산자원회복계획 및 수산자원관리법 안 마련 : '05. 12
- 수산자원관리법 입법화 추진 : '06 ~

다. 수산생물질병예방법(제정)

□ 제정사유

- 수산질병에 의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르는어업 발전 저해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문제점 발생
- 수산물 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양식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물의 전염성질병의 예방·진단·예방약 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수산동물 질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수산동물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산동물의 격리와 수산동물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동물의 살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 및 보고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 수 있도록 함

□ 추진일정

- 제정(안) 마련 : '05. 3
- 입법예고 및 심사 : '05. 7 ~ 12
- 국회 제출 : '06. 2

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제정)

□ 제정사유

- 양식어가의 대형화 및 기업화로 양식기술이 안정화되고, 양식수산물의 사회적·경제적 비중이 높아져 보험도입 필요성 증대
- 정부 의존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는 자조적 여건 조성

□ 주요내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연구용역 및 도상연습결과('02. 3~'04. 7)를 바탕으로 도입이 가능한 품종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후 점진적으로 대상 품종 및 대상 재해를 확대 추진

□ 추진일정

- 법(안) 마련 및 입법추진('05~'06)
- 양식수산물재해보상보험 시범실시('07)

마. 수산업법(개정)

□ 개정사유

- 국내외 수산업 여건 변화에 부응한 수산업법체계정비 필요
- 복잡 난해한 수산관계 법령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

□ 주요내용

- 어업인의 권리와 의무 재정립
- 어업관리 및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부여
- 면허·허가어업의 정기적 일제정비 근거 마련
- 일시 다확성 어류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허가제 도입

□ 추진일정

- 전문연구기관에 수산업법 전문개정 용역연구 : '04 ~ '05
 - 수산업법 전문개정 방안 및 하위법령 정비
-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 : '06년 이후

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하위법령(제정)

□ 제정사유

- 「수산업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행하는 어선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연근해어장의 어업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여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
- *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04.12.31, 법률 제7312호)

□ 주요내용

-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행한 어업자의 어선에 대하여 잔존선가 및 어업허가 보유어선에 한하여 어업허가 폐지에 따fms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부에서 매입·해체 폐기처분
- * 막대기·파이프·빔 등을 사용하는 트롤·연안새우방·새우조망·형망어업 제외

- 지원금 지급기준 : 1척당 1천만원을 기본한도로 하고 1톤당 200만원씩 가산하며, 5톤 이상의 어선은 2천만원을 최고한도로 함
- 잔존 선가지급 및 해체·처리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함
- 잔존가액은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결정
 - 소형기저 3,200여척중 2,000척 매입

□ 추진일정

- 관계부처 의견조회 : '05. 1. 7 ~ 1. 17(11일)
- 입법예고 : '05. 1. 25 ~ 2. 15(22일)
- 시행령 제정 : '05. 4

사. 낚시어선업법(개정)

□ 개정사유

- 주 5일제 근무 확산 등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객이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낚시승객의 안전 확보

□ 주요내용

- 소형 낚시어선을 소유한 낚시어선업자에게 당해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의무 부여
- 낚시어선에는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승선정원과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게시
- 기상 및 해상상황별 낚시어선의 출항제한기준 근거마련 등

□ 추진일정

- 시행(예정) : '05 하반기
- 하위법령 개정 : '05

아. 수산물품질관리법 하위법령(개정)

□ 개정사유

- 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313호 일부개정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 됨에 따라 품질인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 방법을 현실화하고, 국민보건위생상 관리가 필요한 김건조업, 패류껍질제거업을 신고하여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으로 추가하고, 검사원·검역관 자격기준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품질인증 기준을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 차별화가 인정되고, 품질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자재를 갖추고, 생산·출하 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체제와 유통중 이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 체제를 갖추도록 함(안 제11조 제1항)
- 국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현실화 하고,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18조 제1항)
- 수산물가공업중 냉동·냉장업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김건조업 및 패류껍질제거업을 신고업의 대상에 추가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검사원 및 검역관의 자격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검사원의 자격취소, 검사원의 교육, 검역관의 자격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5조의2 신설)

□ 추진일정

- 법 시행 : '05. 7. 1
- 하위법령 정비 : '05년 상반기

자. 어장관리법(개정)

□ 개정 사유

- 어장관리법 시행후('01. 2. 7)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어장정화·정비 전문업체 육성 및 난립방지
- 인력 및 장비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 실태조사 및 기준개선
- 어장관리해역 지정 기준 개정
 - 어장관리법 시행령(제4조)에서 규정→어장관리법(제5조)에 규정
- 어장관리법상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 개정

□ 추진일정

- 법제처 심사 : '05. 6 ~ 7
- 국회제출 : '05. 8
- 시행(예정) : '06. 1

차. 기르는어업육성법(개정)

□ 개정사유

- 해양환경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 고갈 방지
- 환경친화형 해산어류 양식업 육성을 위한 저오염, 고효율 배합사료 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추진
 - 배합사료 공급의 안정화 및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생사료 및 습사료 사용 제한 규정 제도화

□ 추진일정

- 배합사료 개발 상황을 감안, 시행시기 조정(가능한 조기개정 시행)
 - 2007년 기르는어업육성법 개정

3. 수산진흥종합대책 시행의 효율성 증진

가. 시행계획의 수립

□ 세부사업별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소관부서)

- 매년초 담당부서별로 세부시행계획 수립
 - 전년도 사업별 추진실적 및 추진 미흡사업 원인분석
 - 당해년도 사업 주요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음년도 예산안 마련 및 예산 확보

나. 수산정책의 점검 및 평가

□ 세부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수산총괄부서)

-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의 달성도, 현황을 수시 점검
 - BSC 성과관리시스템 활용

□ 주요내용

- 대책 전반에 걸쳐 성과목표와 이행지표의 추진실적과 정책 효과 점검 및 평가
 - 이행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환류시스템 강화)
 - 부진사업의 경우 부진원인의 분석과 필요시 사업축소 또는 폐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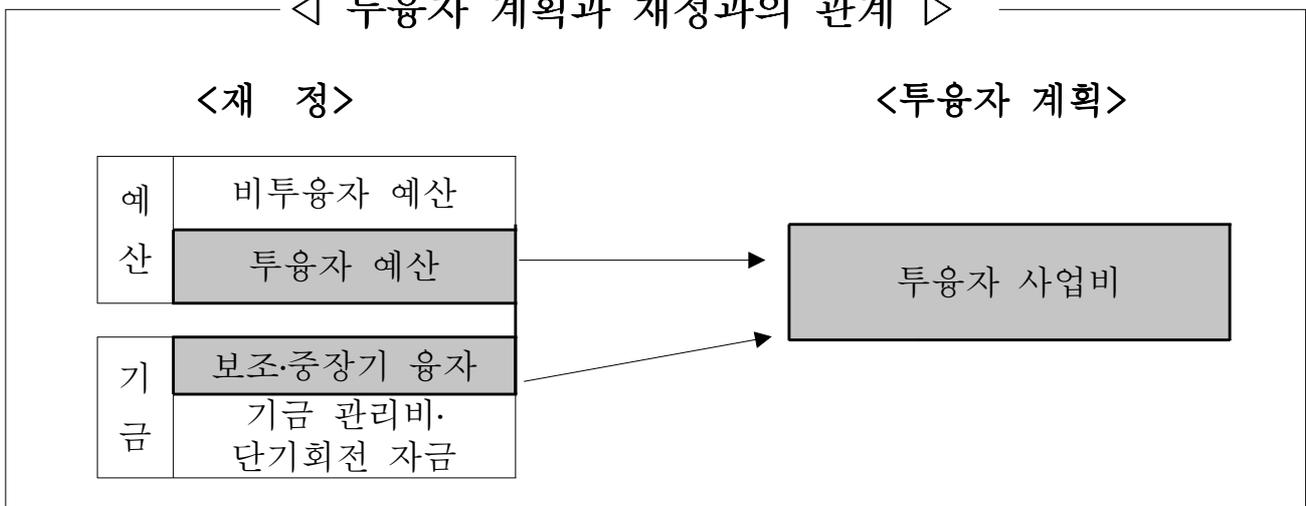
제6장 투융자 계획 및 전망지표

1. 투융자 계획

가. 투융자계획의 전제

- FTA추진과 DDA 수산분야 협상 등에 사전대비, 어업인 지원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향후 수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DDA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협상의 추이에 따라 새로운 대책 추가 마련
 - 피해영향은 중간수준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에 중점
- 기존의 투융자 계획과 동일한 방식을 유지
 - 투융자 규모와 농특세, 균특 사업 포함. 다만, 지방비와 자부담 제외
 - 투융자 계획에는 예산과 기금의 보조·융자사업이 포함되나 채무상환, 적자보전 등 경직성 경비와 회전성 단기 융자금은 제외
 - 투자는 국가가 직접사업을 시행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소요, 융자는 어업인 등에게 상환을 전제로 빌려주는 규모를 반영

◁ 투융자 계획과 재정과의 관계 ▷



나. 총 투용자 규모

□ 향후 5년간('05~'09) 총 투용자 규모 : 5조 5,822억원

- 예산 46,101억원(82.6%), 기금 9,721억원(17.4%)
- 연도별 투용자 규모는 '05년 10,176억원에서 '09년 12,467억원으로 연평균 11,164억원
 - ('05) 10,176 → ('06) 10,586 → ('07) 10,981 → ('08) 11,612 → ('09) 12,467
 ※ WTO/FTA의 피해가 예상되는 '07년 이후 피해대비 관련 예산증액 추진

다. 분야별 투용자 계획

□ WTO/FTA에 대응한 지원체제의 구축 및 어촌지역 활성화 분야는 투용자 비중을 확대하고 수산물가공시설 지원 부문 비중은 축소

《분야별 투용자 규모 및 비중》

(단위: 억원,%)

분 야 별	2005		2009		2005 - 200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0,176	100	12,467	100	55,822	100
◦ WTO/FTA 협상 대응	1,442	14.2	2,659	21.5	8,712	15.6
◦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837	8.2	1,057	8.5	4,482	8.0
◦ 생산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658	6.5	803	6.5	3,505	6.3
◦ 선진 어업질서의 정착	456	4.5	589	4.8	2,816	5.1
◦ 해양환경 개선과 친환경 어업	774	7.6	968	7.8	4,519	8.1
◦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1,337	13.1	1,480	11.9	7,698	13.8
◦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1,355	13.3	889	6.5	5,873	10.5
◦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3,317	32.6	4,022	32.5	18,217	32.6

중장기 투융자 세부계획 내용

(단위 : 억원)

구 분		2004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		9,656	55,822	10,176	10,586	10,981	11,612	12,467
분 야 별	○ WTO/FTA 협상 대응	1,457	8,712	1,442	1,119	1,431	2,061	2,659
	○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780	4,482	837	834	857	897	1,057
	○ 생산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766	3,505	658	724	609	711	803
	○ 선진 어업질서의 정착	437	2,816	456	666	532	573	589
	○ 해양환경 개선과 친환경 어업	843	4,519	774	844	966	967	968
	○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1,160	7,698	1,337	1,608	1,571	1,702	1,480
	○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1,218	5,873	1,355	1,404	1,371	854	889
	○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 확충	2,995	18,217	3,317	3,387	3,644	3,847	4,022
재 원 별	예 산	8,125	46,101	8,470	8,649	9,072	9,593	10,317
	기 금	1,531	9,721	1,706	1,937	1,909	2,019	2,150

2. 주요 수산 전망지표

전망지표 명	2004년도	2009년도	2013년도
◦ 어가소득(만원)	2,616	3,400	4,500
◦ 어업인구(천명)	210	185	180
◦ 수산물 국내소비량(천톤)	3,922	4,040	4,400
◦ 수산물 생산량(천톤)	2,519	2,650	2,680
◦ 수산물 수입량(천톤)	2,477	2,700	3,040
◦ 수산물 수출량(천톤)	1,116	1,020	910
◦ 어선수(연근해, 척)	89,268	85,230	78,080
◦ 자율관리공동체수	174	750	1,000
◦ 어촌종합개발(권역)	130	187	225
◦ 수산물 직판장	33	48	60
◦ 산지 위판장	240	250	265
◦ 완공 어항수	169	231	265
- 국가어항(105개항)	75	101	105
- 지방어항(313개항)	94	130	160
◦ 수산발전기금 조성(억원)	6,110	9,774	11,000

수산진흥종합대책(2005 ~ 2009)

2005년 4월 일 인쇄

2005년 4월 일 발행

편집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3674-6816)

발행 : 해양수산부

인쇄 : (주)문원사(☎739-3911 ~ 4)

<비매품>